주요국의 조세동향

2022년 제1호

2022. 7.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센터

주요국의 조세동향

2022년 제1호

2022. 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센터

이 자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센터에서 발간하고 있는 「주요국의 조세동향」을 국가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목 차

제1부 인플레이션 대응 조세정책: 초과이익세(windfall taxation)를 중심으로

Ⅰ 인플레이션과 현황 / 3

1. 세계 인플레이션(Worldwide Inflation) ····· 3
2. 인플레이션 대응 정책 ····· 6
   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 ····· 6
   나.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 7

Ⅱ 인플레이션 대응 정책에 대한 국제기구 권고사항 / 9

1. OECD ····· 9
2. EU ····· 11
3. IMF ····· 13

Ⅲ 해외 주요국의 조세정책상 대응 / 15

1. 통상적인 인플레이션 대응 세제 ····· 15
   가. 인플레이션 대응 세제 일반 ····· 15
   나. 주요국의 인플레이션 대응 세제 ····· 16
      1) 미국 ····· 17
      2) 영국 ····· 21
      3) 독일 ····· 22
      4) 일본 ····· 24

5) 프랑스 ····· 24
2. 초과이익세 ····· 27
가. 국가별 비교(요약) ····· 28
나. 도입한 국가 ····· 36
1) 영국 ····· 37
2) 이탈리아 ····· 41
3) 그리스 ····· 44
4) 스페인 ····· 46
5) 중국 ····· 50
6) 인도 ····· 55
7) 헝가리 ····· 57
다. 도입 논의 중인 국가 ····· 61
1) 미국 ····· 62
2) 프랑스 ····· 66
3) 독일 ····· 67
4) 벨기에 ····· 68
5) 오스트리아 ····· 69
6) 불가리아 ····· 69

목 차

제2부 주요 국가별 조세동향

Ⅰ 북미 / 75

1. 미국 ····· 75
가. 코로나19 구호기금을 사용한 주 세금 감면 충당 금지 ····· 75
나. 세금 초과 및 과소 납부에 대한 이자율 인상 발표 ····· 76
다.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협정 발표 ····· 77
라. 비거주 외국인 개인 이연보상에 관한 사례집 발표 ····· 78
마. 러시아 등에서 운영되는 회사에 대한 세제혜택 금지 법안 발의 ····· 79
바. 2022년 하반기 표준마일리지 요율 인상 발표 ····· 81
2. 캐나다 ····· 82
가.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비용에 대한 공제 연장 발표 ····· 82
나. 업데이트된 해외금융자산보고 지침으로 회피방지 조치 명확화 ····· 83
다. 2022년 예산안 발표 ····· 84
라. 2022년 예산 시행을 위해 필요한 법안 발의 ····· 86
마. 캐나다 와인에 대한 소비세 면제 폐지 ····· 87

Ⅱ 유럽 / 89

1. 영국 ····· 89
가. 디지털세 필라2 이행 관련 국내 의견수렴 절차 개시 ····· 89
나. 암호자산의 대여·예치 관련 과세지침 공개 ····· 91
다. 2022년 예산안 발표 ····· 92
라. 에너지 기업에 25% 초과이윤세 부과 발표 ····· 93

마. 필라2 이행 연기 발표 ····· 94
2. 독일 ····· 95
가. 납세자 지원을 위한 다수의 제안 공개 ····· 95
나. 물가 상승에 따른 납세자 지원 혜택안 승인 ····· 97
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응하는 세제특례 공개 ····· 97
라.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세 방안 공개 ····· 99
마. 중국 기업 배당금 원천징수 지침 공개 ····· 100
바. 가상화폐 소득세 처리에 대한 지침 발표 ····· 102
3. 프랑스 ····· 104
가. 신탁 보고 의무 관련 신규 지침 발표 ····· 104
나. 부가가치세 면제 지침 중 보험 및 관련 용역 부분 개정 ····· 105
4. 이탈리아 ····· 106
가. 2022년 예산법안 발표 ····· 106
나. 코로나19 관련 추가 지원 조치 발표 ····· 110
다. 코로나19 관련 관광부문 및 선박 서비스 지원 계획 EU 승인 ····· 112
5. 스페인 ····· 113
가. 창업 촉진을 위한 신규 세금 인센티브 법안 승인 ····· 113
나. 폐기물 및 오염된 토양에 관한 법안 추가 내용 상원 회부 ····· 114
다. 우크라이나 침공 영향 관련 에너지 조세 조치 정부 승인 ····· 116
라. NFT 과세와 관련한 구속력 있는 규칙 발표 ····· 117
6. 아일랜드 ····· 118
가.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세금 감면 및 보조금 지급 대응조치 발표 ····· 118
나. 코로나19 영향으로 관광산업에 부가세 감면 연장 ····· 119
7. 스위스 ····· 120
가. 디지털세 필라2 최저한세 이행 결정 ····· 120
나. 신주 발행에 대한 인지세 폐지 법안 부결 ····· 121
다. '넷플릭스 법' 국민유권자 투표 통과 ····· 122

목 차

8. 포르투갈 ····· 124
가.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세에 대한 세부정보 발표 ····· 124
나. 이전가격 및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합의제도 관련 규칙 개정 ····· 125
다. 신규 개인소득세 규정 도입 ····· 127
9. 벨기에 ····· 131
가. 특정 직업군에 대한 소득세·부가가치세 고정세율 폐지 ····· 131
나. 개인 소득세 및 기타 세법 수정안 발표 ····· 132
10. 룩셈부르크 ····· 134
가. DAC7 관련 법안 의회 제출 ····· 134
11. 그리스 ····· 135
가. 공동 예금 및 투자 계좌에 대한 상속세 면제 도입 ····· 135
나. 사업 개편에 대한 소득세 면제 도입 법안 제안 ····· 136
12. 네덜란드 ····· 137
가. 원천징수와 관련한 이중과세방지협정 시행규칙 발표 ····· 137
나. 암호화폐 관련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처리 지침 발표 ····· 138
다. DAC7 법안 의회 제출 ····· 140
13. 스웨덴 ····· 141
가. 소비세법 개정안 발표 ····· 141
14. 덴마크 ····· 142
가. 통근비용 소득공제 및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한도 인상 ····· 142
15. 핀란드 ····· 144
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원천징수에 대한 추가 지침 발표 ····· 144
16. 오스트리아 ····· 145
가.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세제 대응 방안 공개 ····· 145

Ⅲ 아시아/오세아니아 / 147

1. 일본 ····· 147
가. 후쿠시마 지진 피해 주류업자 대상 주류세 환급 ····· 147
2. 중국 ····· 148
가. 개인 및 외국인 거주자의 소득세 관련 세제혜택 연장 발표 ····· 148
나. 세제혜택 연장 발표 ····· 149
다. 2022년 예산안 발표 ····· 150
라. 보육비 소득공제 신설 ····· 153
마.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세제혜택 공개 ····· 153
바. 차량구치세 감면 발표 ····· 155
3. 인도 ····· 156
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세 등 신고기한 추가 연장 ····· 156
나. 2022년 예산안 발표 ····· 157
다. 물가 안정을 위한 유류세 등 지원 강화 ····· 158
4. 싱가포르 ····· 159
가. 2022년 예산안 발표 ····· 159
나. GST법 개정안에 대한 공개 협의 개시 ····· 162
5. 인도네시아 ····· 164
가. 담배 소비세 인상 ····· 164
나. 의료부문 세금 인센티브 확대 ····· 165
다.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 165
라. 부가가치세 인상 및 신고와 관련한 절차에 대한 규정 개정 ····· 167
6. 홍콩 ····· 168
가. 2022년 예산안 발표 ····· 168
7. 호주 ····· 169
가. 2022~2023년 예산안 발표 ····· 169

목 차

8. 뉴질랜드 ····· 171
가. 조세시스템의 디지털화 관련 의견수렴 절차 진행 ····· 171
나. 긱(gig)·공유경제 조세제도 정비 관련 의견수렴 ····· 172
다. 디지털세 필라2 도입 관련 국내 의견수렴 절차 개시 ····· 173
라. 2022-23 예산안 발표 ····· 174

Ⅳ 국제기구 / 176

1. OECD ····· 176
가. 주택 유효조세 측정 보고서 발행 ····· 176
나. 가상자산 보고 프레임워크 및 CRS 수정안 관련 의견수렴 ····· 177
다. 디지털 플랫폼 보고 의무를 위한 표준 IT 형식 발표 ····· 179
2. EU ····· 180
가. 조세 목적상 페이퍼컴퍼니 오남용 방지 지침 제안 ····· 180
나. 부가가치세 감면세율 적용범위 조정 ····· 181
다. 코로나19 관련 경제 지원조치 단계적 폐지 발표 ····· 182
라. 글로벌 최저한세 최종합의 실패 ····· 183

CONTENTS

제1부 인플레이션 대응 조세정책: 초과이익세(windfall taxation)를 중심으로

〈표 1-Ⅰ-1〉 세계 인플레이션율 현황 및 전망 ····· 4

〈표 1-Ⅲ-1〉 주요국의 인플레이션 대응 세제 세목별 비교 ····· 16
〈표 1-Ⅲ-2〉 국가별 초과이익세 비교 ····· 30
〈표 1-Ⅲ-3〉 중국 초과이익세 세율표 ····· 54

표목차

제2부 주요 국가별 조세동향

〈표 2-Ⅱ-1〉 2022년 예산법안의 법인세 투자소득 세액공제 구간 ····· 107
〈표 2-Ⅱ-2〉 2022년 예산법안의 연구개발비용 세액공제 구간 ····· 108
〈표 2-Ⅱ-3〉 2022년 예산법안의 개인소득세 구간(1) ····· 109
〈표 2-Ⅱ-4〉 2022년 예산법안의 개인소득세 구간(2) ····· 109
〈표 2-Ⅱ-5〉 2022년 포르투갈 개인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개편 내용 ····· 128
〈표 2-Ⅱ-6〉 벨기에 개인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변동 ····· 133

〈표 2-Ⅲ-1〉 적격 외국인 거주자 비과세혜택 항목 ····· 149
〈표 2-Ⅲ-2〉 싱가포르 개인소득세 과세표준 최고구간 신설 및 세율 인상 ····· 160
〈표 2-Ⅲ-3〉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및 세율 인상 ··· 161
〈표 2-Ⅲ-4〉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및 세율 인상 · 161

그림목차

제1부 인플레이션 대응 조세정책: 초과이익세(windfall taxation)를 중심으로

[그림 1-Ⅰ-1] 세계 인플레이션율 현황 및 전망 ····· 3
[그림 1-Ⅰ-2] NYMEX 원유 선물가격 추이(2021년~현재) ····· 4
[그림 1-Ⅰ-3] NYMEX 헨리허브 천연가스 선물가격 추이(2021년~현재) ····· 5
[그림 1-Ⅰ-4] FAO 식량가격지수 및 곡물가격지수 ····· 6

[그림 1-Ⅲ-1] 초과이익세 시행 국가의 인플레이션율 ····· 36
[그림 1-Ⅲ-2] 중국 초과이익세 신고서식 ····· 54
[그림 1-Ⅲ-3] 초과이익세 도입 논의 중인 국가의 인플레이션율 ····· 62

제1부 인플레이션 대응 조세정책 : 초과이익세(windfall taxation)를 중심으로

Ⅰ 인플레이션과 현황

1 세계 인플레이션(Worldwide Inflation)

IMF는 4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에서 2022년 세계 인플레이션율을 1996년 이후 26년 만의 최고치인 7.4%로 전망하였음[1)]

- IMF는 올해 선진국 인플레이션율을 5.7%로, 신흥개도국 인플레이션율은 8.7%로 각각 전망하였음
  - 2022년 선진국 인플레이션율 전망치인 5.7%는 1984년의 6.3% 이후 38년 만의 최고치이며, 1월 전망치보다 1.8%p 상향된 수치임
  - 2022년 신흥개도국 인플레이션율 전망치인 8.7% 또한 2008년의 9.2% 이후 14년 만의 최고치이며, 1월 전망치보다 2.8%p 상향된 수치임
- IMF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과 물가 압력의 확대로 인플레이션이 오랫동안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함
  - IMF는 2023년 물가 상승률은 2.5%(선진국)와 6.5%(신흥개도국)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이는 1월 전망치 대비 각각 0.4%p, 1.8%p 상향된 수치임

[그림 1-Ⅰ-1] 세계 인플레이션율 현황 및 전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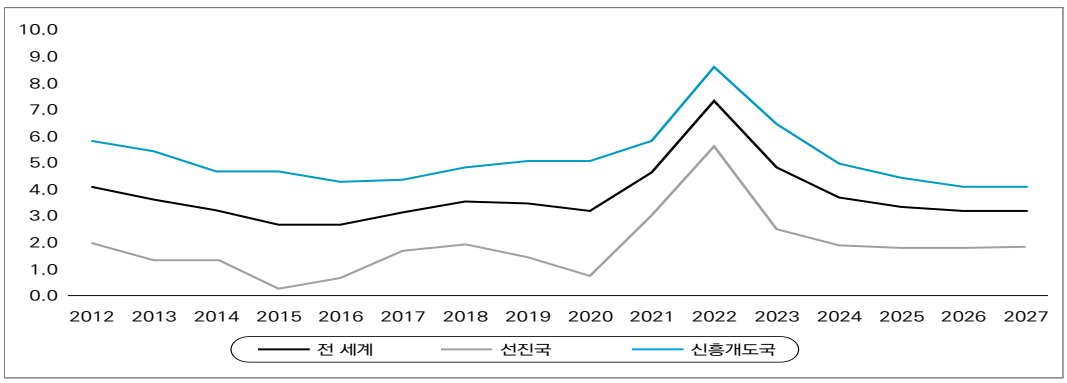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22. 4.

1)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22. 4.

〈표 1-Ⅰ-1〉 세계 인플레이션율 현황 및 전망

(단위: %)

구분	기록									전망					
	2004-13 평균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전 세계	4.2	3.2	2.7	2.7	3.2	3.6	3.5	3.2	4.7	7.4	4.8	3.8	3.4	3.3	3.2
선진국	2.0	1.4	0.3	0.7	1.7	2.0	1.4	0.7	3.1	5.7	2.5	2.0	1.8	1.8	1.9
신흥 개도국	6.3	4.7	4.7	4.3	4.4	4.9	5.1	5.2	5.9	8.7	6.5	5.0	4.5	4.2	4.1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22. 4., Table A5

-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인해 양국의 수출 비중이 높은 에너지 및 식료품 가격의 상승 압박이 커짐[2)]
  - (석유) 국제 유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배럴당 100달러 선을 돌파했고, 각국에서 러시아산 에너지 금수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브렌트유가 3월 초 한때 배럴당 140달러까지 급등하였음
    - 러시아는 유럽 연합의 총 가스 수입의 약 45%를 차지하며, 세계 석유 수출의 10%를 차지하고 있음[3)]

[그림 1-Ⅰ-2] NYMEX 원유 선물가격 추이(2021년~현재)

자료: CME Group, "Crude oil," https://www.cmegroup.com/ko/trading/energy/crude-oil/light-sweet-crude_quotes_globex.html?optionExpiration=769-U2&optionProductId=769, 검색일자: 2022. 8. 9.

2)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 시장 인사이트」, 제22-9호, 2022. 5. 9.

3) IMF, *Fiscal Monitor*, 2022. 4.

▶ (천연가스) 2021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하였으며,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 지역은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함

[그림 1-Ⅰ-3] NYMEX 헨리허브 천연가스 선물가격 추이(2021년~현재)

자료: CME Group, "Henry hub natural gas," https://www.cmegroup.com/ko/trading/energy/natural-gas/natural-gas.html, 검색일자: 2022. 8. 9.

▶ (식품가격지수)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국제연합식량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의 식량가격지수(Food Price Index)[4] 및 곡물가격지수(Cereal Price Index)[5]는 2022년 3월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함[6]

-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세계 수출의 30%를 차지하는 밀의 가격은 더 오를 가능성이 있음[7]

4) 식량가격지수란 FAO가 매월 발표하는 곡물과 육류, 식물성 유지, 유제품, 설탕의 5개 품목군의 식량의 국제가격 동향을 의미하며, 2014년부터 2016년의 평균치인 100을 기준으로 함

5) 곡물가격지수란 FAO가 매월 발표하는 밀, 옥수수, 보리, 수수, 쌀의 5개 품목군 곡물의 국제가격 동향을 의미하며, 2014년부터 2016년의 평균치인 100을 기준으로 함

6) IMF Notes, "Fiscal Policy for Mitigating the Social Impcat of High Energy and Food Prices," 2022. 6., https://www.imf.org/en/Publications/IMF-Notes/Issues/2022/06/07/Fiscal-Policy-for-Mitigating-the-Social-Impact-of-High-Energy-and-Food-Prices-519013, 검색일자: 2022. 7. 25.

7) IMF, *Fiscal Monitor*, 2022. 4.

[그림 1-Ⅰ-4] FAO 식량가격지수 및 곡물가격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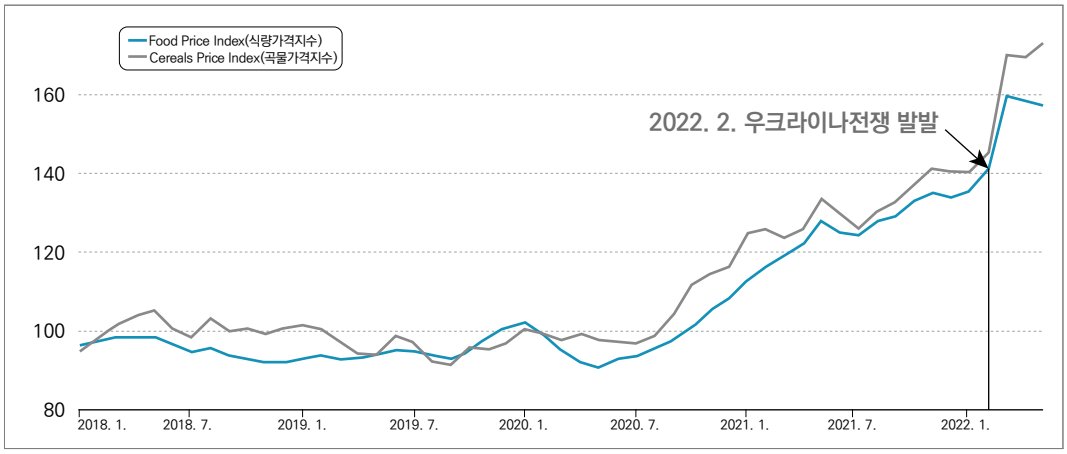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홈페이지, 「세계곡물 관련지표(FAO식량가격지수 및 곡물가격지수)」, http://www.krei.re.kr:18181/new_sub15, 검색일자: 2022. 7. 22.

2 인플레이션 대응 정책

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

↘ 인플레이션 자체를 억제하기 위해 금리 인상 등의 통화정책을 실시함

▶ 통화정책으로 기준금리 인상, 채권 매매 및 외환시장 개입의 환율정책 및 금융 안전성 강화 등이 있음

–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은 2022년 7월부터 50basis point를 인상한 정책금리를 적용하고 자산매입프로그램에 따른 재투자를 유지할 계획이며,[8] 미국·영국 또한 기준금리를 인상함[9]

8) 2022년 7월 27일부터 유럽중앙은행의 기준금리는 0.5%, 한계대출금리는 0.75%, 수신금리는 0.00%이며, 2011년 7월 이후 처음 인상됨(European Central Bank, "Monetary policy decisions," 2022. 7. 21., https://www.ecb.europa.eu/press/pr/date/2022/html/ecb.mp220721~53e5bdd317.en.html, 검색일자: 2022. 7. 27.)

9) 미국은 2022년 5월 0.75~1.00%에서 2022년 6월 1.50~1.75%로, 영국은 2022년 5월 1.00%에서 2022년 6월 1.25%로 인상함(국회예산정책처, 「최근의 인플레이션 동향 및 주요국 정책 대응

- 유연한 환율 제도 및 거시건전성 정책(Macroprudential Policy)을 통하여 금융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10]

나.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의 직접적인 지출을 통한 수당 또는 보조금 지급, 정부의 차입 변경 등의 재정정책이 있음[11]
  - ▶ 정부는 취약계층(노인, 장애인 등 사회 보장 수혜자)을 위하여 일회성 지원금(현금 또는 상품권 등)을 지급하거나 공과금 경감 등의 제도를 시행함

-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응하여 각국은 에너지 또는 일부 상품의 가격을 동결·인하하고, 장기적으로 대체 에너지원 개발, 공급망 관리 등의 정책을 고려함
  - ▶ 유류 및 전기 가격 인하(또는 인상 제한), 공급자에 대한 에너지 보조금 지급 등 가격 통제 정책을 시행함
  - ▶ 장기적인 정책으로 개방 및 경쟁 시장 보장, 대체 에너지원 개발 및 공급망 관리도 고려됨[12]
    - 에너지 안보, 탈탄소화, 에너지 및 식품 공급망 관리 및 공급 안정성 확보를 주된 내용으로 함
    - 환경 친화적인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급, 수입 석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하여 국내 생산량 확대, 에너지 효율성 확보 등의 정책을 시행함

현황」, 『나보포커스』, 제48호, 2022)

10) IMF, "Monetary Policy and Central Banking," https://www.imf.org/en/About/Factsheets/Sheets/2016/08/01/16/20/Monetary-Policy-and-Central-Banking, 검색일자: 2022. 7. 28.

11) IMF Notes, *Fiscal Policy for Mitigating the Social Impact of High Energy and Food Prices*, 2022, pp. 4~5.

12) EY, "The CEO Imperative: How can policymakers help you weather today's geopolitical storms?," 2022. 6. 8., https://www.ey.com/en_gl/government-public-sector/how-ceos-can-partner-with-governments-facing-policy-dilemmas, 검색일자: 2022. 7. 22.

↘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여타 포괄적인 지원책을 제공함

▶ 일부 국가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지원책으로, 저소득 육아 가구 등에 대한 임시 특별 지원, 중소기업 지원 등을 제안함[13)]

▶ 또한 공무원 임금 동결 해제, 연금 조기 수령, 임대료 인상 제한, 실업 보험 확대 등의 정책을 시행 또는 고려함[14)]

13) 内閣官房, 「コロナ禍における「原油価格·物価高騰等総合緊急対策」」," https://www.cas.go.jp/jp/seisaku/genyukakaku_bukkakoutou/pdf/gaiyou.pdf, 검색일자: 2022. 7. 29.

14) Vie Publique, "Conseil des ministres du 11 mai 2022. La protection du pouvoir d'achat des Français," https://www.vie-publique.fr/discours/285112-conseil-ministres-11052022-protection-du-pouvoir-d-achat-des-francais, 검색일자: 2022. 7. 29.

Ⅱ 인플레이션 대응 정책에 대한 국제기구 권고사항

1 OECD

- OECD는 2022년 3월 '2022 경제 전망 중간보고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제적·사회적 영향과 정책 방향'을 발간하여 초과이익세의 도입 가능성을 시사함[15]
  - ▶ 재정 지원은 인플레이션에 사소한 영향만을 미치면서도 성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초과이익세로 그 재원을 충당할 수 있다고 함
  - ▶ 보고서는 소비자에 대한 에너지 가격 인상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 장·단기적 정책 방향을 권고함
    - 에너지 가격 인상에 대한 대응 정책은 구체적으로 일시적 지원금 제공, 저소득 가구에 대한 전기료 인하, 전기 및 가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 유류 및 전기에 대한 소비세 경감, 에너지 가격 동결, 가격 인상 제재에 대한 보상으로 전기 관련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 등임
    - 단기적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에너지원의 다양화 및 효율성 향상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를 낮출 것을 권고함

- OECD는 2022년 6월 '대응 정책 보고서'에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응한 지원 정책을 소득 지원(income support)과 가격 지원(price support)으로 분류하고, 국가들은 점진적으로 가격 지원 정책에서 소득 지원 정책으로 전환한다고 함[16]
  - ▶ 에너지 가격 상승 대응 정책은 소득 지원 정책과 가격 지원 정책으로 분류됨
    - 소득 지원 정책은 가계 및 기업에 대한 지원금 제공으로 이루어지며, 위기 상황에서는 소득 지원이 이미 시행되고 있어 지원 대상 및 지원금의 확대를 의미함

15) OECD iLibrary, "OECD Economic Outlook, Interim Report: Economic and Social Impacts and Policy Implications of the War in Ukraine," https://www.oecd-ilibrary.org/economics/oecd-economic-outlook/volume-2022/issue-2_4181d61b-en, 검색일자: 2022. 7. 14.

16) OECD, "Why governments should target support amidst high energy prices," https://www.oecd.org/ukraine-hub/policy-responses/why-governments-should-target-support-amidst-high-energy-prices-40f44f78/, 검색일자: 2022. 7. 14.

- 가격 지원 정책은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을 인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가격 통제, 전기 소비세·네트워크 사용료 경감, 부가가치세·유류 소비세 경감 또는 면제 등이 있음

▶ 각국은 초기에 대체로 가격 지원 정책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응하였으나 점진적으로 소득 지원 정책으로 전환함

- 가격 지원 정책은 일반적인 도입 및 소통이 상대적으로 쉽지만, 에너지 공급이 적은 경우 전체를 대상으로 포괄적인 혜택이 부여되는 가격 인하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려는 유인을 약화시킴

↘ 한편 OECD는 같은 보고서에서 직접적인 가격 지원 정책(에너지세 경감 포함)에서, 대체 에너지원과 운송방식을 개발함과 동시에 경제적으로 취약한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소득 지원 정책으로의 전환을 권고함[17)]

▶ 가격 통제와 마찬가지로 에너지세(소비세 또는 부가가치세) 경감 정책은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을 낮추고자 하는 것으로, 장·단점이 있음

- 정책의 이행 및 소통에 있어 신속하고 간소하며 비공식적 부문에서 개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하지만 가격 신호를 약화시켜 에너지 절약 또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려는 유인을 낮추며, 가격 통제와 달리 여전히 시장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에너지 공급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 공급자가 손실을 피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에너지세 경감이 소비자 물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수준과 관련한 주의가 필요한데,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율 인하가 곧바로 동일한 수준의 소비자 물가 하락을 보장하지 않고, 나아가 오늘날과 같이 에너지 공급이 제한되는 시점에는 더욱 그러함
- 에너지세 경감이 정부 지원의 효율성을 낮추는 것 외에도, 직접적으로 화석연료 공급자들의 큰 이익으로 연결될 때 공정성 문제도 발생함

▶ 국가들은 구체적인 대상을 정한 소득 지원 정책을 통하여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더불어 대체 에너지원과 운송방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가격 지원 정책과 달리 소득 지원 정책은 가격 신호를 제거하지 않으며, 따라서 에너지 저장과 대체 연료로의 전환을 장려하고, 소비자들에게 재정적인 구제책을 제공함

17) OECD, “Why governments should target support amidst high energy prices,” https://www.oecd.org/ukraine-hub/policy-responses/why-governments-should-target-support-amidst-high-energy-prices-40f44f78/, 검색일자: 2022. 7. 14.

- 소득 지원 정책에 여전히 재정적 비용이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구체적 대상을 정한 소득 지원 정책은 높은 에너지 가격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경우에는 대체 에너지원 개발 등 지속가능한 대응 정책을 국가들이 고려하도록 한다는 장점이 있음
- 장기적으로 기후·에너지·사회 정책의 공통된 우선순위는 에너지 사용자가 에너지 소비 형태를 조정하고 대체 연료로 전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투자하는 것이 되어야 함

2 EU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EU의 러시아 경제제재 및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심화되면서, 유럽 통계청(EUROSTAT)은 전년 말 대비 2022년 6월 기준 유럽 지역의 연간 인플레이션율은 8.6%, EU 회원국의 연간 인플레이션율은 9.6%로 발표함[18]
  - ▶ 유로지역 인플레이션율(8.6%) 중 에너지 항목 기여도가 4.19%p(기여율은 48.5%)[19]임에 따라 인플레이션 대처를 위해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주로 발표되고 있음

- 2022년 3월 8일 EU 집행위원회는 REPowerEU 계획을 발표하여, 상승하는 에너지 가격에 대한 대응으로 EU 회원국에 초과이익에 대한 한시적인 조세 조치를 고려할 것을 요청한 바 있음[20]
  - ▶ REPowerEU 계획(더 저렴하고,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위한 유럽 국가의 공동 대응 방안)은 러시아 수입자원 의존도를 낮추고 사상 최고치에 달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담음

18) Eurostat, "Annual inflation up to 8.6% in the euro area," https://ec.europa.eu/eurostat/documents/2995521/14644638/2-19072022-AP-EN.pdf/fff35147-c9b3-a915-7bf0-b09202bbd130, 검색일자: 2022. 7. 21.

19) 유로 지역 인플레이션율 8.6% 중 각 항목의 기여도는 에너지 4.19%(기여율 48.5%)이며, 이외 식품·주류 및 담배 항목군이 1,88%p(기여율 21.76%), 서비스항목 1.42%p(기여율 16.44%), 비에너지산업재화 1.15%p(기여율 13.31%)임

20) EU 집행위원회, "REPowerEU: Joint European Action for more affordable, secure and sustainable energy,"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OM%3A2022%3A108%3AFIN, 검색일자: 2022. 7. 26.

▶ EU 회원국 전반에 걸친 과세 제안이 아닌, EU 회원국이 초과이익과세를 시행할 경우 이를 지지하는 견해를 표한 것임[21)]

- EU 집행위원회는 전력 생산에 있어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은 한 전력 시장에 대한 특정 구조로 인해 에너지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 초과이익에 대한 과세는 정당화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힘

↘ REPowerEU 계획 부록 2에는 초과이익 과세에 관한 가이던스 내용이 담김

▶ 위기 상황에서 EU 회원국은 예외적으로 특정 전기 생산으로부터 얻는 수익의 일부를 확보하는 과세조치를 결정할 수 있음

▶ 단, 이러한 조치는 불필요한 시장 왜곡을 피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추가 투자를 장려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다음의 요건을 고려하여야 함

- 조치의 시행기간은 한시적이어야 하며, 특정 위기 상황과 연관되어야 함
- 조치는 전기도매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함
- 조치는 구조적 시장 성장에 따른 장기적인 가격 추세와 EU ETS 탄소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함
- 가스 가격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평균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과세를 통해 이러한 특성을 해결하지 않아야 함
- 특정 위기 환경과 관련된 '초과' 사용료의 산정방법과 개시/중지 기준을 명확하게 구체화하고 정당화해야 함
- 추가적인 한계사용료이익(infra-marginal rents)은 가스설비가 한계적으로 운영되었던 기간에 한계사용료 설비에서 실질적으로 획득한 수준에서 회수되어야 함
- 조치는 다른 발전 기술(전력생산 방식)들과 차등을 두어 적용되지 않아야 함
- 조치는 보조금 지원 또는 수용량 보상금제도 적용 여부에 관계 없이 모든 발전기기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함
- 이 조치는 소급 적용되어서는 안 되며(위기 이전의 낮은 시장가격을 고려), 실제 발생한 이익의 일부만을 회수하는 데 적용되어야 함
- 이 조치로 인한 재정수입은 모든 가구 또는 최종 소비자를 지원하는 데 사용되어야 함(예: 최종 고객의 전기 요금에 대한 일일 평균 또는 주간 소비 평균에 비례하여 할인 적용)

21) Freshfields ruckhaus Deringer, "Windfall Profit Taxes - do they work?," https://www.freshfields.com/en-gb/our-thinking/knowledge/briefing/2022/06/windfall-profit-taxes--do-they-work/, 검색일자: 2022. 7. 25.

- 2022년 7월 6일 EU 집행위원회 부총재(Věra Jourová)는 에너지 회사에 대한 초과이익 과세를 위해 EU 공통지침 설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함[22]
  - 유럽의회 회의에서 EU 집행위원회는 초과이익 과세에 대한 법적, 경제적 분석을 강화하고 있으며, EU에서 초과이익세 과세를 위해 합리적이고 합의된 접근방식을 마련하고 있음

3 IMF

- IMF는 많은 국가들이 세금 인하,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에너지 및 식품 가격 상승에 대응하는 조치를 발표했으나, 이러한 조치 중 상당수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함[23]
  - 조사 대상 국가 중 대부분의 국가들이 2022년부터 최소 1회 이상의 대응조치를 발표하였음(31개 선진국 중 26개국, 103개 신흥개도국 중 45개국)[24]
    - 대부분의 선진국은 바우처 등 현금성 보조금 지급 조치를 시행하였으며 부가가치세 감면(벨기에, 이탈리아), 소비세(excise tax) 인하(프랑스, 한국, 뉴질랜드) 등의 조치도 함께 시행됨
    - 신흥개도국은 대부분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 인하에 중점을 둔 조치를 시행함
  -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막대한 재정비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글로벌 수요와 공급 간의 불균형을 악화시켜 국제 가격에 추가 상승 압력을 가하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함
    - 특히, 에너지와 식량을 수입하고 재정 여력이 부족한 저소득 국가에 더 큰 타격을 가져오게 됨

22) Bloomberg Tax, "EU Weighs Windfall Profits Tax for Energy Companies," 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bloombergtaxnews/daily-tax-report/XDHTU5GG000000, 검색일자: 2022. 7. 26.

23) IMF, *Fiscal Monitor*, 2022. 4.

24) IMF Notes, "Fiscal Policy for Mitigating the Social Impact of High Energy and Food Prices," 2022. 6., https://www.imf.org/en/Publications/IMF-Notes/Issues/2022/06/07/Fiscal-Policy-for-Mitigating-the-Social-Impact-of-High-Energy-and-Food-Prices-519013, 검색일자: 2022. 7. 25.

- 이에, IMF는 에너지와 식품 가격 상승을 용인하면서도 동시에 가격 급등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인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함[25]
  - 에너지 가격의 상승은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과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킬 것이며, 높은 식품 가격은 식품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 또한, 에너지와 식품의 국내 가격을 조절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시행하는 인위적인 조치는 비용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산을 위한 투자를 구축하여 생산자의 유인을 감소시킬 것임
  - 다만, 가격탄력적인 에너지와 달리 식품의 경우 생계에 필수적인 기초품목으로 가격탄력성이 떨어지므로,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선별적인 지원조치들도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함
    - 단,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원이 자동 종료되는 일몰조항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고 권고함[26]

- 또한, IMF는 에너지와 식품에 대한 조세부담 경감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함[27]
  - 에너지와 식품의 가격의 상승은 많은 국가에서 세수 증가로 이어질 것이므로, 이 추가 세수로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임
  - 반면, 에너지와 식품에 대해 전반적인 세율 인하를 시행할 경우 취약계층만이 아닌 부유한 계층에도 세금을 감면해주게 되므로 반드시 필요한 곳에 세수가 쓰이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음
    - 그뿐만 아니라 에너지에 부과하는 조세는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목적으로도 유효하므로 에너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높은 세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음
  - 즉,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이 결과적으로는 지급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낮은 물가를 유지하는 것보다 비용이 덜 드는 방법이라고 강조함

---

25) 상동

26) IMF Blog, “Response to High Food, Energy Prices Should Focus on Most Vulnerable,” 2022. 6. 7., https: //blogs.imf.org/2022/06/07/response-to-high-food-energy-prices-should-focus-on-most-vulnerable/, 검색일자: 2022. 7. 25.

27) IMF Notes, “Fiscal Policy for Mitigating the Social Impact of High Energy and Food Prices,” 2022. 6., https://www.imf.org/en/Publications/IMF-Notes/Issues/2022/06/07/Fiscal-Policy-for-Mitigating-the-Social-Impact-of-High-Energy-and-Food-Prices-519013, 검색일자: 2022. 7. 25.

Ⅲ 해외 주요국의 조세정책상 대응

1 통상적인 인플레이션 대응 세제

가. 인플레이션 대응 세제 일반

- 인플레이션에 대응하여 에너지세, 부가가치세, 관세, 초과이익세 및 여타 소득세·법인세와 관련한 다양한 세제가 시행 또는 논의되고 있음
  - ▶ 에너지세와 관련하여 유류세를 인하하거나 유예하고,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식품·에너지 상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인하하며, 관세와 관련하여 관세 동결 또는 상한 정책 시행, 수입 관세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함
    - 한편, IMF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여 석유, 전기 또는 식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인하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면서, 지속적인 초과이익세를 권고한 바 있음[28)]
  - ▶ 나아가 소득세, 법인세 등과 관련한 다양한 조세정책들이 시행됨
    - 가계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 혜택을 위해 소득세와 관련하여, 통근비용 소득공제액을 상향하거나 보조금 비과세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소득세 면세 대상 소득구간 확대 등의 조치를 취함[29)]
    - 각국은 법인세 최저한세, 디지털 서비스세, 탄소세 또는 플라스틱세와 같은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관련 조세, 부유층 개인에 대한 조세 정책을 고려함[30)]

28) IMF Notes(2022), p. 9.

29) IMF Notes(2022), p. 5.

30) EY, "The CEO Imperative: How can policymakers help you weather today's geopolitical storms?," 2022. 6. 8., https://www.ey.com/en_gl/government-public-sector/how-ceos-can-partner-with-governments-facing-policy-dilemmas, 검색일자: 2022. 7. 22.

나. 주요국의 인플레이션 대응 세제

- 주요국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여 에너지세·부가가치세·관세 등 세목에 대하여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
  - ▶ 미국은 한시적으로 유류세 부과를 유예하기 위한 법안 발의가 의회에 촉구된 상황이고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폐지하거나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하여 저소득 주택 세금공제 등이 포함된 법안에 대한 제안과 지지가 이루어지고 있음
  - ▶ 영국은 에너지 기업에 대한 25%의 부담금 부과, 유류세 인하, 에너지경감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카운슬세 환급 등의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 ▶ 독일은 급격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응하고자 전기 사용에 부과하던 EEG 부과금을 조기 폐지하고,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하던 에너지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기로 하였으며, 보조금 지급과 소득법상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 ▶ 일본은 원유가격 상승 등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대책 및 부서를 신설하였으나 관련된 세제상 조치는 확인되지 않음
  - ▶ 프랑스는 에너지세의 직접적인 경감조치는 확인되지 않고, 부가가치세에 포함되었던 TV 수신부담금을 폐지하였으며, 가스·전기에 대한 관세 동결 또는 상한 정책을 시행 중이며, 근로자에게 가치 분배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비과세함

〈표 1-Ⅲ-1〉 주요국의 인플레이션 대응 세제 세목별 비교

국가	에너지세	부가가치세	관세	기타
미국	• 7~9월 기간 동안 유류세 부과를 유예하기 위한 'Federal Gas Tax Holiday' 법안 발의를 의회에 촉구함	• 관련 세목 및 대응 없음	•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3,000억 달러 이상의 중국 수입품에 대해 부과한 관세를 폐지하거나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	• 상승하는 주택비용에 대한 구제책으로 연방정부의 주택 공급 실행 계획에 따른 저소득 주택 세금공제(LIHTC)를 제안함 •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한 법안인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에 대한 지지를 발표함

〈표 1-Ⅲ-1〉 의 계속

국가	에너지세	부가가치세	관세	기타
영국	• 에너지 이익 부담금(Energy (Oil and Gas) Profits Levy) 25% 부과 •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를 리터당 5펜스 인하	• 에너지경감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 감면	-	• 카운슬세 환급
독일	• EEG 부과금 폐지 • 휘발유는 리터당 29.55센트, 경유는 리터당 14.04센트 감면 (2022년 6~8월)	-	-	(소득세) • 근로소득표준공제 한도 200유로 인상 • 기본공제 한도 363유로 인상 • 기본공제 한도 363유로 인상 • 장거리통근수당 0.03센트/km 인상
일본	• 석유 연료 관련 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물가안정을 위한 재정상 조치는 시행하나, 세제상 관련 조치는 없음			
프랑스	• 에너지세의 직접적인 경감 조치는 확인되지 않음 • 다만 유류 공급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통근 근로자에 대한 연료 수당·보조금 지급방식으로 유류 가격을 통제함	• 부가가치세에 포함되었던 TV 수신 부담금 폐지	• 가스 및 전기에 대한 관세 동결 및 상한 정책 시행 및 적용 연장	• 근로자가 수령하는 가치 분배 보조금을 소득세 비과세

자료: 본문의 내용을 저자 정리

1) 미국

↘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6월 22일, 휘발유 가격의 상승에 따른 물가 인상의 타격을 입은 소비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유류세의 부과를 유예하기 위한 법안의 발의를 의회에 촉구함[31]

31) 백악관, "President Biden Calls for a Three-Month Federal Gas Tax Holiday,"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2/06/22/fact-sheet-president-biden-calls-for-a-three-month-federal-gas-tax-holiday/, 검색일자: 2022. 7. 20.

▶ 바이든 행정부는 유류세 부과를 3개월 동안(7~9월) 유예하기 위한 '유류 세금 휴일(Federal Gas Tax Holiday)' 법안의 발의를 의회에 촉구함

-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연방세금은 1갤런당 각 18.3센트, 24.3센트가 부과되고 있음

▶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나아가 주 정부 차원에서도 주 유류세(state gas tax) 부과의 유예 등 직접적인 완화 정책을 통해 소비자를 지원할 것을 촉구함

- 조지아는 2022년 3월 18일, 2022년 5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유류세의 부과를 유예한 바 있음[32)]
- 메릴랜드는 2022년 3월 18일, 4월까지 한시적으로 유류세의 부과를 유예한 바 있음
- 코네티컷 주지사는 2022년 3월 14일, 주 의회에 2022년 6월 30일까지 가스 소비세의 부과에 대한 유예 내용을 포함한 법안의 상정을 촉구한 바 있음[33)]

ㄴ 바이든 행정부가 2022년 7월 기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중국 관세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34)]

▶ 바이든 행정부는 인플레이션 억제책의 일환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3천억 달러 이상의 중국 수입품에 대해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부과한 관세를 폐지하거나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9년 9월경, 중국이 미국 기업의 지식재산을 훔쳐 기술 이전을 강요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 중국에서 수입되는 3천억달러 이상의 제품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 사실이 있음

▶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중국 관세 폐지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입장이나, 반면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불공정 무역관행 등 중국의 무역 이슈와 관련한 향후 협상과정에서 협상 레버리지가 줄어들게 될 것을 우려하는 입장임[35)]

32) CNBC, "Some lawmakers want to ease the pain of high gas prices with direct payments to Americans," https://www.cnbc.com/2022/03/24/lawmakers-want-to-mitigate-high-gas-prices-with-payments-to-americans.html, 검색일자: 2022. 7. 20.

33) IBFD, "More States Push for Gas Tax Relief to Combat Skyrocketing Prices Amid Russia's Invasion of Ukraine,"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2-03-16_us_6%23tns_2022-03-16_us_6, 검색일자: 2022. 7. 20.

34) Bloomberg, "Biden Will Get Little Inflation Relief If He Eases China Tariffs,"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2-07-05/biden-to-get-little-inflation-relief-if-he-eases-china-tariffs#xj4y7vzkg, 검색일자: 2022. 7. 20.

▶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미 행정부에서는 일부 소비재 관세는 폐지 또는 인하하고 다른 품목에 대한 관세는 인상 또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 이중적 접근방식은 바이든 행정부가 인플레이션을 완화하는 동시에 대 중 관계에서의 정치력 협상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임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5월 16일, 상승하는 주택비용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구제책으로 연방정부의 주택 공급 실행 계획에 따른 저소득 주택 세금공제(LIHTC)를 제안함[36), 37)]

▶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5월 16일, 미국 전 지역에 양질의 주택 공급을 촉진함으로써 주택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주택 공급 조치 계획을 발표함

- 소비자 물가 지수로 측정하였을 때 주택비용이 인플레이션 장바구니(market basket for inflation)의 약 1/3을 차지하기 때문에 지역 사회에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인플레이션의 압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발표함

▶ 저소득 주택 세금공제(LIHTC)를 통해 저렴한 임대 주택을 개발하는 개인 투자자에게 크레딧을 제공할 계획임

- LIHTC는 민간부문에서 저렴한 임대 주택을 공급할 경우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임
- LIHTC 자격을 얻기 위해 개발자는 특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적합한 주택을 만들 것을 약정해야 함

▶ 바이든 대통령의 계획에 따라 재무부는 2022년 9월 30일까지 LIHTC 소득 평균 규정을 마무리하여 LIHTC를 사용하는 개발자에게 지침을 제공할 예정임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8월 16일 인플레이션 압력을 줄이기 위한 목적의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법안에 서명하였음[38)]

35) Financial Times, "Joe Biden's administration split on whether to remove China tariffs," https://www.ft.com/content/727bc14a-1095-4f91-b090-acad7510d67b, 검색일자: 2022. 7. 20.

36) 백악관, "President Biden Announces New Actions to Ease the Burden of Housing Costs,"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2/05/16/president-biden-announces-new-actions-to-ease-the-burden-of-housing-costs/, 검색일자: 2022. 7. 20.

37) IBFD, "President Biden Proposes Low-Income Housing Tax Credit Reform Under Housing Supply Action Plan,"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2-05-18_us_2%23tns_2022-05-18_us_2, 검색일자: 2022. 7. 20.

38) 백악관, "Remarks by President Biden on the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https://www.white

▶ 바이든 대통령은 해당 법안이 미국인들의 생활비를 절감하고 재정적자를 줄임으로써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는 체계를 담은 법안이라고 설명함

- 연간 소득이 40만달러 이하인 사람들에게는 새롭게 부과되는 세금이 없다는 점을 설명함

ㄴ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는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인 척 슈머(Chuck Schumer)와 상원의원인 조 맨친(Joe Manchin)이 에너지·기후변화 및 의료보험 개혁에 대한 입장을 타결하면서 만든 예산 화해 법안임[39]

▶ 해당 법안에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과 확보한 예산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제안하고 있음[40]

▶ 7,390억달러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함

- 연간 매출이 10억달러 이상인 기업에 대해 15%의 최소 법인세를 부과함으로써 3,130억달러의 예산을 확보
- 메디케어 협상을 통해 처방약 가격을 개혁함으로써 2,880억달러의 예산을 확보
- IRS의 세금 집행을 통해 1,240억달러의 예산을 확보
- 이월 이자의 허점을 제거하여 140억달러의 예산을 확보

▶ 확보된 예산의 지출범위인 4,330억달러에 대한 세부 지출 내역을 제안함

- 2021년 'American Rescue Plan Act'에 따라 확대된 'Affordable Care Act'의 보조금을 확대하는 데 640억달러를 지출
-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책에 3,690억달러 지출
- 미국의 적자를 감소하는 데 3천억달러 이상을 지출
- 태양광 사업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장기 연장하여 설치된 장비 비용의 30%를 10년간 공제하고 2033년에는 26% 그리고 2034년에는 22%로 축소하여 적용

house.gov/briefing-room/speeches-remarks/2022/07/28/remarks-by-president-biden-on-the-inflation-reduction-act-of-2022/, 검색일자: 2022. 7. 29.

39) CNN, "In a major boost to Democrats, Manchin and Schumer announce deal for energy and health care bill," https://edition.cnn.com/2022/07/27/politics/schumer-manchin-deal-build-back-better/index.html, 검색일자: 2022. 7. 29.

40) Senate Democrats, "Inflation Reduction Act One Page Summary," https://www.democrats.senate.gov/inflation-reduction-act-one-page-summary, 검색일자: 2022. 7. 29.

▶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책과 관련하여 전기차 보급 촉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함

- 전기차 구매자에게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제공하여 2030년까지 자국 신차 판매 중 전기차 비중을 50%로 확대할 계획
- 2024년부터 전기차 배터리 부품의 50%가 북미에서 생산된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적용
- 미국 현지에서 전기차를 생산하지 않는 자동차업체의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2) 영국

↘ 영국은 2월 지원계획, 3월 예산안(Spring Statement) 및 5월 지원계획에 고물가 대응 조치를 발표하였음

▶ 2022년 2월 지원계획에는 카운슬세(Council tax)[41] 환급, 보편적 에너지 요금 할인, 취약계층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치가 포함됨[42]

▶ 2022년 3월 예산안(Spring Statement)에는 에너지 가격 상승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되었으며, 구체적으로 국가보험기여금 면제기준 소득 인상, 휘발유, 경유의 유류세 리터당 5펜스 인하, 에너지 저감 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세 확대 등의 조치가 포함됨[43]

▶ 2022년 5월 지원계획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보조금 지급에 초점을 두었으며, 복지급여 수급자 보조금 지원, 동계 연료보조금 추가 지원 등의 조치가 포함됨[44]

↘ 영국 정부는 2022년 5월 26일, 에너지 기업에 대해 25%의 에너지 이익 부담금(Energy (Oil and Gas) Profits Levy) 부과를 발표[45]

41) 카운슬세(Council Tax)는 각 가구별로 주택의 자산가치와 주택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성인 수를 기초로 부과되는 지방세임(한국조세연구원, 『주요국의 조세제도-영국편』, 2004. 6.)

42) HM Treasury, "Millions to receive £350 boost to help with rising energy costs," 2022. 2. 3., https://www.gov.uk/government/news/millions-to-receive-350-boost-to-help-with-rising-energy-costs, 검색일자: 2022. 7. 27.

43) HM Treasury, *Spring Statement 2022*, 2022. 3.

44) HM Treasury, "Overall government support for the cost of living factsheet," 2022. 5. 26.,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government-support-for-the-cost-of-living-factsheet/government-support-for-the-cost-of-living-factsheet, 검색일자: 2022. 7. 27.

45) IBFD, "UK Chancellor Announces 25% Windfall Tax on Oil and Gas Companies," 2022. 5. 27.,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5-27_uk_2.html, 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의 제3장에서 다룸

↘ 휘발유, 경유의 유류세(fuel duty)를 리터당 5펜스 인하함

▶ 당초 동결 예정이던 휘발유, 경유에 대한 유류세를 3월 23일부터 12개월간 한시적으로 리터당 5펜스 인하함

▶ 이는 유류세에 적용되었던 세금 인하 중 역대 최대 규모이며, 영국 소비자들에게 2023년에 총 24억파운드[46] 규모의 지원이 될 것이라고 설명함

↘ 에너지 저감 자재(energy savings material)에 대해 부가가치세 감세를 강화

▶ 에너지 저감 자재를 설치할 경우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을 확대함

– 태양광패널(solar panels), 열펌프(heating pump), 지붕단열재(roof insulation) 등을 포함

▶ 에너지 저감 자재에 대해 5년간 한시적 영세율(5%→0%)을 적용함

↘ 카운슬세 부과구간 A~D(council tax bands A-D)에 해당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150파운드[47]의 카운슬세를 환급(rebate)[48]

▶ 약 2천만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일회성으로 지급함

▶ 금번 카운슬세 환급은 2022년 4월부터 시행되며 상환 의무는 없음

3) 독일

↘ 급격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응하고자 연방정부는 2022년 2월 23일과 3월 23일 두 차례에 걸쳐 광범위 경감대책 및 사회적 지원조치가 포함된 패키지 법안을 발표하였으며, 연방의회는 모두 승인함[49]

색일자: 2022. 6. 14.

46) 2022년 7월 2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8조원임

47) 2022년 7월 2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3만 8천원임

48) HM Treasury, “Council tax rebate: factsheet,” 2022. 4. 1., https://www.gov.uk/guidance/council-tax-rebate-factsheet, 검색일자: 2022. 7. 27.

49) 독일 재무부, “Schnelle und spürbare Entlastungen,”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Standardartikel/Themen/Schlaglichter/Entlastungen/schnelle-spuerbare-entlastungen.html, 검색일자 2022. 7. 18.

- 독일 정부는 전기 사용에 부과하던 EEG 부과금을 폐지하고 연료에 대한 에너지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기로 함
  - (전기 사용에 대한 EEG 부과금 폐지) 전기 사용량에 따라 킬로와트당 3.72센트 부과하던 EEG 부과금(EEG-Umlage)을 2022년 7월 1일부로 폐지하기로 함[50), 51)]
    - 2023년 1월에 폐지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에너지 가격 상승 대응패키지의 일환으로 6개월 조기 폐지하기로 함
  - (연료에 대한 에너지세 감면) 2022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휘발유는 리터당 29.55센트, 경유는 14.04센트 에너지세를 감면하여 유럽 최저 수준으로 부과하기로 함

- 독일정부는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과 더불어 소득공제 한도를 인상하는 등 소득세법상 세제혜택 등을 부여함
  - 2022년 2월 23일 발표된 에너지 경감 패키지 법안에 포함된 소득세법 세제 지원안은 다음과 같음
    - 2022년 1월 1일부터 근로소득표준공제(Arbeitnehmerpauschbetrag) 한도를 200유로 인상하여 1,200유로로 함
    - 2022년 1월 1일부터 기본공제(Grundfreibetrag) 한도를 363유로 인상하여 1만 347유로로 함
    - 장거리 통근자(21km 이상)에 대한 통근수당 특별공제를 0.35센트에서 0.38센트로 인상함
  -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주거급여 수급자 난방비 270유로, 근로소득자 에너지보조금 300유로, 아동 1인당 아동수당 100유로 추가지급, 사회적 약자에게 200유로, 실업자에게 100유로 지원이 있음

50) EEG 부담금은 2000년에 도입되었으며, "녹색전기요금"이라고 불리며, 태양열, 풍력, 바이오매스 및 수력 발전소의 확장에 사용될 용도로 전기 요금에 포함되어 최종소비자에게 청구되어 왔음. 독일정부, Stromkunden werden entlastet(전기고객 경감),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suche/eeg-umlage-faellt-weg-2011728, 검색일자: 2022. 7. 20.

51) EEG 부담금 수입은 특정 목적으로만 사용이 제한되어 있고 별도의 국가 계정(EEG)을 통해 관리되는 부과금이나, 전기요금에 포함되어 징수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조세로 보아 내용을 포함하여 기술하였음

4) 일본

- 일본은 2022년 4월 코로나19 사태에 있어서의 원유가격·물가 상승 등 종합 긴급대책을 발표[52]하고, 지속되는 국제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6월 물가·임금·생활 종합대책본부를 설치함[53]
  - ▶ 고유가에 대응하고 일본 국내 석유 관련 연료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석유 생산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전력회사 등이 실시하고 있는 절전프로그램에 등록한 가정에 대해 절전 포인트를 지급하는 등[54]의 에너지 관련 대책을 실시하나, 별도의 세제 관련 사항은 없음
    - 종합 긴급대책 중 적극적인 임금 인상이나 인재 투자에 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근본적으로 확충된 임금 인상 촉진 세제를 계획하고 있다는 언급이 있으나, 구체적으로 공개되거나 시행 예정인 정책은 확인되지 않음

- 물가 안정을 위하여 소비세의 인하 또한 제안되고 있으며 참의원 선거에서 야당은 소비세 인하를 공약하고 있으나[55] 공식적으로 시행된 사항은 없음

5) 프랑스

- 프랑스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여 '구매력 보호를 위한 긴급 조치 법안(Projet de loi portant mesures d'urgence pour la protection du pouvoir d'achat)'이 2022년 7월 하원을 통과하였으며, 이 법안에는 기존 대응 정책을 포함한 각 조세정책이 제시됨[56]

52) 内閣府,「コロナ禍における「原油価格·物価高騰等総合緊急対策」」, https://www5.cao.go.jp/keizai1/keizaitaisaku/keizaitaisaku.html, 검색일자: 2022. 8. 1.

53) 内閣官房,「物価·賃金·生活総合対策本部」, https://www.cas.go.jp/jp/seisaku/bukka/index.html, 검색일자: 2022. 8. 1.

54) NHK,「どうなる物価高騰対策？巨額の税金投入 内容と効果は」, https://www3.nhk.or.jp/news/special/sakusakukeizai/20220728/515/, 검색일자: 2022. 8. 1.

55) Business insider,「各政党の経済政策まとめ。消費税、インフレ対策、現金給付、私たちの給料はどうなる？【#参院選2022】」, https://www.businessinsider.jp/post-255720, 검색일자: 2022. 8. 1.

56) Vie publique, "Projet de loi portant mesures d'urgence pour la protection du pouvoir d'achat," https://www.vie-publique.fr/loi/285608-projet-de-loi-pouvoir-dachat-2022, 검색일자: 2022. 7. 26.; Gouvernement, "Protéger le pouvoir d'achat des Français: un engagement du Gouvernement," https://www.gouvernement.fr/upload/media/content/0001/03/fee5e402960d39cb694bb2fc2b8593e6ae16ffed.pdf, 검색일자: 2022. 7. 18.

- 에너지세에 대한 직접적인 경감 조치는 없으나 휘발유 공급자 및 통근 근로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부가가치세에 포함되었던 텔레비전 수신부담금을 폐지하였으며, 가스·전기에 대한 관세 동결 또는 상한 정책을 시행함
- 여타 조치로는 가치 분배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근로자의 소득세와 관련하여 비과세함

ㄴ 에너지세에 대한 직접적인 경감 조치는 없으나,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하여 리터당 보조금을 공급자에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최종 소비자에 대한 유류 가격을 할인함[57]

- 에너지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세(유류 소비세)에 대한 직접적인 경감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함[58]
  - 프랑스에서는 휘발유 등의 상품을 생산·수입·보관 등을 하는 공급자에 대하여 공급자가 공급할 때 소비세(Taxe Intérieure de Consommation sur les Produits Énergétiques: TICPE)가 부과되고,[59] 부가가치세도 부과됨
- 다만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하여 공급자에 대한 보조금이 지급되며, 이는 근로자에 대한 연료수당·보조금 제도로 대체될 예정임
  - 2022년 4월부터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프랑스 주요 대도시에서는 20%)를 제외하고 리터당 0.18유로[60]가 지급되었으며 2022년 7월까지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적용이 연장되어 10월에는 0.12유로,[61] 11월에는 0.06유로[62]로 지급액은 점차 감소되어 12월에 폐지될 예정임[63]

57) economie.gouv.fr, "≪Remise carburant≫: quel fonctionnement?," https://www.economie.gouv.fr/remise-carburant-fonctionnement, 검색일자: 2022. 7. 26.

58) legifiscal, "Gouvernement: pas de réforme de la fiscalité des carburants," https://www.legifiscal.fr/actualites-fiscales/3181-gouvernement-reforme-fiscalite-carburants.html, 검색일자: 2022. 7. 28.

59) economie.gouv.fr, "La taxe intérieure de consommation sur les produits énergétiques(TICPE)," https://www.economie.gouv.fr/entreprises/taxe-interieure-consommation-sur-produits-energetiques-ticpe#, 검색일자: 2022. 7. 28.

60) 2022년 7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40원임

61) 2022년 7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60원임

62) 2022년 7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80원임

63) Gouvernement, "Fiscalité des énergies," https://www.ecologie.gouv.fr/fiscalite-des-energies, 검색일자: 2022. 7. 28.

- 위 제도는 2022년 10월 통근 시 차량이 필요한 근로자에 대하여 차량당 100유로[64]에서 300유로[65]의 연료 수당으로 대체되고, 직장에서 30km 이상 통근하거나 직업상의 이유로 연 1만 2천km 이상 여행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함

↘ 부가가치세에 포함되었던 텔레비전 수신부담금을 폐지하였으며, 가스·전기에 대한 관세 동결 또는 상한 정책을 시행함

▶ 부가가치세에 포함되어 징수되던 개인 및 기업에 대한 텔레비전 수신 부담금을 2022년부터 폐지함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텔레비전 수신료를 경감하는 이러한 조치는 프랑스 주요 도시를 기준으로 개인에 대하여 연 138유로,[66] 호텔·카페·레스토랑과 같은 기업에 대하여 약 1억유로[67]의 구매력 상승을 의미함

▶ 관세와 관련하여 개인 및 소규모 기업의 천연가스 판매에 대한 관세 및 전기에 대한 관세 동결 또는 상한 정책을 시행함[68]

- 직접 천연가스 공급 계약을 체결한 개인 및 소규모 기업에 대하여 2021년 11월부터 천연가스 판매 규제 관세(TRVg)[69]를 동결하고, 2021년 10월부터 2022년 6월 30일의 조세를 포함한 천연가스의 가격상한제도가 2022년 6월까지 유지되었으며, 이 조치는 2022년 말까지 연장됨[70]
- 2022년 2월 전기 판매 규제 관세 상한 정책을 시행하여, 2022년 조세를 포함한 전기가격 인상을 4%까지 제한함[71]

64) 2022년 7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3만원임

65) 2022년 7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9만원임

66) 2022년 7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8만원임

67) 2022년 7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333억 4,500만원임

68) Ministère de la Transition écologique et de la Cohésion des terrioires/Ministère de la Transition énergétique, "Bouclier tarifaire pour le gaz naturel," https://www.ecologie.gouv.fr/bouclier-tarifaire-gaz-naturel, 검색일자: 2022. 8. 5.

69) 에너지부 장관이 에너지 규제위원회(CRE)와 협의하여 설정하는 (기존 공급업체가 제안한) 규제 관세를 말함(Ministère de la Transition écologique et de la Cohésion des terrioires/Ministère de la Transition énergétique, "Commercialisation du gaz: réglementation et tarifs," https://www.ecologie.gouv.fr/commercialisation-du-gaz-reglementation-et-tarifs, 검색일자: 2022. 8. 5.)

70) Légifrance, "LOI n° 2021-1900 du 30 décembre 2021 de finances pour 2022 (1)," https://www.legifrance.gouv.fr/jorf/article_jo/JORFARTI000044637845, 검색일자: 2022. 8. 5.

71) Service-Public.fr, "La hausse des tarifs réglementés de l'électricité plafonnée à 4 % au 1er février,"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actualites/A15480, 검색일자: 2022. 8. 5.

- 여타 조치로는 근로자들에게 가치 분배 보조금(Prime de Partage de la Valeur: PPV)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음
  - 가치 분배 보조금은 모든 기업의 근로자들에게 최대 3천유로,[72] 이익 분배 또는 참여 제도가 적용되는 기업의 근로자들에게는 최대 6천유로[73]임
  - 소득이 3SMIC(최저임금)[74] 이하인 근로자들에 대하여 2023년 말까지 소득세 및 사회보장분담금에서 위 보조금을 비과세함

2 초과이익세

- 본 보고서에서는 인플레이션 대응 정책 중 초과이익세(windfall tax/excess profit tax)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임
  - 초과이익(excess profit)은 업무, 계획 또는 사회가 보상받고자 하는 여타 생산적 활동과는 독립된 경제적 이익이라고 정의할 수 있음[75]
    - 법적 의미의 초과이익은 다양한 형태로 되어 있으며,[76] 그중 하위개념으로서의 초과이익은 조세, 회계 및 기업 경영을 포함하는 법적 함의를 담음[77]
    - 일반적으로 초과이익세는 기대하지 않았거나 예상 밖의 이익을 기업들의 열의를 꺾지 않으면서도 전체 인구에게 효과적으로 배분하는 역할을 함[78]
  - 초과이익세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으며 이에 각국은 초과이익세를 도입하였거나 도입을 논의하고 있음

72) 2022년 7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99만 8,700원임
73) 2022년 7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799만 7,400원임
74) SMIC(Salaire Minimum de Croissance)는 법정 최저임금으로 1 SMIC는 2022년 5월 1일 기준 시간당 10.85유로임(2022년 7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만 4,361원임)
75) Eric kades, "Windfalls," *The Yale Law Journal*, 108, 1999, p. 1491.
76) 기대하지 않았던 큰 금액의 상속액, 도박, 투자 이익, 해외 원조금, 민영화 및 근로자의 상여금까지 포함함
77) Justin Sevier, "Vicarius Windfalls," *Iowa Law Review*, 102(2), 2017, pp. 700~701.
78) Ashika David, "The Problem of State Split-Recovery Statutes: Why Punitive Damages Should Be Taxed As Windfalls," *The Tax Lawyer*, 68(4), 2015, p. 724.

- 초과이익세 도입은 첫째, 기업이 초과이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특별한 노력을 하였는지, 둘째, 기업이 초과이익의 원천인 소비자들의 이익을 위한 사회적 목적으로 초과이익을 사용할 것인지 여부에 달려 있음[79)]

가. 국가별 비교(요약)

- 조사 대상 대부분의 국가는 최근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반사 이익 등에 초과이익세를 과세 또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시행하거나 이에 대한 논의를 실시하고 있지만, 일부 국가는 최근 사태 이전부터 초과이익세 과세 또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국가도 확인되고 있음
  - 영국은 2022년 5월 26일, 석유·가스 기업에 대한 요율을 기존 40%에서 25%를 추가로 부과하는 에너지 이익 부담금(Energy (Oil and Gas) Profits Levy)을 발표하여 시행 중임
  - 이탈리아는 2022년 3월 18일 초과이익 특별연대부담금의 도입 발표 후, 이탈리아 국내에서 에너지 관련 상품을 생산·유통·판매하거나, 다른 EU 회원국으로부터 이를 수입 및 구매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25%의 요율로 부과함
  - 그리스는 2022년 3월 23일 국내 전력생산자에 대한 특별부담금 도입을 발표하였으며, 2022년 5월 27일 관련 법률을 발표하고 90%의 요율을 적용함
  - 스페인의 초과이익세는 2021년 부담금의 형태로 첫 도입되었으며, 2022년 7월 현재 새로운 초과이익세가 논의 중임
    - 첫 초과이익 부담금은 2021년 9월 15일 스페인 내 발전소에 대해 초과이익의 일부를 납부하는 형식으로 도입됨
    - 2022년 6월 25일에는 전기에 이어 석유 및 가스 부문까지 적용되는 새로운 초과이익세를 발표하였으며, 이어서 7월 12일에는 이를 은행부문까지 확대할 계획을 밝힘
  - 중국은 2006년 3월 26일, 원유와 정제유의 가격 격차를 줄이고 지속가능하고 조화로운 경제 발전을 위해 관련 석유산업 등에 초과이익세를 과세함

79) Bloomberg Tax, "In 2022, the Case for a Windfall Tax Has Never Been Stronger," 2022. 6. 16., "https://news.bloombergtax.com/tax-insights-and-commentary/in-2022-the-case-for-a-windfall-tax-has-never-been-stronger, 검색일자: 2022. 7. 18.

- 초과이익세 부과로 인한 재정수입은 기금의 형태로 중국 국세청에서 관리하며, 정제유를 생산하는 원유가공산업 등 하류(downstream) 부분 기업과 석유제품 등 가격 상승에 영향을 받는 취약계층, 기타 공익사업 등에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함

▶ 인도는 2022년 상반기 원유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국내 원유 생산자들이 국제 평가 가격으로 국내 정유소에 원유를 판매하거나 휘발유 및 경유를 수출하여 초과이익을 얻게 됨에 따라 2022년 7월 1일부터 국내 공급 원유 및 수출용 연료에 대해 특별 소비세를 과세함

▶ 헝가리는 고유가, 인플레이션 등 우크라이나 사태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하여 금융·에너지·보험·소매·제약 유통 등 총 7개 부문의 산업에 2022 및 2023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초과이익에 대해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도입하여 시행 중임

▶ 미국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대규모 이익을 거둔 정유업체의 횡재이익을 징수하기 위해 소비세를 부과하여 에너지 가격 인상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고 동시에 인플레이션을 줄이기 위한 목적의 법안이 발의되어 현재 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프랑스는 에너지 및 운송 기업에 대한 25% 세율의 초과이익세 도입이 논의되었으나, 2022년 7월 하원에서 부결됨

▶ 독일은 에너지회사의 초과이익 과세에 대해 정부와 당 간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며, 입법 가능성은 불확실한 상황임

▶ 벨기에는 전기·천연가스·석유 생산자 또는 공급자에 대한 25% 세율의 초과이익세 법안이 제안되었으나, 재무부 장관의 반대로 무산됨

▶ 오스트리아 재무부는 가스가격 상승으로 인해 유틸리티 회사들이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으나 구체적인 입법안은 발표된 바 없음

▶ 불가리아는, 국유 에너지생산업체의 축적된 이익을 높은 에너지 가격의 영향을 받는 전기 또는 천연가스 소비자를 지원하는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한 법적 메커니즘을 구축하기 위해 에너지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이에 국회 에너지 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 중임

〈표 1-Ⅲ-2〉 국가별 초과이익세 비교

국가	목적 및 도입시기	세목(또는 부담금) 및 명칭	과세(부과) 시기	과세(부과) 대상	과세표준 및 세율(요율)	신고 및 납부 방법
영국	• 초과이익에 대한 추가 부담금 부과, 취약계층의 생활비 지원, 석유·가스 기업의 투자 장려를 목적으로 2022년 5월 26일부터 시행	• 에너지 이익 부담금 (Energy (Oil and Gas) Profits Levy)	• 2022년 5월 26일부터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며, 유가가 정상수준으로 회복 시 단계적으로 부과 중단 예정(2025년 12월 말 일몰 조항 포함)	• 영국 및 영국 대륙붕에서 석유·가스를 탐사·추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함	• 2022년 5월 26일 이후 발생하는 이익의 25%를 이익 부담금으로 부과하여, 최고요율은 기존 40%에서 65%로 상향 조정됨	• 법인세 신고 및 납부에 포함하여 신고 및 납부하며, 대기업의 경우 3회에 걸쳐 분할납부 가능
이탈리아	• 에너지부문의 가격 및 관세 인상의 영향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들의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2022년 3월 18일 도입을 발표하고, 2022년 3월 21일 관련 법령을 공포함	• 에너지부문에 부과하는 '특별연대부담금 (contributo a titolo di prelievo solidaristico straordinario)'	•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 이탈리아 국내에서 전기·메탄가스·천연가스·유류제품을 생산·유통·판매하거나 다른 EU 회원국으로부터 이를 수입 및 구매하는 법인 • 부가가치세 목적으로 보고된 순매출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이며, 증가액이 500만 유로를 초과하는 기업	• 대상 기간에 대해 25%를 부과함 (3월 첫 도입 시 10%에서 인상됨)	• 2022년 부가가치세 신고와 함께 신고하며, 납부금액의 40%를 2022년 6월 30일까지 선납하고, 잔액은 2022년 11월 30일까지 납부함

〈표 1-Ⅲ-2〉 의 계속

국가	목적 및 도입시기	세목(또는 부담금) 및 명칭	과세(부과) 시기	과세(부과) 대상	과세표준 및 세율(요율)	신고 및 납부 방법
그리스	• 급등하는 물가로 압박을 받고 있는 그리스 가계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2022년 3월 23일 도입을 발표하고 2022년 5월 27일 관련 법률을 공포함	• 전력생산자에 대한 특별부담금 (Έκτακτη εισφορά στους παραγωγούς ηλεκτρικής ενέργειας)	•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 국내 전력생산자	• 대상 기간에 대해 90%를 부과함	• 에너지규제청이 부담액을 산정하고 이를 환경에너지부가 부과하며, 납부의무자는 부담금 결정액 통지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납부해야 함
스페인	• 가계가 직면한 생계비 위기에 대한 대응 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2021년 9월 15일 첫 도입하였으며, 2022년 6월 25일 새로운 초과이익세 계획을 발표함	• 2021년 조치: 별도의 명칭은 확인이 어려우며, 초과이익에 대해 일부를 상환하는 '부담금'의 형태임 (법령에서는 '특정 시설이 획득하는 초과 소득 감축을 위한 체계'로 지칭하고 있음) • 2022년 조치: 역시 별도의 명칭은 확인이 어려우며 논의가 진행 중임	• 2021년 조치: 2021년 9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 2022년 조치: 2022년과 2023년 중 예정	• 2021년 조치: 일부 명시된 시설을 제외한 스페인 영토 내 모든 발전소 • 2022년 조치: 전기, 석유, 가스 회사 및 은행 부문	• 2021년 조치: 천연가스 가격이 20유로/MWh보다 높은 경우, 천연가스 내 부화 평균계수를 반영한 공식을 활용하여 부담금을 산정함 • 2022년 조치: 논의가 진행 중임	• 2021년 조치: 시설 소유주는 매월 15일 이전까지 시설이 납부할 금액을 통보받으며, 통지를 받고 접수하면 1개월 내에 해당 금액을 납부해야 함 • 2022년 조치: 관련 사항 발표 전임

〈표 1-Ⅲ-2〉 의 계속

국가	목적 및 도입시기	세목(또는 부담금) 및 명칭	과세(부과) 시기	과세(부과) 대상	과세표준 및 세율(요율)	신고 및 납부 방법
중국	• 원유와 정제유의 가격 격차를 줄이고 지속가능하고 조화로운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2006년 3월 26일 시행함	• 「초과이익세 징수 등에 관한 법률(石油特别收益金征收管理办法)」에 따른 개별세목임	• 2006년 3월 26일부터 시행됨 • 납세의무자는 매월 초과이익을 계산해야 하며, 이를 분기별로 신고·납부해야 함	• 중국 영해에서 독자적으로 탐사·개발·생산한 원유를 판매하는 석유탐사·개발·생산기업 및 투자 등 관련 국외기업이 최소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원유를 판매한 경우 획득한 이윤	• 월 단위 가중평균 원유 판매가격을 과세표준으로 5단계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됨	• 1차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매분기 종료 후 10 영업일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2차적으로 중국 국세청이 확정 납부세액을 결정 후 통지함
인도	• 2022년 상반기 원유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도 국내 원유 생산자들에 대한 초과이익 환수	• 특별 추가 소비세	• 2022년 7월 1일부터, 월 단위 과세	• 국내 판매 원유 및 수출분 경유, 항공유	• 국내 판매 원유: 17,000루피/톤 • 수출용 경유: 11루피/리터 • 항공 터빈 연료: 4루피/리터	• 매월 5일 이내 납부, 10일 이내 신고서 제출(SSI, 소규모 사업 단위)의 경우 매월 15일 이내 납부하고, 분기 말로부터 20일 이내 신고서 제출)
헝가리				• 신용·금융기관	• 직전과세연도 조정순이자소득을 과세표준으로 2022년에는 10%, 2023년에는 8%의 세율이 적용됨	• 2022년: 10월 10일까지 신고하고 2회 균등납부 • 2023년: 6월 10일까지 신고하고 3회 균등납부

〈표 1-Ⅲ-2〉 의 계속

국가	목적 및 도입시기	세목(또는 부담금) 및 명칭	과세(부과) 시기	과세(부과) 대상	과세표준 및 세율(요율)	신고 및 납부 방법
헝가리	• 인플레이션 대응 및 국방 시스템 강화 목적으로 초과이익세 관련 법안을 채택하였고, 2022 및 2023 과세연도에 적용됨	• 대부분 본세에 부가하여 납부하는 조세로, 초과이익세(az extraprofit adókról)로 통칭함 • 다만 항공산업의 경우 분담금의 형태로 부과됨	• 소매부문에만 2022 과세연도에 일회성으로 적용되며, 나머지 6개 부문의 산업은 2022 및 2023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부과됨	• 에너지부문	• 석유회사: 전월 대비 러시아산 원유 구입가격 증가분을 과세표준으로 25%의 세율이 적용됨 • 에너지 생산자: METÁR 규정에 따른 가격보조금을 과세표준으로 65%의 세율이 적용됨	• 해당 월의 다음 달 20일까지 신고·납부
				• 보험회사	• 보험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수료소득을 과세표준으로 2022년에는 2~14%, 2023년에는 1~7%의 세율이 적용됨	•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선납 규정 존재
				• 소매업체	• 연간 매출 회전율을 기준으로 부과된 소매판매세액의 80%	• 2022년 11월 30일까지 신고·납부
				• 제약 유통 산업	• 생산자 가격을 기준으로 한 조정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2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됨 • 0~10,000HUF: 20% • 10,000HUF~: 28%	• 2022년 7월 20일까지 신고·납부

〈표 1-Ⅲ-2〉 의 계속

국가	목적 및 도입시기	세목(또는 부담금) 및 명칭	과세(부과) 시기	과세(부과) 대상	과세표준 및 세율(요율)	신고 및 납부 방법
헝가리				• 통신회사	• 조정된 매출총이익을 과세표준으로 누진세율이 적용됨 • 0~10억HUF: 0% • 10억HUF~500억HUF: 1% • 500억HUF~1,000억HUF: 3% • 1,000억HUF~: 7%	• 다음 해 5월 말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선납 규정 존재
				• 항공사	• 알바니아, 안도라, 우크라이나 등은 1인당 3,900 HUF, 그 외 국가의 경우 1인당 9,750HUF의 분담금이 부과됨	• 해당 월의 다음 달 20일까지 신고·납부
미국	• 에너지 가격 인상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고 동시에 인플레이션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법안이 발의됨 • 재무 위원회에 회부된 상황임	• 원유 초과이익세(Big Oil Windfall Profits Tax)	•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시행일 이후 반출되거나 반입되는 과세 대상 원유에 적용되고, 부과되는 세금의 납부시기 등 절차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장관이 추후 정함	• 하루 최소 30만 배럴 이상의 과세 대상 원유를 추출하거나 수입하는 회사 • 과세 대상 원유는 원유, 원유 응축물, 천연 가솔린을 말함	• 2015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의 배럴당 브렌트유 평균 가격과 현재 판매가격 간 차액에 대하여 50%를 세금으로 부과함	• 부과된 세금에 관한 정보의 제출 및 납부시기 등 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장관이 추후 정함
프랑스	• 도입 논의 중이었으나 하원에서 부결됨	• 초과이익세(taxe sur les superprofits)	• 확인되지 않음	• 유류·가스 에너지 기업 및 운송 기업	• 25%	• 확인되지 않음

〈표 1-Ⅲ-2〉 의 계속

국가	목적 및 도입시기	세목(또는 부담금) 및 명칭	과세(부과) 시기	과세(부과) 대상	과세표준 및 세율(요율)	신고 및 납부 방법
독일	• 브레멘 주가 연방정부에 초과이익 과세 입법을 위해 구체적인 검토를 제안하였으나, 재무부장관이 거부의사를 밝힘	• 초과이익세 (Übergewinnsteuer)	• 확인되지 않음			
벨기에	• 에너지부가 도입을 제안하였으나, 재무부의 반대로 무산됨	• 초과이익세 (taxe sur les surprofit)	• 2022년 1월 1일~2022년 12월 31일	• 전기·천연가스·석유 생산자 또는 공급자	• 25%	• 확인되지 않음
오스트리아	• 에너지회사 초과이익에 대해 다양한 대책이 논의 중임	• 확인되지 않음				
불가리아	• 에너지 가격의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소비자를 지원하기 위한 보상 프로그램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에너지법 개정안을 발의함 • 국회 에너지위원회에서 제1차 심의를 진행한 상황임	• 전력생산자에 대한 분담금	• 확인되지 않음	• 부과 대상은 자본의 100%를 국가가 소유한 국유에너지생산업체의 초과이익임	• 확인되지 않음	

자료: 본문의 내용을 저자 정리

나. 도입한 국가

○ 초과이익세를 도입한 국가로는 영국,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중국, 인도, 헝가리가 있음

▶ 초과이익세 시행 국가 중, IMF는 헝가리의 2022년 인플레이션율 전망치가 10.3%로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영국(7.4%), 인도(6.1%), 스페인(5.3%), 이탈리아(5.3%), 그리스(4.5%) 순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 전 세계 주요 국가에서 인플레이션율이 높게 나타나는 가운데, 중국(2.1%)만 유일하게 2%대의 인플레이션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그림 1-Ⅲ-1] 초과이익세 시행 국가의 인플레이션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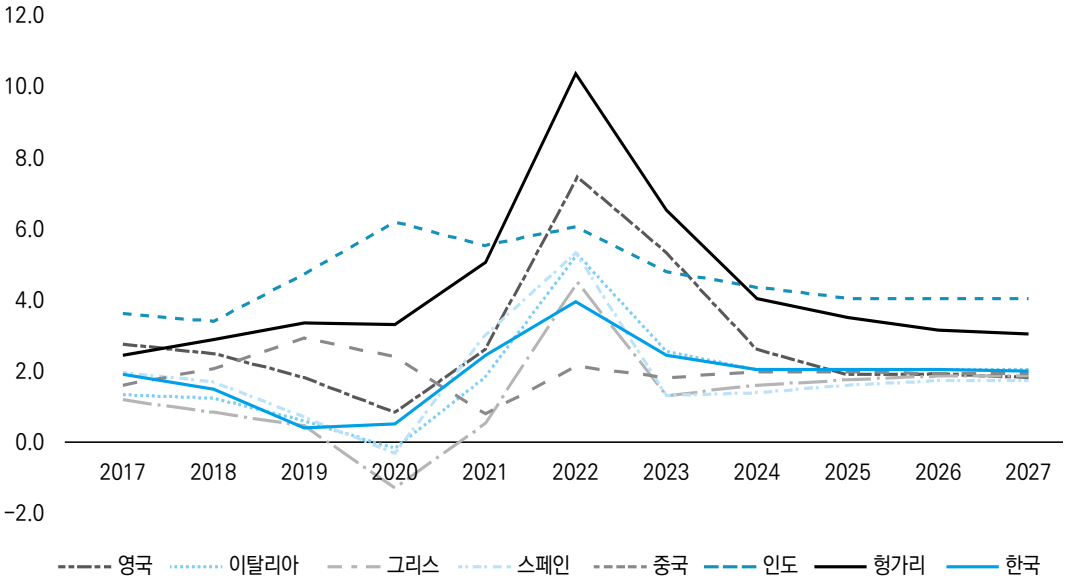

주: 1. 영국, 그리스, 스페인, 중국, 헝가리의 경우 2022년부터 전망치이며, 이탈리아, 인도의 경우 2021년부터 전망치임
2. 한국은 초과이익세를 도입한 국가는 아니나 비교를 위해 그래프에 표기함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22. 4.

1) 영국

가) 정책 목적 및 예상 효과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최근 몇 년간 에너지가격이 급등하여 석유·가스 기업이 초과이익을 얻었으므로 25%의 에너지 이익 부담금(Energy (Oil and Gas) Profits Levy)을 부과하고자 함[80]
  - ▶ 에너지 가격은 국내에서 설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영국의 에너지 생산 기업들은 가격 수용자(price-taker)인바, 영국 기업들이 글로벌 가격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미미할 것임[81]
    - 이에 따라, 에너지 이익 부담금 부과는 영국 내 에너지가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힘

- 석유·가스 기업으로부터 징수한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여, 생활비 지원패키지(cost of living support package)의 일환으로서 에너지 비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국 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자 함[82]
  - ▶ 영국 정부는 부담금 부과로 12개월간 50억파운드[83]의 추가 재원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생활비 지원 패키지의 일부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힘
    - 영국 정부는 2022년 5월 26일 생활비 지원 패키지를 발표하였으며, 여기에는 유류세 인하, 에너지 저감 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카운슬세 환급 등이 포함됨[84]

80) HM Treasury, "Energy Profits Levy Factsheet," 2022. 5. 26.,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ost-of-living-support/energy-profits-levy-factsheet-26-may-2022, 검색일자: 2022. 7. 6.

81) HM Revenue & Customs, "Energy (Oil and Gas) Profits Levy," 2022. 7. 11.,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the-energy-oil-and-gas-profits-levy-bill/energy-oil-and-gas-profits-levy, 검색일자: 2022. 7. 18.

82) HM Treasury, "Energy Profits Levy Factsheet," 2022. 5. 26.,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ost-of-living-support/energy-profits-levy-factsheet-26-may-2022, 검색일자: 2022. 7. 6.

83) 2022년 7월 1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7.8조원임

84) HM Treasury, "Cost of living support factsheet," 2022. 5. 26.,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ost-of-living-support/cost-of-living-support-factsheet-26-may-2022, 검색일자: 2022. 7. 18.

-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초과이익을 영국의 석유·가스 생산에 재투자하도록 하는, 대규모 투자 시 초과공제(Super-deduction) 형태의 신규 투자공제 제도를 마련함[85]
  - 이를 통해, 에너지기업이 영국 내 석유·가스산업에 재투자할 수 있는 직접적인 유인을 제공하고자 함
  - 신규 투자공제 제도는 투자지출(investment expenditure)의 80%를 부담금 부과 대상 이익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기업이 1파운드 투자 시 총 91펜스의 조세 절감 효과(기존 공제 효과 포함)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함
  - 조세 부담의 상승은 기업의 경제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동 조치는 기업의 투자활동을 촉진시키는 영향도 가져오므로, 이러한 경제적 영향을 모두 고려했을 때 유의미한 거시경제적 영향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힘[86]

나) 입법 논의과정 및 시기

- 2022년 5월 26일 영국 정부가 에너지 기업에 대한 이익 부담금을 발표한 이후 법령 개정안 발표 및 하원 통과를 거쳐 시행되었음
  - 2022년 5월 26일, 영국 정부는 석유·가스 기업에 대해 25%의 추가 부담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음[87]
  - 2022년 6월 21일, 영국 정부는 법령 개정안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한 공중의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함[88]
    - 동 의견수렴 절차는 6월 28일 종료되었음

85) HM Treasury, "Energy Profits Levy Factsheet," 2022. 5. 26.,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ost-of-living-support/energy-profits-levy-factsheet-26-may-2022, 검색일자: 2022. 7. 6.

86) HM Revenue & Customs, "Energy (Oil and Gas) Profits Levy," 2022. 7. 11.,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the-energy-oil-and-gas-profits-levy-bill/energy-oil-and-gas-profits-levy, 검색일자: 2022. 7. 18.

87) HM Treasury, "Millions of most vulnerable households will receive £1,200 of help with cost of living," 2022. 5. 26., https://www.gov.uk/government/news/millions-of-most-vulnerable-households-will-receive-1200-of-help-with-cost-of-living, 검색일자: 2022. 7. 19.

88) IBFD, "United Kingdom Issues Public Consultation on New Energy Profits Levy," 2022. 6. 23.,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6-23_uk_2.html, 검색일자: 2022. 7. 19.

▶ 2022년 7월 11일, 영국 하원(House of Commons)은 에너지 이익 부담금 법안(Energy (Oil and Gas) Profits Levy Act 2022)을 승인하였음[89]

다) 과세의 대상 시기 및 대상(산업)

↘ (대상 시기) 2022년 5월 26일 이후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발효되며, 2022년 5월 26일 이후 발생한 초과이익에 대해 부과됨

▶ 동 부담금은 한시적으로 운용되며, 유가가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면 단계적으로 부과가 중단될 예정임

– 에너지 이익 부담금 법안에는 2025년 12월 말 일몰되는 조항이 포함됨

↘ (대상 산업) 영국 및 영국 대륙붕(UK Continental Shelf: UKCS)[90]에서 석유·가스를 탐사·추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함

▶ 동 초과이익 부담금을 전력생산기업으로 확대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 중임[91]

라) 부담금 부과율

↘ 기존의 최고세율인 40%에 25% 추가 부담금을 더해, 최고 65%의 세율을 부과함

▶ 석유·가스 기업에 대한 기존의 최고세율(headline tax rate)은 40%이며, 이는 석유업에 대한 법인세(Ring Fence Corporation Tax: RFCT) 30%와 보조부과금(Supplementary Charge: SC) 10%를 합산한 세율임

– 석유산업에 대한 법인세(RFCT)는 일반 법인에 적용되는 법인세와 같은 것이지만, 영국과 영국 대륙붕에서 석유 및 가스를 추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수입과 비용의 계산을 그 사업범위 내로 국한하는 제도로 2022년 기준 30%의 RFCT 세율이 적용됨[92]

89) IBFD, “Parliament Enacts 25% Oil and Gas Profits Levy in Fast-Track Procedure,” 2022. 7. 14.,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7-14_uk_1.html, 검색일자: 2022. 7. 19.

90) 영국 대륙붕(UKCS)은 북해, 북대서양, 아일랜드해, 영국해협 일부를 포함하는 지역을 의미함

91) IBFD, “UK Chancellor Aims to Expand Windfall Tax to Electricity Generators,” 2022. 6. 8.,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6-08_uk_1.html, 검색일자: 2022. 7. 6.

- 보조부과금(SC)은 석유 및 가스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10%의 부과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부과금이며, 2002년 4월 17일부터 법인은 링펜스(Ring Fence) 무역으로부터의 수익에 관한 10%의 보조부과금을 납부함[93]

▶ 여기에 더해 25% 부담금을 추가로 부과하여, 에너지기업이 납부하게 되는 최고세율은 65%가 됨

↘ 부담금 부과 대상 이익의 산출은 RFCT 과세표준 산출방식과 동일하나 몇 가지 차이점이 있음[94]

▶ 금융비용(finance cost)과 해체비용(decommissioning cost)은 손금불산입함

▶ 또한, 이전 연도의 RFCT 손실은 부담금 부과 대상 이익 산출 시 이월 공제되지 않도록 하여, 부담금 부과 대상 이익이 이전 기간의 손실로 인해 감소되지 않도록 함

▶ 신규 투자공제 제도(new 80% investment allowance)를 도입하여 에너지기업 투자지출(investment expenditure)의 80%를 부담금 부과 대상 이익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함

- 투자지출은 비용이 지출된 해에 즉시 공제가 가능하도록 함
- 영국 정부는 이 투자공제 제도를 통해 기업이 1파운드 투자 시 총 91펜스의 조세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함[95]

마) 신고 및 납부 방법

↘ 법인세 신고·납부와 동일한 방식으로 신고 및 납부함[96]

▶ CT600 양식에 맞추어 납부세액을 산출 및 신고함

▶ 대기업의 경우 3회에 나누어 분할 납부가 가능함

92) 박정수, 『주요국의 조세제도-영국편』, 한국조세연구원, 2004, pp. 429~432.

93) 상동

94) HM Treasury, "Energy Profits Levy - Technical Note," 2022. 6. 15.,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ost-of-living-support/energy-profits-levy-technical-note, 검색일자: 2022. 8. 8.

95) HM Revenue & Customs, "(Draft) Explanatory note," 2022. 7. 7., https://www.gov.uk/government/consultations/draft-legislation-energy-oil-and-gas-profits-levy-bill/draft-explanatory-note-2, 검색일자: 2022. 7. 18.

96) EY, "UK announces new 25% energy profits levy," 2022. 5. 26., https://www.ey.com/en_gl/tax-alerts/uk-announces-new-25-energy-profits-levy, 검색일자: 2022. 7. 18.

2) 이탈리아

가) 정책 목적 및 예상 효과

- 이탈리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기업과 소비자에 대한 에너지부문의 가격 및 관세 인상의 영향을 억제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초과이익세의 성격을 가지는 특별연대부담금(contributo a titolo di prelievo solidaristico straordinario)을 도입함[97], [98]
  - ▶ 이탈리아 마리오 드라기 총리는 2022년 3월 신규 에너지 관련 조치를 발표하면서 관련 자금은 국가 예산이 아닌 에너지 회사로부터 조달할 것이라고 설명함
    - 이탈리아는 이러한 에너지 관련 지원으로 2021년 7월 이후부터 2022년 3월까지 이미 160억유로 이상을 지출한 바 있음
  - ▶ 초과이익의 일부에 부담금을 부과하여 높은 원자재 가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및 기업 생산자에 재배분하고자 함

- 2021년 10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에너지 관련 기업이 보고한 매출 이익 증가분에 특별연대부담금을 부과할 경우 100억유로의 수입이 확보될 것으로 추정됨[99]
  - ▶ 이는 추가 지원책 도입을 모색하면서, 자금 확보를 위해 부담금 요율을 2배 이상 인상하고 부과 대상 기간을 확대한 후의 수입 추정액임
  - ▶ 더 낮은 요율로 2022년 3월까지의 초과이익분에 대해 부과하는 2022년 3월에 발표한 초기안에 따르면 44억유로의 수입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였음

나) 입법 논의과정 및 시기

- 2022년 3월 18일 마리오 드라기 총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초과이익세에 해당하는 에너지 관련 회사에 대한 특별연대부담금[100]의 도입을 발표한 후 곧이어 이와 관련한

97) Bloomberg, "Italy to Hit Energy Companies With 10% Levy to Fund Support Plan," 2022. 3. 19.,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2-03-19/italy-to-hit-energy-companies-with-10-levy-to-fund-support-plan, 검색일자: 2022. 7. 21.

98) Decree No. 51 (20/05/2022) §1

99) Financial Times, "Draghi to extend Italian windfall tax on energy groups," 2022. 5. 3., https://www.ft.com/content/9d077a0a-d3b8-402f-ade4-2ced9afa735b, 검색일자: 2022. 7. 21.

100) Decree No. 51 (20/05/2022) §1

법령을 공포함[101]

- 2022년 3월 21일 부과 목적, 부과 대상 및 기간, 요율 등이 규정된 법령 제21호(Law-Decree No. 21)를 공포함
- 2022년 5월 20일 일부 조항을 개편하여 법률 제51호로 전환하였으며, 개편 이유 및 내용은 아래와 같음
  - 2022년 5월 2일 140억유로 규모의 에너지 관련 추가 지원책을 승인한 후, 같은 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와 관련한 자금 조달을 위해 부담금 부과 요율을 인상할 것을 밝힘[102]
  - 요율 인상과 함께 기존 부과기간을 1개월 연장함[103]

↘ 특별연대부담금 도입 발표 후 다음과 같은 도입 반대 의견이 제시되기도 함[104]

- 에너지부문에서 활동하는 법인에 한정하여 이루어지는 선택적 과세임
- 추가적인 수익에 대한 별도 부과는 기존의 과세원칙에서 벗어남
- 부담금 납부액이 법인세 계산 시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것은 이탈리아 법률 내 사업 소득 계산의 일반 원칙에 위배됨
- 부담금은 이탈리아 헌법 제3조 및 제53조와 비례 및 재정 능력의 원칙을 포함하는 조세에 관한 헌법 원칙의 위반 가능성(proporzionalità 및 capacità contributiva)이 존재하며 일부 EU 규정과도 상충함

101) Bloomberg, "Italy to Hit Energy Companies With 10% Levy to Fund Support Plan," 2022. 3. 19.,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2-03-19/italy-to-hit-energy-companies-with-10-levy-to-fund-support-plan, 검색일자: 2022. 7. 21.

102) Financial Times, "Draghi to extend Italian windfall tax on energy groups," 2022. 5. 3., https://www.ft.com/content/9d077a0a-d3b8-402f-ade4-2ced9afa735b, 검색일자: 2022. 7. 21.

103) Decree No. 51 (20/05/2022) §1

104) Gianni & Origoni, "Italian tax authorities clarify certain aspects of the Italian windfall tax for energy companies," https://www.gop.it/doc_pubblicazioni/993_o59fwlbvdy_eng.pdf, 검색일자: 2022. 7. 21.

다) 부과 시기 및 대상[105]

-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106] 부가가치세 목적으로 보고된 매출총이익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증가한 기업을 대상으로 함
  - 이때 증가액은 500만유로를 초과하는 기업에 한해 적용되며, 매출 증가액이 마이너스인 경우 증가액은 0원으로 간주함
  - 초기 2022년 3월 17일 공포된 법령 제21호에서는 부과기간이 2022년 3월 31일까지였으나, 2022년 5월 17일 전환된 법률 제51호에서 2022년 4월 30일로 연장됨

- 법률 제51호에서 초과이익 특별연대부담금 부과 대상을 2022년 회계연도에 이탈리아 영토에서 에너지 관련 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때 에너지 관련 활동을 하는 법인에는 국내에서 전기, 메탄가스, 천연가스, 유류제품을 생산하거나 유통 및 판매하거나, 다른 EU 회원국으로부터 동일 품목에 대해 수입하거나 구매하는 기업이 포함됨
  - 이때 전기, 가스, 녹색채권, 기타 연료 등을 교환하는 플랫폼을 조직하거나 운영하는 법인은 제외됨[107]

라) 요율

- 초과이익 특별연대부담금의 부과 요율은 25%로, 납부액은 법인세(IRES)나 생산활동에 대한 지역세(IRAP)의 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 2022년 3월 특별연대부담금 도입 발표 초기에는 법령 제21호에서 요율을 10%로 규정하였음
  - 추가적인 에너지 관련 조치에 따른 자금 확보 목적으로 2022년 5월 요율이 25%로 변경되었으며, 해당 요율이 법령 제21호가 법률 제51호 전환하는 과정에서 반영됨

105) 상동

106) 초기 2022년 3월 17일 공표되었던 Decree No. 21에서는 2022년 3월 31일까지로 설정되었음

107) Gianni & Origoni, “Italian tax authorities clarify certain aspects of the Italian windfall tax for energy companies,” https://www.gop.it/doc_pubblicazioni/993_o59fwlbvdy_eng.pdf, 검색일자: 2022. 7. 21.

마) 신고 및 납부방법

- 특별연대부담금의 납부는 2차로 나누어 진행하며, 대상 법인은 매월 전월 평균 가격 보고의 의무가 있음
  - 납부액의 40%를 2022년 6월 30일까지 선납하고, 잔액은 2022년 11월 30일까지 납부함
  - 또한 특별연대부담금의 대상이 되는 법인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매월 전기, 천연가스, 메탄가스 및 석유제품의 구매, 생산 및 판매에 대한 전월 평균 가격을 이탈리아 독점 금지청(Italian antitrust authority)에 보고해야 함

3) 그리스

가) 정책 목적 및 예상 효과

- 그리스 정부는 급등하는 물가로 압박을 받고 있는 그리스 가계에 대한 지원을 위해,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기업이 획득한 우발적인 소득을 회수하여 소비자의 높은 에너지 요금을 상쇄하는 데 사용하고자 함[108), 109)]
  - 2021년 유럽의 가스가격은 기록적인 수준으로 치솟았으며, 유럽의 최대 가스 공급국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로 인해 2022년까지 높은 가격이 유지됨
  - 그리스는 2021년부터 가계, 기업, 농민을 위한 전기요금 보조에 25억유로 이상을 지출하였으며, 2022년 상반기에는 추가 보조금과 유가환급금으로 11억유로를 추가로 제공하는 조치를 발표함[110)]

108) Reuters, “Greek power firms face tax bill from windfall profits on gas price hikes,” 2022. 5. 11., https://www.reuters.com/article/greece-energy-profit-idUKL5N2X31R2, 검색일자: 2022. 7. 26.

109) Reuters, “Greece to review energy firms’ financials for possible windfall profits,” 2022. 5. 24., https://www.reuters.com/business/energy/greece-review-energy-firms-financials-possible-windfall-profits-2022-03-23m, 검색일자: 2022. 7. 26.

110) Reuters, “Greece to review energy firms’ financials for possible windfall profits,” 2022. 5. 24., https://www.reuters.com/business/energy/greece-review-energy-firms-financials-possible-windfall-profits-2022-03-23m, 검색일자: 2022. 7. 26.

나) 입법 논의과정 및 시기

- 2022년 3월 23일 그리스 총리는 2021년 이후 높은 에너지 가격으로 인해 발생한 초과이익에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 에너지 기업의 재무상태를 검토할 것을 밝힘[111]
  - 그리스 정부는 에너지규제청(RAE)에 2021년 10월부터의 대형 에너지 회사의 재정을 조사하고 초과이익을 식별하도록 지시함[112]

- 2022년 5월 27일 관련 법률 4936/2022(ΝΟΜΟΣ ΥΠ' ΑΡΙΘΜ. 4936)을 제정하여 발표함
  - 해당 법률은 기후 및 에너지 위기의 대처와 관련한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제37조에 '전력생산자에 대한 특별부담금(Έκτακτη εισφορά στους παραγωγούς ηλεκτρικής ενέργειας)' 내용을 담고 있음

다) 부과 시기 및 대상

- 그리스의 초과이익 특별부담금은 국내 전력 생산자의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의 초과이익에 대해 부과함[113]
  - 2021년 10월에서 2022년 3월 사이 관련 기업이 획득한 횡재 이익은 약 5억 9천만유로로 추정됨[114]

라) 요율[115]

- 그리스 정부는 국내 전력 생산업체의 초과이익에 대해 90%의 요율로 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임
  - 이때 초과이익은 이전연도와 동일한 월과의 매출총이익의 양(+)의 차이 금액으로

111) Reuters, "Greece to review energy firms' financials for possible windfall profits," 2022. 5. 24., https://www.reuters.com/business/energy/greece-review-energy-firms-financials-possible-windfall-profits-2022-03-23m, 검색일자: 2022. 7. 26.

112) Reuters, "Greece to review energy firms' financials for possible windfall profits," 2022. 5. 24., https://www.reuters.com/business/energy/greece-review-energy-firms-financials-possible-windfall-profits-2022-03-23m, 검색일자: 2022. 7. 26.

113) ΝΟΜΟΣ ΥΠ' ΑΡΙΘΜ. 4936 (Bill 4936/2022) §37.1.

114) Balkan Green Energy News, "Greece to tax power producers' windfall profits," 2022. 5. 16., https://balkangreenenergynews.com/greece-to-tax-power-producers-windfall-profits, 검색일자: 2022. 7. 26.

115) ΝΟΜΟΣ ΥΠ' ΑΡΙΘΜ. 4936 (Bill 4936/2022) §37.2.

쌍방 전력매매계약에 따라 전년도의 고정가격 공급계약률을 적용하고, 최종소비자에게 제공한 할인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됨

마) 신고 및 납부방법[116]

- 에너지규제청이 납부액을 산정하여 환경에너지부가 부과하며, 납세자는 부담금 결정액 통지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납부해야 함

4) 스페인

가) 정책 목적 및 예상 효과

- 스페인 정부는 가계가 직면한 생계비 위기에 대한 대응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일부로, 초과이익과 관련한 부담금의 부과 혹은 과세 조치를 도입함[117]
  - ▶ 스페인 총리는 이러한 조치가 대기업이 현 상황에서 얻은 예외적인 혜택을 근로자에게 다시 배분하는 절차임을 강조함[118]
  - ▶ 최근 계획 중인 새로운 초과이익세가 도입될 경우 에너지 관련 부문 과세로 연간 약 20억유로의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은행부문에서는 연간 약 15억유로(2년간 30억유로)의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함[119]

나) 입법 논의과정 및 시기

- 2021년 9월 15일 가스 및 전력 소비 시장에서의 천연가스 가격 급등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여러 세금 및 규제 조치가 포함된 왕실 법률 17/2021(Royal Decree-Law 17/2021)이 발효됨

116) NOMOΣ ΥΠ' ΑΡΙΘΜ. 4936 (Bill 4936/2022) §37.4, §37.5.

117) Bloomberg Tax, "Spain Keeps Banks Guessing on Windfall Tax Ahead of Meeting," 2022. 7. 14., https://news.bloombergtax.com/daily-tax-report-international/spanish-government-to-meet-with-banks-to-discuss-windfall-tax, 검색일자: 2022. 7. 25.

118) ITR, "This week in tax: Spain plans windfall tax," 2022. 7. 15., https://www.internationaltaxreview.com/article/2ad0g09lgnzk2k5i1hlhc/this-week-in-tax-spain-plans-windfall-tax, 검색일자: 2022. 7. 25.

119) IBFD, "Planned Windfall Profit Tax on Energy Sector Extended to Banks, Prime Minister Says," 2022. 7. 14.,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2-07-14_es_1, 검색일자: 2022. 7. 25.

- 이 법률에는 천연가스 가격의 인상을 전기가격에 반영하여 공급자가 얻은 소득 증가분에 비례하는 금액을 스페인 전력 시스템(sistema eléctrico español)에 상환하는 부담금 관련 조항이 포함됨[120]

↘ 이후 2022년 6월 25일, 각료 회의를 통해 에너지 사업자의 범위를 확장하여 새로운 초과이익세를 도입할 계획임을 발표함[121]

- 이후 2022년 7월 12월 스페인 총리는 물가 인상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30억유로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초과이익세의 대상범위를 은행까지 확대할 예정임을 밝힘[122]
- 2022년 7월 현재 은행 등 이해관계자와의 논의가 진행 중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의회에 제출할 예정임[123]

↘ 2022년 6월의 초과이익세 발표 후 은행부문에서 다음과 같은 반발 의견이 제시되기도 함

- 초과이익세는 이중 과세로 법적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은행 측 입장임[124]
- 또한 유럽중앙은행 부총재인 루이스 데 귄도스(Luis de Guindos)는 스페인 정부에 초과이익세 과세가 은행부문의 지불 능력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 바 있음[125]

120) Freshfields Bruckhaus Deringer, "Windfall Profit Taxes - do they work?," 2022. 6. 23., https://www.freshfields.com/en-gb/our-thinking/knowledge/briefing/2022/06/windfall-profit-taxes--do-they-work/, 검색일자: 2022. 7. 21.

121) IBFD, "Government Extends Tax Measures to Control Inflation and Announces Windfall Profit Tax on Energy Companies," 2022. 6. 29.,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2-06-29_es_1, 검색일자: 2022. 7. 25.

122) Bloomberg Tax, "Spain Weighs 5% Tax on Bank Commissions and Interest Charges," 2022. 7. 18., https://news.bloombergtax.com/daily-tax-report/spain-weighs-5-tax-on-bank-fees-interest-charges-pais-says, 검색일자: 2022. 7. 25.

123) IBFD, "Planned Windfall Profit Tax on Energy Sector Extended to Banks, Prime Minister Says," 2022. 7. 14.,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2-07-14_es_1, 검색일자: 2022. 7. 25.

124) Bloomberg Tax, "Spanish Central Bank to Join Talks Over New Tax on Lenders," 2022. 7. 20., https://news.bloombergtax.com/daily-tax-report/spain-central-bank-head-to-meet-government-banks-to-discuss-tax?context=article-related, 검색일자: 2022. 7. 25.

125) Bloomberg Tax, "ECB Cautions Spain About Hurting Bank Solvency With Tax Plan," 2022. 7. 22., https://news.bloombergtax.com/daily-tax-report/ecb-cautions-spain-against-hu

- 또한 초과이익세가 대출자들의 세금 부담을 늘리고 가계와 사업체의 신용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다) 부과 시기 및 대상

- 스페인의 첫 초과이익세에 해당하는 초과이익 부담금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운영되었으며, 일부 명시된 시설을 제외하고 스페인 영토 내 모든 발전소(풍력, 태양광 발전, 수력 등)에 적용됨[126]
  - 초기에는 ⅰ) 보조금을 지급받은 재생 가능 자산, ⅱ) 비반도 지역 전기 시스템, ⅲ) 순 전력이 10MW 이하인 시설을 제외함
  - 첫 도입 시 거래가 고정 가격 계약을 통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아 이와 관련한 한계점이 지적되어 면세 요건이 추가됨
    - 고정 가격의 경우 계약가가 가격 인상 전에 확정되므로, 정부가 기업이 창출하지 못한 이익에 대해 기업에 불이익을 주고 있음을 의미함
    - 이에 따라 스페인 정부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초과이익 부담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 이전에 이루어진 계약에 의해 공급가가 결정된 거래의 경우
      - 상품이 고정된 가격으로 거래되는 경우(그러나 고정 가격이라도 일정 금액 이상으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는 제외됨)
      - 상품 계약이 특수관계자 거래가 아닌 경우

- 이후 2023년 1월부터 도입될 초과이익세는 대상부문이 더 확대될 예정임[127]
  - 에너지 회사, 전기 회사에서 더 나아가 가스 및 석유 회사까지 포함하여 2022년과 2023년에 얻은 추가 이익에 대한 임시 과세를 의회에 승인할 것을 촉구함
  - 이밖에도 은행부문에 대해서도 초과이익세 도입을 발표함

---

rting-bank-solvency-with-tax-plan?context=article-related, 검색일자: 2022. 7. 25.

126) Freshfields Bruckhaus Deringer, "Windfall Profit Taxes - do they work?," 2022. 6. 23., https://www.freshfields.com/en-gb/our-thinking/knowledge/briefing/2022/06/windfall-profit-taxes--do-they-work, 검색일자: 2022. 7. 21.

127) IBFD, "Planned Windfall Profit Tax on Energy Sector Extended to Banks, Prime Minister Says," 2022. 7. 14.,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2-07-14_es_1, 검색일자: 2022. 7. 25.

라) 요율

- 2021년 9월 도입된 초과이익 부담금은 천연가스 가격이 20유로/MWh보다 높은 경우 다음 공식에 근거하여 납부액을 산출함[128]

  - $$\text{납부액} = \frac{\text{에너지 생산량} \times (\text{가스가격} - 20) \times \alpha}{FMIG(\text{천연가스 내부화의 평균 계수})}$$

    - 이때 α는 측정값을 비례적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여 0.9로 설정됨

  - $$FMIG = \frac{\text{중급 } CCGT(\text{복합가스터빈발전})(55\%)}{CCGT\text{를 통해 전기가격이 형성된 월별 가중 평균 시간}}$$

- 2023년 1월 도입 예정인 새로운 초과이익세와 관련한 세율 및 적용방식은 아직 여러 가지 방향으로 논의 중에 있음

  - 은행부문과 관련해서는 은행 수수료와 이자 수수료에 5%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음[129]

마) 신고 및 납부 방법

- 2022년 6월 30일까지 시행된 초과이익 부담금과 관련한 납부액의 정산과 납부는 매월 이루어짐[130]

  - 담당자는 매월 15일 이전까지 발전소가 납부할 금액을 계산해 통보해야 하며, 시설 소유주는 통지를 받고 접수하면 1개월 내에 해당 금액을 납부해야 함

- 2023년 1월 시행 예정인 초과이익세와 관련한 신고 및 납부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발표된 사항이 없음

---

128) Watson Farley & Williams, "Temporary Windfall Profit Reduction Mechanism in Remuneration From Electricity Production Activity in Spain," 2021. 9. 23., https://www.wfw.com/articles/temporary-wind fall-profit-reduction-mechanism-on-remuneration-from-electricity-production-activity-in-spain/, 검색일자: 2022. 7. 25.

129) Bloomberg Tax, "ECB Cautions Spain About Hurting Bank Solvency With Tax Plan," 2022. 7. 22., https://news.bloombergtax.com/daily-tax-report/ecb-cautions-spain-against-hurting-bank-solvency-with-tax-plan?context=article-related, 검색일자: 2022. 7. 25.

130) Watson Farley & Williams, "Temporary Windfall Profit Reduction Mechanism in Remuneration From Electricity Production Activity in Spain," 2021. 9. 23., https://www.wfw.com/articles/temporary-windfall-profit-reduction-mechanism-on-remuneration-from-electricity-production-activity-in-spain/, 검색일자: 2022. 7. 25.

5) 중국

가) 정책 목적 및 예상 효과

- 중국 정부는 원유(crude oil)와 정제유(refined oil)의 가격 격차를 줄이고 지속가능하고 조화로운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131] 상류(upstream)[132] 부분 석유기업 등에 초과이익세(石油特别收益金)를 부과하고 있음[133]
  - ▶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반사이익에 주요국이 초과이익세를 부과하는 임시적인 과세조치 이전부터 시행되었으며, 중국 내 석유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자 초과이익세를 부과함

- 이러한 초과이익세 부과로 인한 재정수입은 기금의 형태로 중국 국세청에서 관리하며,[134] 정제유를 생산하는 원유가공산업 등 하류(downstream) 부분 기업에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함[135]
  - ▶ 또한, 석유제품 등 가격 상승에 영향을 받는 농어민, 택시기사 등 취약계층과 기타 공익사업에도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하고 있음

나) 입법 논의과정 및 시기

- 중국 정부의 엄격한 가격 규제로 오랫동안 국제시장에 비해 낮은 수준의 원유 가격을 유지해왔으나, 2003년 이후 국제 원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중국 시장에서 원유와 정제유의 가격 격차가 점차 커짐[136]

---

131) 「石油特别收益金征收管理办法(초과이익세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중국 국세청, 「고시[2006] 72호」, http://www.gd.gov.cn/zwgk/wjk/zcfgk/content/post_2937083.html, 검색일자: 2022. 7. 27).

132) 지하에 부존하고 있는 원유를 탐사하고 개발하여 생산하는 것 등을 석유산업의 상류 부분이라 하며, 이러한 원유를 가공하여 정제유로 만드는 것 등을 하류 부분이라 함

133) ITR, "Windfall tax on the petroleum industry introduced," 2006. 5. 31., https://www.internationaltaxreview.com/article/2a69rwdbs0m16xwq01jb4/windfall-tax-on-the-petroleum-industry-introduced, 검색일자: 2022. 7. 26.

134) 「石油特别收益金征收管理办法(초과이익세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135) ITR, "Oil price slump sees China shift tax burden from companies to consumers," 2015. 1. 13., https://www.internationaltaxreview.com/article/2a696hblxucme20n8ghds/oil-price-slump-sees-china-shift-tax-burden-from-companies-to-consumers, 검색일자: 2022. 7. 26.

136) ITR, "Windfall tax on the petroleum industry introduced," 2006. 5. 31., https://www.inte

▶ 원유와 정제유 가격 격차가 점차 커질수록 정제유를 생산하는 원유가공산업의 손실과 석유제품 등 최종소비자의 부담이 커짐

- 이에 중국 정부는 원유와 정제유의 가격 격차를 줄이고 지속가능하고 조화로운 경제발전을 위해, 관련 석유산업 등에 대한 초과이익세 과세 논의를 진행하였고, 2006년 3월 26일에 별도의 법안인 「초과이익세 징수 등에 관한 법률(石油特别收益金征收管理办法)」을 시행함[137]

  ▶ 관련 석유산업은 지하에 부존하고 있는 석유를 탐사하고 개발하여 생산하는 상류부분임

  – 중국 최대 상류 부분 석유기업인 중국석유공사(CNPC)는 2008년에 초과이익세로 850억위안[138]을 납부함[139]

- 초과이익세 시행에 대한 입법 논의과정에서 찬성 또는 반대 입장 등의 의견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려우나, 중국석유공사(CNPC) 등은 2020년에 초과이익세 과세가 원유 생산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고 주장함[140]

  ▶ 코로나19 팬데믹과 저유가로 원유 생산 및 공급에 어려움이 있는데도 초과이익세를 과세하고 있어, 원유 생산량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음

  – 중국 정부가 관련 기업들에 초과이익세를 면제해주거나 다른 방도를 찾아야 된다고 함

- 또한 납세의무자가 실제 판매수량 등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징수에 어려움이 있음[141]

---

rnationaltaxreview.com/article/2a69rwdbs0m16xwq01jb4/windfall-tax-on-the-petroleum-industry-introduced, 검색일자: 2022. 7. 26.

137) 중국 국세청, 「고시 [2006] 72호」, http://www.gd.gov.cn/zwgk/wjk/zcfgk/content/post_2937083.html, 검색일자: 2022. 7. 27.

138) 2022년 7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6조 5,095억원임

139) China Briefing, "China to Reconsider Taxes, Subsidies for Oil," 2009. 2. 11., https://www.china-briefing.com/news/china-to-reconsider-taxes-subsidies-for-oil/?hilite=windfall+tax, 검색일자: 2022. 7. 26.

140) Argus, "China's CNPC think-tank calls for windfall tax reform," 2020. 5. 22., https://www.argusmedia.com/en/news/2107781-chinas-cnpc-thinktank-calls-for-windfall-tax-reform, 검색일자: 2022. 7. 26.

141) Argus, "China clamps down on refiners' windfall tax evasion," 2020. 9. 29., https://www.argusmedia.com/en/news/2145381-china-clamps-down-on-refiners-windfall-tax-evasion, 검색일자: 2022. 7. 26.

▶ 중국 정부는 2018년에 초과이익세 징수를 지방정부에 위임하여 대처하려 했으나, 세수에는 크게 변화가 없었음

다) 과세의 대상 시기 및 대상(산업)

ㄴ 중국 영해에서 독자적으로 탐사·개발·생산한 원유를 판매하는 석유탐사·개발·생산기업 및 투자 등 관련 국외 기업이[142] 최소기준금액을 초과하여 원유를 판매한 경우 획득한 이윤에 초과이익세를 과세함[143]

▶ 중국의 초과이익세 대상 산업은 석유탐사·개발·생산기업이며, 납세의무자는 중국 영해에서 독자적으로 탐사·개발·생산한 원유를 판매하는 석유탐사·개발·생산기업 및 투자 등 관련 국외 기업임

▶ 초과이익세 납세의무자는 매월 초과이익을 계산해야 하며, 이를 분기별로 신고·납부해야 함

– 초과이익세는 해당 기업의 비용과 경비 등에 포함되며, 법인세 세액 계산 전에 공제할 수 있음[144]

라) 세율

ㄴ 초과이익세는 월 단위 가중평균 원유 판매가격을 과세표준으로 5단계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됨[145]

▶ 국제시장의 유가 수준과 비교할 수 있도록 과세표준 계산에 배럴(barrel)당 달러단위를 사용함[146]

▶ 초과이익세 월 단위 납부세액 산출 계산식은 다음과 같음[147]

– 초과이익세 월 단위 납부세액 = [(해당 월 가중평균 원유 판매가격 - 구간별 최소

142) 「石油特别收益金征收管理办法(초과이익세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143) 「石油特别收益金征收管理办法(초과이익세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44) 「石油特别收益金征收管理办法(초과이익세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145) 「石油特别收益金征收管理办法(초과이익세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146) 「石油特别收益金征收管理办法(초과이익세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147) 중국 국세청, 「关于国家重大水利工程建设基金等政府非税收入项目征管职责划转有关事项的公告」, 2020. 12. 25., http://www.chinatax.gov.cn/chinatax/n810341/n810765/n3359382/201812/c4182652/content.html, 검색일자: 2022. 7. 27.

기준금액)×구간별 세율 - 구간별 간편계산 공제액] × 실제 배럴단위 판매수량[148] × 해당 월 평균 달러환율(중국 인민은행 발표)[149]

- 초과이익세 도입 초기에는 과세표준이 배럴당 40달러 이상이면, 20%의 세율이 적용되고, 배럴당 60달러 이상이면 최고세율인 40%가 적용됨[150]

- 이 후 중국 정부는 납세의무자의 초과이익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구간별 과세표준을 점진적으로 인상했으나, 세율의 변화는 없었음
  - ▶ 2011년 11월 1일부터는 과세표준이 배럴당 55달러 이상이면 20%의 세율이 적용되고, 배럴당 75달러 이상이면 최고세율인 40%가 적용됨[151]
  - ▶ 2015년 1월 1일부터는 과세표준이 배럴당 65달러 이상이면 20%의 세율이 초과분에 적용되고, 배럴당 85달러 이상이면 최고세율인 40%가 적용됨[152]
    - 당시 미국의 셰일오일 생산량 증가, 경제 저성장으로 수요 증가 둔화, 달러화 강세,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분열 등으로 국제 유가 하락세가 가속화되는 추세였음[153]

148) 판매수량은 기업이 해당 월에 판매한 실제 배럴 수 또는 정박한 선박에 있는 원유의 톤-배럴 비율에 따라 계산하기도 함(「石油特别收益金征收管理办法(초과이익세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149) 달러환율은 중국 인민은행이 발표하는 해당 월 평균환율을 말함(상동)

150) 중국 국세청, 「고시 [2006] 72호」, http://www.gd.gov.cn/zwgk/wjk/zcfgk/content/post_2937083.html, 검색일자: 2022. 7. 27.

151) China National Energy Administration, 「关于提高石油特别收益金起征点的通知」, 2012. 1. 9., http://www.nea.gov.cn/2012-01/09/c_131349560.htm, 검색일자: 2022. 7. 27.; IBFD, "Windfall tax threshold for oil industry increased," 2012. 1. 9.,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12-01-09_cn_1.html, 검색일자: 2022. 7. 25.

152) 중국 국세청, 「2015年起石油特别收益金起征点提高至65美元/桶」, 2014. 12. 28., http://www.gov.cn/xinwen/2014-12/28/content_2797695.htm, 검색일자: 2022. 7. 27.; IBFD, "Oil windfall tax brackets effective 1 January 2015," 2014. 12. 29.,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14-12-29_cn_1.html, 검색일자: 2022. 7. 25.

153) 한국 에너지공단, 「최근 국제 유가 하락의 원인 및 향후 국제 유가 전망(2014)」, http://www.energy.or.kr/web/kem_home_new/energy_issue/mail_vol3/pdf/(%EC%A0%9C54%ED%98%B8)%EC%A3%BC%EA%B0%84%EC%97%90%EB%84%88%EC%A7%80%EC%9D%B4%EC%8A%88%EB%B8%8C%EB%A6%AC%ED%95%91_2014.10.17._%EA%B5%AD%EB%82%B4%EC%9D%B4%EC%8A%88.pdf, 검색일자: 2022. 7. 27.

〈표 1-Ⅲ-3〉 중국 초과이익세 세율표

(단위: 배럴당 달러, %)

과세표준(월 단위 가중평균 원유 판매가격)			세율 (%)	간편계산 공제액
2006년 3월 26일부터 2011년 10월 31일까지	2011년 1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29일까지	2015년 1월 1일 이후		
40 이상~45 미만	55 이상~60 미만	65 이상~70 미만	20	0
45 이상~50 미만	60 이상~65 미만	70 이상~75 미만	25	0.25
50 이상~55 미만	65 이상~70 미만	75 이상~80 미만	30	0.75
55 이상~60 미만	70 이상~75 미만	80 이상~85 미만	35	1.5
60 이상	75 이상	85 이상	40	2.5

자료: 본문 내용을 저자 정리

마) 신고 및 납부 방법

↘ 중국 초과이익세는 신고·납부 방식에 따라 1차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2차로 중국 국세청이 확정납부세액을 결정한 후 통지함

▶ 납세의무자는 월 단위로 계산한 초과이익세를 신고서식에 작성하여 매분기 종료 후 10 영업일 이내에 온라인 세무행정시스템, 우편, 서면 등의 방법으로[154] 중국 국세청에 신고해야 함[155]

[그림 1-Ⅲ-2] 중국 초과이익세 신고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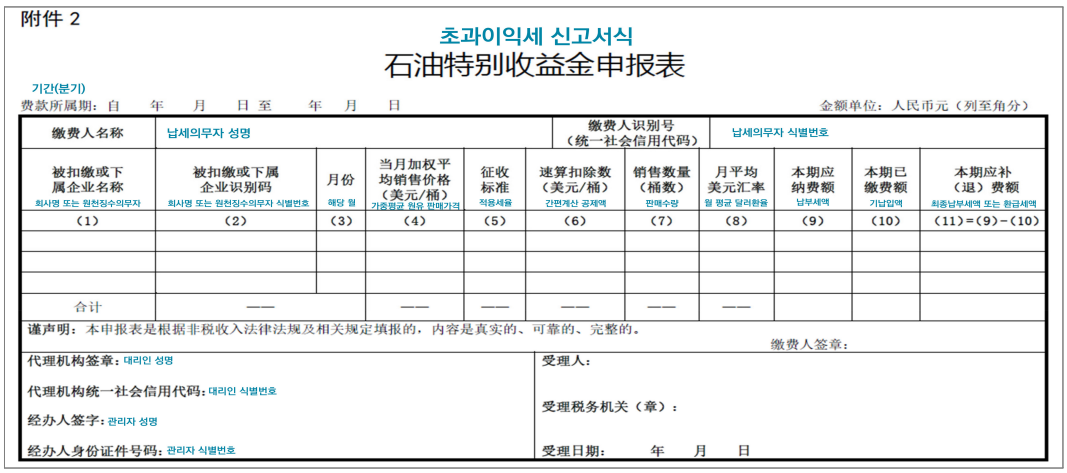

附件 2

초과이익세 신고서식

石油特别收益金申报表

기간(분기)

费款所属期: 自 年 月 日 至 年 月 日

金额单位: 人民币元（列至角分）

缴费人名称	납세의무자 성명				缴费人识别号（统一社会信用代码）		납세의무자 식별번호			
被扣缴或下属企业名称 회사명 또는 원천징수의무자	被扣缴或下属企业识别码 회사명 또는 원천징수의무자 식별번호	月份 해당 월	当月加权平均销售价格（美元/桶） 가중평균 원유 판매가격	征收标准 적용세율	速算扣除数（美元/桶） 간편계산 공제액	销售数量（桶数） 판매수량	月平均美元汇率 월 평균 달러환율	本期应纳费额 납부세액	本期已缴费额 기납입액	本期应补（退）费额 최종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1)	(2)	(3)	(4)	(5)	(6)	(7)	(8)	(9)	(10)	(11)=(9)-(10)
合计	——		——	——	——	——	——			

谨声明: 本申报表是根据非税收入法律法规及相关规定填报的，内容是真实的、可靠的、完整的。

缴费人签章:

代理机构签章: 대리인 성명 代理机构统一社会信用代码: 대리인 식별번호 经办人签字: 관리자 성명 经办人身份证件号码: 관리자 식별번호	受理人: 受理税务机关（章）: 受理日期: 年 月 日

주: 중국 초과이익세 신고서식 각 항목을 한글로 번역함

자료: 중국 국세청, 「关于国家重大水利工程建设基金等政府非税收入项目征管职责划转有关事项的公告」, 2020. 12. 25., http://www.chinatax.gov.cn/chinatax/n810341/n810765/n3359382/201812/c4182652/content.html, 검색일자: 2022. 7. 27.

154) 중국 국세청, 「非接触式办税缴费事项清单」, 2022. 5. 26., http://www.chinatax.gov.cn/chinatax/n810341/n810825/c101434/c5175619/content.html, 검색일자: 2022. 7. 27.

155) 「石油特别收益金征收管理办法(초과이익세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 이 후 중국 국세청은 확정납부세액을 결정하여,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함[156]

– 납세의무자는 통지를 받은 후 5 영업일 이내에 지로,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등의 방법으로 납부해야 함

▶ 납세의무자가 기한 내에 초과이익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함[157]

– 미납세액의 1만 분의 5를 지연일수만큼 가산하여 부과함

6) 인도

가) 정책 목적 및 예상 효과

↘ 2022년 상반기 원유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도 국내 원유 생산자들은 국제 평가가격으로 국내 정유소에 원유를 판매하거나 휘발유 및 경유를 수출하여 초과이익을 얻게 됨에 따라 인도 정부는 이러한 초과이익에 대해 횡재세의 성격으로 과세하고자 함[158]

▶ 이러한 과세에 의해 인도 국내 석유 생산량이 2억 1,200만배럴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약 83억달러[159]의 증분 이익이 생길 것으로 전망됨[160]

▶ 또한 초과이익에 대한 과세 대상이 국내 판매 원유 및 수출용 경유, 항공유에 한정되기 때문에 국내 석유제품 및 연료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나) 입법 논의과정 및 시기

↘ 인도 정부는 2022년 6월 30일, 2002년 재정법 중 중앙 소비세법상 특별 추가 소비세법을 규정하는 제147조에 석유 원유 및 항공 터빈 연료를 과세 대상으로 추가하고,[161] 휘발유 및 경유의 세율을 개정하여 7월 1일부터 적용함

156) 「石油特別收益金征收管理办法(초과이익세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157) 「石油特別收益金征收管理办法(초과이익세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158) 인도 재무부, https://www.pib.gov.in/PressReleasePage.aspx?PRID=1838455, 검색일자: 2022. 7. 25.

159) 2022년 7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0조 8,630억 4천만원임

160) upstream, "India imposes $8.3 billion windfall tax on oil producers," https://www.upstreamonline.com/finance/india-imposes-8-3-billion-windfall-tax-on-oil-producers/2-1-1251884, 검색일자: 2022. 7. 25.

▶ 이후 국제 유가 하락으로 7월 20일 기존의 국내 판매 원유 및 경유 및 항공유에 대한 특별 추가 소비 세율을 인하하고 수출용 휘발유에 대한 특별 추가 소비세를 폐지함

다) 과세의 대상 및 대상 시기

↘ 인도의 특별 추가 소비세(Special Additional Excise Duty)[162]는 국내 판매 원유 및 수출분 경유, 항공유에 대해 부과함

▶ 2022년 7월 1일 최초 부과 시에는 국내 판매 원유와 수출분 휘발유 및 경유, 항공유에 대하여 부과하였음[163]

↘ 특별 추가 소비세는 인도 연방 소비세법(Central Excise Act)을 준용하여 월 단위로 과세됨

라) 세율

↘ 인도 현지에서 생산되는 원유에 대해 톤당 1만 7천루피[164]의 특별 추가 소비세를 부과하며, 경유의 경우 리터당 11루피,[165] 항공 터빈 연료의 경우 리터당 4루피[166]를 부과함[167]

▶ 이러한 특별 추가 소비세는 직전 회계연도 연간 생산량이 200만톤 미만인 소규모 생산자는 부과가 면제됨

161) TaxGuru, "Special Additional Excise Duty on Crude Petroleum and ATF," https://taxguru.in/excise-duty/special-additional-excise-duty-crude-petroleum-atf.html, 검색일자: 2022. 7. 25.

162) West Bengal State Portal, "Excise Duty," "https://wb.gov.in/acts/act_excise_excise_duty.pdf," "An excise or excise tax (sometimes called an excise duty) is a type of tax charged on goods produced within the country," 검색일자: 2022. 8. 8.

163) 인도 재무부, "https://www.pib.gov.in/PressReleasePage.aspx?PRID=1838455," 검색일자: 2022. 7. 25.

164) 2022년 7월 2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7만 7,726원임

165) 2022년 7월 2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80원임

166) 2022년 7월 2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5원임

167) CNBC, "India cuts windfall tax on diesel, aviation fuel exports," https://www.cnbc.com/2022/07/20/india-cuts-windfall-tax-on-diesel-aviation-fuel-exports.html#:~:text=Windfall%20tax%20on%20diesel%20and,took%20effect%20on%20July%2020., 검색일자: 2022. 7. 25.

▶ 또한 추가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작년 물량을 초과하여 생산된 신규 물량에 대해 특별 추가 소비세를 면제함

마) 신고 및 납부 방법

↘ 해당 특별 추가 소비세는 인도 연방 소비세법(Central Excise Act)에 따라 징수되고 관리됨에 따라[168] 매월 5일 이내 연방 소비세를 납부하고 10일 이내 신고서를 제출함[169]

▶ SSI(소규모 사업 단위)의 경우 매월 15일 이내 연방 소비세를 납부하고, 분기 말로부터 20일 이내 신고서를 제출함

7) 헝가리

가) 정책 목적 및 예상 효과

↘ 헝가리 정부는 고유가, 인플레이션 등 우크라이나 사태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하기 위하여 초과이익세 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함[170]

▶ 막대한 세수 확보를 통해 예산수지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함[171]

– 약 800억~900억HUF[172]에 달하는 재정자금이 조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중 약 500억HUF[173]가 소비자에게 이전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함

▶ 세원 중 일부는 헝가리 국방 시스템을 강화할 목적으로, 국방 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임

168) Ministry Of Law, Justice And Company Affairs, The Finance Act, 2002, No. 20 OF 2002, Chapter 147, (3)

169) Central Board of Indirect Taxes&Customs, “Frequently Asked Questions,” https://www.cbic.gov.in/htdocs-cbec/faq, 검색일자: 2022. 7. 28.

170) IBFD, “Government to Impose Windfall Profits Tax on Large Multinationals,” 2022. 5. 30.,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5-30_hu_1.html, 검색일자: 2022. 7. 14.

171) Wolters Kluwer, “Mit kell tudni az extraprofit adóról, azaz az extraadókról?,” 2022. 6. 28., https://ado.hu/ado/mit-kell-tudni-az-extraprofit-adorol-azaz-az-extraadokrol/, 검색일자: 2022. 7. 14.

172) 2022년 7월 1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648억~2,979억원임

173) 2022년 7월 1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655억원임

나) 입법 논의과정 및 시기

- 2022년 5월 26일, 8개 부문 산업을 대상으로 법안 도입에 관한 사항을 발표하고, 6월 4일에 최종적으로 7개 부문 산업에 대한 초과이익세(az extraprofit adókról) 관련 법령(197/2022(VI. 4.))을 채택하여 관보에 게재함[174]
  - ▶ 대부분 본세에 부가하여 납부하는 조세 형태로 부과되나, 항공산업은 분담금의 형태로 부과됨
  - ▶ 광고부문을 포함하여 총 8개 부문에 초과이익세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법안에는 광고부문에 대한 언급이 없음

다) 과세의 대상(산업) 및 대상 시기

- 법안 발효시기는 2022년 7월 1일로 2022 및 2023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적용 대상 산업은 총 7개 부문(금융, 에너지, 보험, 소매, 제약 유통, 통신, 항공사)임[175]
  - ▶ 신용·금융기관은 2022년과 2023년에 지방세에 관한 법률(helyi adókról szóló 1990)에 따라 결정된 부가세(surtax)를 납부해야 함
    - – 은행, 투자회사,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pénzforgalmi szolgáltatók) 등이 이에 해당됨
  - ▶ 에너지부문의 경우, 석유회사 및 에너지 생산자에게 초과이익세에 대한 납부의무가 부여되는데, 2022년과 2023년에 특별세(special tax)를 납부해야 함
    - – 석유 생산업체 및 재생 에너지, 광업 및 광물 원료, 지열 에너지, 에너지 공급업체 등이 이에 해당됨
  - ▶ 보험회사는 보험세에 관한 법률(A biztosítási adóról szóló 2012. évi CII. törvény)에 따라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추가 보험세를 납부해야 함[176]
  - ▶ 모든 소매업체는 일회성으로 2022년에 소매판매세에 추가로 부과된 부가세(surtax)를 납부해야 함

174) IBFD, "Hungary Imposes Windfall Profits Tax on Oil Companies, Surtaxes Across Other Industries," 2022. 6. 8.,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6-08_hu_1.html, 검색일자: 2022. 7. 14.

175) 197/2022. (VI. 4.) Korm. rendelet az extraprofit adókról(초과이익세에 대한 헝가리 법령)

176) ECOVIS HUNGARY, "Az extraprofit adókról," https://ecovis.hu/az-extraprofit-adokrol, 검색일자: 2022. 7. 14.

- 제약 산업의 경우, 2022년과 2023년에 의약품 유통업자에게 수입가격과 소비자가격의 차이를 기준으로 결정된 이익에 대한 부가세(surtax)를 납부해야 함
- 통신회사는 2022년과 2023년에 과세연도 순 매출액을 기준으로 결정된 통신추가세액을 납부해야 함
- 항공사의 경우 승객 1인당 출국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됨

라) 세율

↘ 초과이익세율은 산업마다 상이하며, 특히 통신회사의 경우에는 과세표준별 누진세율이 적용됨

- 신용·금융기관은 직전과세연도 조정순이자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22년에 10%, 2023년에 8%의 초과이익세율이 적용됨
- 석유회사는 전월 대비 러시아산 원유 구입 가격 증가분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5%의 특별세율이 적용되며, 에너지 생산자의 경우에는 METÁR 규정에 따른 가격보조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65%의 특별세율이 적용됨
- 보험회사는 보험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수료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22년에는 보험서비스에 따라 2~14%의 세율이 적용되며, 2023년에는 1~7% 세율이 적용됨
- 소매업체는 연간 매출 회전율을 기준으로 부과된 소매판매세액의 80%를 추가 납부하여야 함
- 제약산업의 경우, 생산자 가격이 1만HUF[177] 미만인 경우에는 20%, 초과인 경우에는 28%의 세율이 적용됨
- 통신회사는 과세연도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서비스 비용 등의 조정을 적용한 매출총이익 규모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10억HUF[178] 이하는 0%, 10억HUF 초과 500억HUF[179] 이하는 1%, 500억HUF 초과 1천억HUF[180] 이하는 3%, 1천억HUF 초과는 7%의 세율이 적용됨

177) 2022년 7월 1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만 2천원임
178) 2022년 7월 1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2억원임
179) 2022년 7월 1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600억원임
180) 2022년 7월 1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200억원임

▶ 항공사는 국가별로 부과되는 출국 수수료가 상이함

- 알바니아, 안도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북마케도니아, 아이슬란드, 코소보, 리히텐슈타인, 몰도바, 모나코, 몬테네그로, 영국, 노르웨이, 산마리노, 스위스, 세르비아, 우크라이나 및 유럽연합에 위치한 그레이트 모나코의 경우 승객 1인당 3,900HUF[181]를 지불해야 함
- 그 외의 경우 승객 1인당 9,750HUF[182]를 지불해야 함

마) 신고 및 납부 방법

↘ 헝가리의 초과이익세는 대부분 본세에 부가하여 납부하는 조세로, 과세연도 연간 보고서를 기반으로 신고시기와 납부시기가 결정됨[183]

▶ 신용·금융기관의 부가세는 직전과세연도 연간순매출액(조정순이자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되며, 2022년에는 2회에 걸쳐, 2023년에는 3회에 걸쳐 납부하여야 함

- 2022년에는 10월 10일까지 별도의 서식에 따라 세액을 확정하고 10월 10일과 12월 10일까지 2회에 걸쳐 균등하게 납부하여야 함
- 2023년에는 6월 10일까지 별도의 서식에 따라 세액을 확정하고 6월 10일, 10월 10일, 12월 10일까지 3회 균등 분할 납부하여야 함

▶ 석유회사 및 에너지 생산자는 매월 해당 월의 다음 달 20일까지 특별세를 법정 신고서식에 따라 국세청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법안 발효 전인 2022년 1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납부하여야 할 특별세의 경우 2022년 9월 20일까지 확정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함

▶ 보험회사는 2022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2023년 1월 31일까지 추가세액을 신고·납부하고, 2023년에 발생한 수수료 소득에 대해서는 2024년 1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선납 규정이 존재함

-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2022년 11월 30일에 추가세액을 선납하고, 이후 2023년 5월 31일까지는 2022년 7월 1일 사이

181) 2022년 7월 1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만 2천원임
182) 2022년 7월 1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만 1천원임
183) 197/2022. (VI. 4.) Korm. rendelet az extraprofit adókról(초과이익세에 대한 헝가리 법령)

에 결제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추가세액을 선납하고 다음 해 1월 31일에 확정 신고하여 세액을 추가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음[184]

- ▶ 소매부문은 2021년 소매판매세에 대해 연환산한 금액의 80%를 2022년 11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2021 과세연도에는 납부의무가 없었으나 2022년에 소비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함
- ▶ 제약산업의 경우 2022년 4월부터 적용되며, 신고마감일은 2022년 7월 20일임[185]
- ▶ 통신회사는 당해연도 순매출액을 기준으로 추가세액을 산출하여, 다음 해 5월 말일까지 세무당국이 규정하는 법정 서식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함
  - 통신세도 선납의무가 있으며, 2022년 7월 1일을 포함하는 과세연도에 대해서 2022년 11월 30일까지 선납신고를 하여야 하며, 2023년부터 시작되는 과세연도에는 2022년에 결정된 추가세 만큼의 세액을 2022 과세연도 연간추가납부세액 정산마감일인 2023년 5월 말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 ▶ 항공사는 국세청 및 관세청에 해당 월의 다음 달 20일까지 추가세액을 전자 신고·납부하여야 함

다. 도입 논의 중인 국가

- ↘ 초과이익세를 아직 도입하지 아니하였으나 도입을 논의 중인 국가로는 미국, 프랑스, 독일, 벨기에, 오스트리아, 불가리아가 있음
  - ▶ 초과이익세 도입을 논의 중인 국가 중, IMF는 불가리아의 2022년 인플레이션율 전망치가 11.0%로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벨기에(8.0%), 미국(7.7%), 오스트리아(5.6%), 독일(5.5%), 프랑스(4.1%) 순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184) KPMG, "Az államháztartás egyensúlyát megőrző különadók," https://home.kpmg/hu/hu/home/tanulmanyok/2022/06/taxalert-2022-06-08.html, 검색일자: 2022. 7. 14.

185) 상동

[그림 1-Ⅲ-3] 초과이익세 도입 논의 중인 국가의 인플레이션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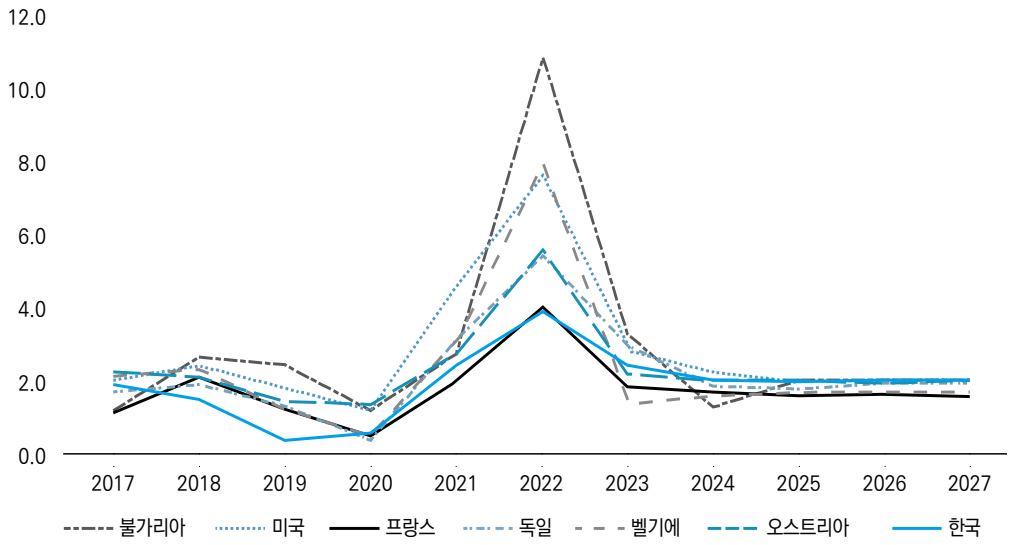

주: 1. 불가리아, 미국, 프랑스, 독일, 벨기에, 오스트리아는 2022년부터 전망치임
2. 한국은 초과이익세를 도입한 국가는 아니지만 비교를 위해 그래프에 표기함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22. 4.

1) 미국

가) 정책 목적 및 예상 효과

↘ 최근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대규모 이익을 거둔 정유업체의 횡재이익을 징수하여 에너지 가격의 인상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금 마련 목적의 "Big Oil Windfall Profits Tax" 법안이 발의됨[186]

▶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거대 정유업체에 책임을 부과하기 위한 목적의 법안임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치솟자 거대 정유회사들이 초과이익을 창출한 상황에서 거대 정유회사들의 횡재이익을 재원으로 에너지 소비자들의 구제기금을 마련하고 물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줄이고자 함

186) Congressman Ro Khanna, "Release: With Gasoline Prices Sky High, Khanna, Whitehouse Announce Curb On Big Oil Companies Engaged In Profiteering To Provide Relief At The Pump," https://khanna.house.gov/media/press-releases/release-gasoline-prices-sky-high-khanna-whitehouse-announce-curb-big-oil, 검색일자: 2022. 7. 19.

-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 세계 화석연료 공급이 중단되고 세계적으로 석유 및 가스 부족이 발생한 이후 석유 및 가스 거대 기업들은 전례 없는 기록적인 초과 이윤을 창출하고 있음[187]
- Shell, ExxonMobil, BP, Chevron, ConocoPhillips 등 상위 석유회사는 2021년 1분기보다 200% 이상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해당 기업들은 석유가격을 낮추거나 기후 공약의 이행에 필요한 투자를 하는 대신 자사주 매입의 형태로 주주들에게 이익에 기여하고 있음
- 바이든 미 대통령은 "거대 정유회사들이 더 많은 석유를 생산하지 않음으로써 더 많은 돈을 벌기 때문에 시추를 하지 않고 있다"고 정유사들을 규탄한 바 있음[188]

↘ 미국 민주당 상원 상원위원인 론 와이든(Ron Wyden)은 2022년 6월, 이윤율이 10%를 넘어서는 석유회사에 대하여 추가로 21%를 과세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189]

▶ 론 와이든 의원이 해당 내용을 발표한 뒤 현재 입법 발의된 바는 없음

▶ 해당 제안은 연간 수입이 10억달러를 초과하는 석유·가스회사 중 초과 이윤이 10%를 넘는 경우 기존에 부과되는 법인세 21%와 더불어 21%를 추가로 과세하겠다는 것임

- 론 와이든 의원은 초과 이윤을 내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두 배로 부과하여 왜곡된 이윤 구조를 되돌릴 것이며 가격을 내리거나 공급을 확대하는 등 투자를 시행한 기업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함

187) CAP, "These Top 5 Oil Companies Just Raked In $35 Billion While Americans Pay More at the Pump," https://www.americanprogress.org/article/these-top-5-oil-companies-just-raked-in-35-billion-while-americans-pay-more-at-the-pump/, 검색일자: 2022. 7. 19.

188) 연합뉴스, 「유가 안정 비상 미 민주, 석유회사 초과이익 징벌세 추진」, https://www.yna.co.kr/view/AKR20220615005900071, 검색일자: 2022. 7. 19.

189) Bloomberg Tax, "Biden Ally Floats 21% Surtax on Oil Profits to Blunt Inflation," 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document/X79MQRJS000000?criteria_id=2e35903fa82e1eed106300666cf052e6&navCriteriaId=c36185063256bff3989d3889b59aa4ee&searchGuid=4f2faa03-bac3-43e2-b9e6-c26aa94900e3&search32=HyoK_NPwbFypM80z830Thw%3D%3DGB8K-9xotrEfTFPtLfRodM45mdl1k4pwW3N2F0Gv3dXbxBx5qe7MJig2sialdW8uBvus1IsYHL6FTygWVGV9jzBUljJKaBlZKq3x8hfw7JV7mqspSuNx1ISg4rf33B0lZWejPoYX4tUp_GJFZB6EiQcHFintSmBHZAw71Dm3q8zbts-gWAKnvDiQA4AoaOD6eIlaYRsdzFfOI_7mIPoWQO6N2qwsR_KupZQu5fbqpfPOBx9BbTFbVzLDf2x_6aMw78W9HERaB80h159iw7zv73YI2yWL7FdE2mI9jJb7DGs%3D, 검색일자: 2022. 7. 19.

나) 입법 논의과정 및 시기

- 2022년 3월 10일 셸던 화이트하우스(Sheldon Whitehouse) 상원의원이 “Big Oil Windfall Profits Tax Act” 법안을 발의[190]하였고 2022년 3월 11일 로 칸나(Ro Khanna) 하원의원이 하원 세입위원회(House Ways and Means Committee)[191]에 해당 법안을 제안하였음
  - ▶ 셸던 화이트하우스 상원의원에 의해 발의된 “Big Oil Windfall Profits Tax”는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금을 마련한 뒤 이를 소비자에게 환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6년도 내국세법을 수정하는 법안임
    - 법안은 현재 재무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임
    - 1986년도 내국세법을 수정하여 정유사가 횡재한 이윤에 대한 소비세를 부과하고 이를 통해 징수된 세금을 개별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등 기타 목적을 위한 법안임이 입법제안서에서 설명함
    - 입법 형식은 1986년도 내국세법에 새로운 장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 ▶ 로 칸나 하원의원은 2022년 3월 11일 하원 세입위원회에 “Big Oil Windfall Profits Tax Act”를 제안함
    - 세입위원회에 제출한 제안서에는 입법제안서와 마찬가지로 1986년도 내국세법을 개정하여 정유사의 횡재 이윤에 대한 소비세를 부과하고 이를 통해 징수된 세금을 개별 납세자에게 환급하기 위한 목적의 법안임이 설시되어 있음

다) 과세의 시기 및 대상(산업)

- 현재 미국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Big Oil Windfall Profits Tax Act”[192]의 적용 대상은 하루 최소 30만배럴 이상의 과세 대상 원유를 추출하거나 수입하는 회사임
  - ▶ 과세 대상을 구분하는 30만배럴 임계값은 다국적 석유 생산업체인 Exxon Mobil,

190) Congress.gov, “S.3802-Big Oil Windfall Profits Tax Act,” https://www.congress.gov/bill/117th-congress/senate-bill/3802?q=%7B%22search%22%3A%5B%22windfall+profit+tax%22%2C%22windfall%22%2C%22profit%22%2C%22tax%22%5D%7D&r=2&s=1, 검색일자: 2022. 7. 19.

191) Congress.gov, “H.R.7061-Big Oil Windfall Profits Tax Act,” https://www.congress.gov/bill/117th-congress/house-bill/7061,검색일자: 2022. 7. 19.

192) Congress.gov, “S.3802 - Big Oil Windfall Profits Tax Act,” https://www.congress.gov/bill/117th-congress/senate-bill/3802/text?format=txt, 검색일자: 2022. 7. 19.

BP와 같이 올해 수백억달러의 횡재이익을 벌어들인 소수의 회사를 특정하기 위함임[193]

- 과세 대상 원유는 원유, 원유 응축물, 천연 가솔린을 말함
-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시행일 이후에 반출되거나 반입되는 과세 대상 원유에 적용함

라) 세율

- "Big Oil Windfall Profits Tax Act"에서는 2015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의 배럴당 브렌트유 평균 가격(66달러)과 현재 판매가격 간 차액에 대하여 50%를 소비세 명목으로 과세할 것을 제안함[194]
  - 1980년 지미 카터(Jimmy Carter)가 도입한 "Windfall Profits Tax"와 유사함
    - 지미 카터 행정부는 1980년 4월 국내에서 생산된 원유에 대한 횡재세를 도입하여 12.81달러를 초과하는 석유 판매가치에 대해 70%를 소비세로 과세하였고 1988년 폐지한 바 있음[195]
    - 차이점은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횡재세의 과세 대상으로 국내에서 생산된 원유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임
  - 세수는 분기별 세금 환급 수표의 형태로 미국의 소비자에게 환급될 예정임[196], [197]
    - 징수된 횡재세를 재원으로 형성된 'Protect Consumers from Gas Hikes Fund'를 사용하여 "Big Oil Windfall Profits Tax Act"가 시행되는 과세연도에 세금 환급 수표의 형태로 미국의 소비자에게 환급될 예정임

193) Insider, "A new proposed tax on Big Oil's profit markups offers a solution for cash-strapped Americans," https://www.businessinsider.com/gas-prices-big-oil-profits-taxed-for-rebate-checks-opinion-2022-5, 검색일자: 2022. 7. 19.

194) Congress.gov, "S.3802 - Big Oil Windfall Profits Tax Act," https://www.congress.gov/bill/117th-congress/senate-bill/3802/text?format=txt, 검색일자: 2022. 7. 19.

195) INSIDER, "A new proposed tax on Big Oil's profit markups offers a solution for cash-strapped Americans," https://www.businessinsider.com/gas-prices-big-oil-profits-taxed-for-rebate-checks-opinion-2022-5, 검색일자: 2022. 7. 19.

196) Congress.gov, "S.3802-Big Oil Windfall Profits Tax Act," https://www.congress.gov/bill/117th-congress/senate-bill/3802/text?format=txt, 검색일자: 2022. 7. 19.

197) Sheldon Whitehouse. "As Oil Companies Rake In Cash, Economists And Environmental Groups Endorse Whitehouse's Windfall Profits Tax," https://www.whitehouse.senate.gov/news/release/as-oil-companies-rake-in-cash-economists-and-environmental-groups-endorse-whitehouses-windfall-profits-tax, 검색일자: 2022. 7. 16.

- 연간 소득이 7만 5천달러 이상인 개인 신고자와 15만달러 이상을 받는 공동 신고자는 단계적으로 중단됨
- 개인 신고자는 매년 약 240달러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되고, 공동 신고자는 매년 약 360달러를 환급받게 됨

마) 신고 및 납부 방법

- 제안된 "Big Oil Windfall Profits Tax Act"에서 결정된 세율에 따라 각 분기마다 해당 납세자에게 소비세를 과세함[198]
  - 납세의무가 있는 각 납세자는 초과이익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고 이에 관한 신고를 한 뒤 해당 정보를 장관 및 과세 대산 원유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제공해야 함
    - 부과된 세금에 관한 정보의 제출 및 세금 납부의 시기에 관한 사항 등 해당 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장관이 추후 정함

2) 프랑스

- 프랑스는 하원에서 2022년도 예산안 수정 논의 중 초과이익세 법안은 부결되었으나, 그 이후에도 여전히 논의 중임
  - 프랑스 내에서 유류, 가스, 운송 기업에 대하여 25%의 일시적인 초과이익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커져가고 있었음[199]
    - 초과이익세의 부과 대상은 Total Energies SE, Engie SA와 같은 에너지 기업 및 CMA CGM SA와 같은 운송 기업임
  - 프랑스 하원에서 2022년 7월 초과이익세에 대한 법안이 근소한 차이로 부결되었으나, 여전히 초과이익세 도입은 논의 대상임[200]

198) Congress.gov, "S.3802-Big Oil Windfall Profits Tax Act," https://www.congress.gov/bill/117th-congress/senate-bill/3802/text?format=txt, 검색일자: 2022. 7. 19.

199) Bloomberg, "Macron Under Pressure to Tax 'Superprofits' of Big Energy Firms," 2022. 7. 6.,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2-07-05/macron-under-pressure-to-tax-superprofits-of-big-energy-firms, 검색일자: 2022. 7. 21.

200) Bloomberg Tax, "French Lawmakers Reject Windfall Tax Profit in Close Vote," 2022. 7. 23., https://news.bloombergtax.com/daily-tax-report-international/french-lawmakers-reject-windfall-tax-profit-in-close-vote, 검색일자: 2022. 7. 26.

- 브뤼노 르메르 재무부 장관은 공식적으로 초과이익세 도입을 반대함[201]
- Total Energies SE와 CMA CGM SA는 인플레이션 영향 완화와 초과이익세 도입에 대한 정치적 압박으로 유류 및 화물 운송료 할인을 제공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위 법안은 의회에서 논의됨[202]
- 한편 일부 의원들은 법안 부결 후에도 여전히 초과이익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위 기업들에 대한 청문회를 재개함[203]

3) 독일

↘ 독일에서는 에너지 회사의 초과이익 과세에 대해 정부와 당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음[204]

▶ 녹색당과 사민당은 초과이익 과세 입법을 지지하며, 친기업 성향을 가진 자유민주당은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 2022년 5월 4일 기자회견에서 녹색당의 로버트 하벡은 초과이익 과세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이며, 추진 의제로 논의 중에 있다고 설명함
- 그러나 같은 기자회견에서 자유민주당의 크리스티안 린드너는 '초과이익 과세는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투자하는 데 자원을 유출시키는 행위'라 말하며, 초과이익 과세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표함

↘ 독일의 브레멘 주는 연방 정부에 6월 중 초과이익 과세 초안 마련을 위해 구체적인 법령안 및 사례를 요구하였으나,[205] 2022년 6월 7일 독일 재무부 장관은 석유 회사

201) le monde, "French lawmakers wrangle over windfall tax for companies," https://www.lemonde.fr/en/politics/article/2022/08/02/french-lawmakers-wrangle-over-windfall-tax-for-companies_5992294_5.html, 검색일자: 2022. 8. 5.

202) Bloomberg Tax, "Total, CMA Grant Discounts in France Amid Windfall Tax Calls (1)," 2022. 7. 22., https://news.bloombergtax.com/daily-tax-report-international/total-cma-grant-discounts-in-france-amid-windfall-tax-calls-1, 검색일자: 2022. 7. 26.

203) Bloomberg Tax, "Total Energies Still at Risk From French Windfall Tax on Profits," 2022. 7. 27., https://news.bloomberglaw.com/environment-and-energy/totalenergies-still-at-risk-from-french-windfall-tax-on-profits, 검색일자: 2022. 7. 29.

204) Bloomberg, "German Coalition Split on Taxing Energy Firms' Windfall Profits,"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2-05-04/german-coalition-split-on-taxing-energy-firms-windfall-profits, 검색일자: 2022. 7. 25.

205) Bloomberg, "German Coalition Split on Taxing Energy Firms' Windfall Profits,"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2-05-04/german-coalition-split-on-taxing-energy-firms-windfall-profits, 검색일자: 2022. 7. 25.

의 초과이익세(Übergewinnsteuer) 도입 제안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힘으로써 일단락되었으며,[206] 향후 입법 계획은 불확실한 상황임

▶ 독일 재무부 장관은 초과이익 과세는 연료가격 상승을 유발해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킬 수 있음을 강조함

4) 벨기에

↘ 벨기에는 에너지 영역에 대한 초과이익세가 제안되어 법안 초안을 마련하였으나,[207] 재무부 장관의 반대로 도입이 무산됨

▶ 벨기에 에너지부 장관은 에너지 영역에 대한 초과이익세를 제안하였고 관련 법안 초안을 마련하였으나, 재무부 장관의 반대로 무산됨[208]

- 에너지부 장관은 2022년 7월 12일 국회 에너지위원회에서 이탈리아와 유사한 형식으로 초과이익세를 도입할 것을 제안함
- 초과이익세는 2022년 1월 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 사이에 2021년과 비교하여 2022년의 분기별 순이익이 적어도 10만유로[209] 또는 10% 증가하는 경우 전기·천연가스·석유의 생산자 또는 제공자에게 25%의 세율로 일시적으로 부과될 것임[210]
- 벨기에 국립 은행은 위기 상황인 경우 초과이익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조세가 부과될 수 있는 영구적인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음
- 에너지부에서 법안 초안을 제출하였으나, 재무부의 반대로 초과이익세 도입은 무산됨

206) Bloomberg, TAX, "Lindner Rejects Windfall Tax on Oil Companies, Warning on Prices," 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bloombergtaxnews/daily-tax-report/X948EII0000000, 검색일자 2022. 7. 25.

207) Taxnotes International, "Belgian Ministers Question Potential Energy Windfall Profits Tax," 2022. 7. 18., https://www.taxnotes.com/tax-notes-today-international/energy-taxation/belgian-ministers-question-potential-energy-windfall-profits-tax/2022/07/14/7dn0z, 검색일자: 2022. 7. 21.

208) L'echo, "Tinne Van der Straeten, ministre fédérale de l'Énergie: Nous sommes en situation de guerre," 2022. 7. 16., https://www.lecho.be/economie-politique/belgique/federal/tinne-van-der-straeten-ministre-federale-de-l-energie-nous-sommes-en-situation-de-guerre/10402151.html, 검색일자: 2022. 7. 29.

209) 2022년 8월 1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3,476만원임

210) Moustique, "Prix de l'énergie: comment taxer les surprofits des entreprises?," 2022. 7. 12., https://www.moustique.be/actu/belgique/2022/07/12/prix-de-lenergie-comment-taxer-les-surprofits-des-entreprises-243047, 검색일자: 2022. 7. 29.

▶ 원자력 기업의 이익에 대하여 이미 38%의 원자력세가 부과되고 있어, 원자력 기업에 대하여도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주된 의견은 회의적임

- 2015년 원자력 기업들은 정부가 원자력세를 경감하면 원자력세와 관련하여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하였고, 원자력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조세 부과는 이 협의를 위반한 것으로 새로운 소송이 제기될 위험이 있음
- 재무부 장관 또한 2015년 협의로 인하여 정부가 원자력 기업에 대한 조세제도를 개정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함

5) 오스트리아

↘ 2022년 5월 6일 오스트리아 재무부는 가스가격 상승으로 인해 유틸리티 회사들이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음을 밝힘[211]

▶ 칼 네함머(Karl Nehammer) 수상의 지시로 환경부에서도 다양한 제안과 모델의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음

▶ 국영 전력 회사인 Verbund[212]를 통한 대책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됨

↘ 이 후 초과이익 과세에 대한 가능성만 제시되었을 뿐, 구체적인 입법안은 발표된 바 없음[213]

6) 불가리아

가) 정책 목적 및 예상 효과

↘ 높은 에너지 가격의 영향을 받는 전기 또는 천연가스 소비자를 위한 지원금의 재원으로 국유 전력 생산업체의 초과이익을 사용하기 위함

211) Reuters, “Austria looking to address utilities’ windfall over gas price,” https://www.reuters.com/business/energy/austria-looking-measures-address-utilities-gas-price-windfall-2022-05-06/, 검색일자: 2022. 7. 25.

212) Verbund사는 오스트리아 국가가 회사의 지분 51%를 소유하고 있으며, 전력의 약 95%를 재생가능한 자원(주로 수력발전)으로 생산함

213) reshfields ruckhaus Deringer, “Windfall Profit Taxes - do they work?,” https://www.freshfields.com/en-gb/our-thinking/knowledge/briefing/2022/06/windfall-profit-taxes--do-they-work/, 검색일자: 2022. 7. 25.

▶ 우크라이나에서 진행 중인 군사 분쟁과 향후 몇 개월 동안 이어질 에너지 가격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지속가능한 보상프로그램의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

- 에너지부문의 국가 정책 구현과 지원 및 보상 프로그램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법안 개정을 통해 국유 에너지생산업체의 축적된 이익을 부담금으로 징수하여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하기 위함

▶ 불가리아는 높은 에너지 가격의 상승에 대응하여 2021년에 한시적으로 높은 전기 요금의 영향을 받은 기업에 대한 보상을 진행한 바 있음[214)]

- 2021년 10월부터 11월까지 Kozloduy 원자력 발전소의 이익에서 2억 2,500만 유로를 몰수하여 55유로/MWh를 기준으로 기업에 보상한 바 있음
- 2021년 12월 말부터 2022년 3월까지 에너지 시스템 보안 기금, 불가리아 에너지 홀딩스, 국가 예산을 재원으로 사용하여 전력가격이 96유로/MWh를 초과한 기업의 청구서상 비용 중 최대 75%를 보상함

나) 입법 논의과정 및 시기

↘ 불가리아 인민대표 등이 2022년 3월 6일 에너지법 개정 및 보완 법안을 발의하였고 에너지부는 국유 에너지생산업체의 초과이익을 부담금으로 징수하는 것에 관한 내용이 담긴 에너지법 개정을 2022년 5월 27일 제안하였으며 2022년 6월 8일 국회 에너지위원회의 1차 심의를 진행하여 현재 2차 심의를 앞두고 있음[215)]

▶ 2022년 3월 6일 Toshko Yordanov, Alexander Alexandrov 및 Momchil Ivanov 인민대표가 에너지법 개정 및 보완 법안을 발의함

- 발의된 법안의 내용에는 국유 에너지생산업체에 축적된 이익을 정부가 사용하여 전력소비자를 지원하고 향후 보상 프로그램의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체계로 제시됨

▶ 불가리아에너지부는 에너지법 개정 초안을 지지하면서 에너지법의 개정을 2022년 5월 27일 제안함[216)]

---

214) Bruegel, “National policies to shield consumers from rising energy prices,” https://www.bruegel.org/dataset/national-policies-shield-consumers-rising-energy-prices, 검색일자: 2022. 7. 19.

215) 불가리아 공화국 국회, “Законопроекти,” https://www.parliament.bg/bg/bills/ID/164205, 검색일자: 2022. 7. 14.

216) 불가리아 정부, “МИНИСТЕРСТВОТО НА ЕНЕРГЕТИКАТА ПРЕДЛАГА ПРОМЕНИ В ЗАКОНА ЗА ЕНЕРГЕТИКАТА,” https://www.me.government.bg/news/ministerstvoto-na-energetikata-predlaga-promeni-v-zakona-za-energetikata-3028.html?p=eyJ0eXBlIjoiaG90bm

- 불가리아 에너지부는 모든 경제 주체에 대한 공정한 대우 및 투자 환경의 개선을 보장하기 위하기 위한 지속적인 보상프로그램을 위해 에너지법 개정안을 제안함
- 국유에너지생산업체의 초과이익을 높은 에너지 가격의 영향을 받는 전기 또는 천연가스 소비자들을 보상하는 데 사용하기 위함임
- 에너지부는 보상프로그램의 구현을 위해 전기생산자의 초과이익을 전력시스템보안기금(SEIS)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안함

▶ 불가리아 국회 에너지위원회는 2022년 6월 8일 제1차 심의를 진행하였음[217]

- 2022년 6월 8일 개최된 정기 회의에서 에너지위원회는 Toshko Yordanov, Alexander Alexandrov 및 Momchil Ivanov 인민대표가 제출한 에너지법(Energy Act, No. 47-254-01-62)을 수정 및 보완하는 법안을 논의함
- 제1차 심의에서 개정안에 대해 찬성 11표로 통과되었음
- 전기와 천연가스의 높은 가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기업을 위한 지속 가능한 보상 메커니즘에 대한 필요성을 지지함
- 개정안에 제시된 보상 메커니즘의 필요에 대하여는 지지를 표명하였지만 다만 이러한 중대한 변화는 이해관계자와의 사전협의가 필요하다는 점과 보상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명시적 계획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함

다) 부담금 부과시기 및 대상(산업)

↘ 초과이익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대상은 자본의 100%를 국가가 소유한 국유에너지생산업체임

▶ 초과이익을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에 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수입은 납부되는 초과이익은 전기와 천연가스의 높은 가격에 영향을 받는 소비자를 보상하기 위한 전력시스템보안기금(SEIS) 등의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임

↘ 부담금 납부와 같은 절차적 사항에 관하여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되거나 확정된 것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V3cyJ9, 검색일자: 2022. 7. 14.

217) 불가리아 공화국 국회, "ЗАКОНОПРОЕКТ ЗА ИЗМЕНЕНИЕ И ДОПЪЛНЕНИЕ НА ЗАКОНА З А ЕНЕРГЕТИКАТА," https://www.parliament.bg/bg/parliamentarycommittees/2951/reports/13989, 검색일자: 2022. 7. 14.

제2부 주요 국가별 조세동향

Ⅰ 북미

1 미국

가. 코로나19 구호기금을 사용한 주 세금 감면 충당 금지

[조세동향 22-01호]

↘ 미국 재무부는 2022년 4월 1일부터 2021년 미국 구조계획법(이하 ARPA)을 시행하기 위한 최종 규칙을 발표함[218]

▶ 코로나19 구호기금을 사용하여 주 세금 감면에 충당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ARPA 상쇄금지 조항의 유효성을 명확히 함

- 주에서 2021년 3월 3일부터 회계연도의 마지막 날까지 감소된 세수의 상쇄를 위해 ARPA 기금을 사용할 수 없음을 명시함
- 해당 기간 동안 주에서 세금을 감면한 경우 감면된 세금으로 인해 줄어든 세수입을 충당한 방법과 그 출처를 입증해야 함
- 만일 ARPA 기금이 주 세금 감면을 상쇄하기 위해 사용된 경우 해당 금액은 미 재무부에 상환해야 함

↘ 각 주에서는 ARPA 기금을 사용하여 세금 감면에 필요한 비용으로 충당해 왔음

▶ 특정 주 세수의 감소가 없는 경우, 연방정부가 ARPA 기금을 회수할 수 없음

▶ 미 재무부는 최종 규칙 내 상쇄금지 조항의 합헌성을 설명함

- 주에서 세금에 관한 다양한 정책을 정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 감면을 위해 ARPA 기금을 사용함으로써 주 수입 감소를 상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218) IBFD, "COVID-19 Pandemic: US Treasury Issues Final Rule on Pandemic-Related Legislation, Keeps Restrictions on State Tax Cuts,"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1-11_us_5.html, 검색일자: 2022. 1. 25.

- 미 의회는 미국 헌법의 지출조항에 의해 ARPA 기금과 같은 연방 보조금의 사용 여부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음
- ARPA 기금 사용에 대한 조건이 주에서 기금 수령을 요청하기 전 공지되기 때문에 상쇄금지 조항에 강제성이 없음

나. 세금 초과 및 과소 납부에 대한 이자율 인상 발표

[조세동향 22-02호]

미국 국세청(IRS)은 2022년 2월 23일, 2022년 2분기(2022. 4. 1.~6. 30.) 세금 초과(예: 세금 환급) 및 과소 납부의 경우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인상될 것임을 발표함[219]

▶ 이번 발표로 인상되는 이자율은 다음과 같음

- 초과 납부의 경우는 4%
- 법인의 초과 납부인 경우는 3%
- 1만달러[220]를 초과하는 법인의 초과 납부에 대해서는 1.5%
- 과소 납부의 경우는 4%
- 대기업의 과소 납부인 경우는 6%

위 이자율은 미국 국세법 제6621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분기별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출됨

▶ 법인이 아닌 납세자의 경우 초과 납부 및 과소 납부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연방 단기 금액에 3%p를 더한 금액임

▶ 법인의 경우 과소 납부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연방단기 금리에 3%p를 더한 금액이고 초과 납부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연방단기금리에 2%p를 더한 금액임

▶ 대기업 과소 납부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연방단기금리에 5%p를 더한 금액임

▶ 과세기간 동안 1만달러를 초과하는 법인의 세금 초과 납부 부분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연방단기금리에 0.5%p를 더한 금액임

219) 미국 국세청, "Interest rates increase for the second quarter of 2022," https://www.irs.gov/newsroom/interest-rates-increase-for-the-second-quarter-of-2022, 검색일자: 2022. 2. 28.

220) 2022년 2월 2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213만원임

다.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협정 발표

[조세동향 22-03호]

미국 무역대표부(USTR) 캐서린 타이와 미국 상무장관 지나 라이몬도는 2022년 3월 22일 성명을 통해 미국과 영국의 새로운 관세 협정을 발표함[221]

-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영국의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하여 미국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of 1962) 제232조에 따라 부과되던 관세를 폐지하기로 함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2018년부터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하여 미국이 수입하는 철강 제품에 대해 25%,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는 10%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음
  - 미국 정부는 이번 협정을 통해 연간 50만톤 영국산 철강제품에 무관세 혜택을 적용하기로 영국과 합의하였음[222]
  - 영국산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는 연간 2만 1,600톤까지 무관세가 적용될 예정임
- 이번 협정에 따라 영국 역시 미국의 소비재, 증류주, 농산물 등 5억달러 상당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하여 그동안 부과하던 보복관세를 폐지하기로 함

이번 양국 간 협정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임

- 지나 라이몬도 미 상무장관과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공동성명을 통해 이번 협정은 영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기업과 그 노동자를 보호하고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의 대응에 집중하게 해줄 것이라고 발표함
  - 또한 라이몬도는 이번 협정이 소비자 물가가 40년 만에 최고 수준에 도달한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발표함

221) USTR, "Tai, Raimondo Statements on 232 Tariff Agreement with United Kingdom," https://ustr.gov/about-us/policy-offices/press-office/press-releases/2022/march/tai-raimondo-statements-232-tariff-agreement-united-kingdom, 검색일자: 2022. 3. 29.

222) Reuters, "New U.S.-U.K. trade deal cuts tariffs on British steel, American motorcycles, bourbon," https://www.reuters.com/world/uk/uk-us-trade-chiefs-meet-tuesday-steel-tariffs-source-2022-03-22/, 검색일자: 2022. 3. 29.

라. 비거주 외국인 개인 이연보상에 관한 사례집 발표

[조세동향 22-04호]

- 미국 국세청은 2022년 3월 31일, "비거주 외국인 개인이 받는 이연보상"(INT-C-227)에 관한 사례집을 발표함[223]
  - 미국은 비거주 외국인이 미국 내 개인서비스 수행을 포함하여 미국 무역 또는 사업 운영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누진세율로 과세하고 있음
    - 이자, 배당금, 임대료, 로열티에 관하여 총액 기준 최대 30%의 고정 세율로 원천징수함
  - 이연보상은 성과와 관련한 보상액의 일부를 수년간 이연하고 특정 과세연도에 보상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을 말함
    -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이후에 이루어지는 이연보상은 급여 연기를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음
    - 차기 연도에 지급되는 보너스, 스톡옵션, 퇴직연금 등의 형태로 이루어짐
- 이번에 발표한 사례집에서는 이연보상에 대한 일반적인 개요를 제공함
  - 개인이 수행한 개인서비스에 대한 보상은 미국 근무일수 기준으로 계산함
  - 다년보상약정은 다년 기간 내의 미국 내외 지역에서 발생한 근무일에 따라 계산함
    - 다년보상약정은 개인이 1년 이상의 과세연도에 수행한 서비스에 대하여 어느 한 과세연도에 보상받는 것을 말함
  - 부가혜택은 직원의 주 근무지 국가에서 제공함
    - 부가혜택의 예로는 고용주가 제공하는 주택, 현지 교통비 지급, 위험 수당, 세금 환급, 피부양자 등록금 제공, 이사비용 제공 등이 있음
- 이번에 발표한 사례집에서는 피고용인 신분의 비거주 외국인이 받는 네 가지 일반적 유형의 이연보상에 대하여 설명함
  - 급여 연기
    - 지불이 이루어질 때까지 미국 과세가 연기되는 자금 없는 이연보상 계획

223) IRS, "Practice Units," https://www.irs.gov/businesses/corporations/practice-units, 검색일자: 2022. 5. 3.

▶ 미국 회사의 연금 또는 이익 공유 계획에 따른 분배금

▶ 경영진 또는 임원급에 대한 'top hat plan'

- 'top hat plan'이란, 회사 내 경영진이나 고액 급여를 받는 직원에게 이연보상 또는 복지혜택을 제공할 목적으로 고용주가 관리하는 자금 없는 계획을 말함[224)]
- 'top hat plan'의 형태 중 하나로 고용주가 참여 직원에게 특정 보상을 연기할 기회를 주기 위해 사용하는 비적격 이연보상 제도가 있음
- 'top hat plan'의 다른 형태로는 고용주의 적격 플랜에 따라 받을 자격이 있는 금액을 초과하여 참여 직원에게 추가 퇴직 소득을 제공하는 보충 임원 퇴직 계획이 있음

↘ 비거주 외국인에 대한 이연보상 지급을 위해 고려할 사항에 대하여 제시함

▶ 비거주 외국인이 미국에서 서비스를 수행한 적이 있는지 여부

- 비거주 외국인이 미국에서 수행한 개인서비스에 대한 보상인 경우에만 해당 이연보상에 관하여 과세함
- 미국 소득세법 제861조 제(a)항 제(3)호에 따라 비거주 외국인이 미국에서 수행한 서비스가 아닌 경우 해당 소득은 해외 출처로 간주되어 미국 세금 면제의 가능성이 있음

▶ 비거주 외국인이 미국과의 조세조약 체약국 거주자인지 여부

- 미국과의 조세조약 체약국 거주자의 미국 내 소득에 관하여 미국 세금의 면제 가능성이 있음

마. 러시아 등에서 운영되는 회사에 대한 세제혜택 금지 법안 발의

[조세동향 22-05호]

↘ 미국 상원 재정위원회 의장 론 와이든(Ron Wyden)과 위원 롭 포트만(Rob Portman)은 2022년 5월 12일 러시아 또는 벨라루스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세액공제 및 기타 세금혜택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함[225)]

224) Thomson Reuters, "Top Hat Plan," https://content.next.westlaw.com/3-501-5245?transitionType=Default&contextData=(sc.Default)&firstPage=true, 검색일자: 2022. 5. 3.

225) IBFD, "US Senate Finance Committee Members Introduce Legislation Disallowing Foreign Tax Credits and Tax Benefits for Companies Operating in Russia," https://research.ibfd.

▶ 러시아 또는 벨라루스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와 더불어 세금혜택이 금지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음

-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하여 이미 미국의 제재를 받은 사람
- 러시아와 벨라루스 정부
- 재무장관이 세금혜택을 상실한 자격이 있는 것으로 식별한 사람
  - 미화 100만달러 이상의 미국 자산 또는 소득을 보유한 자로 우크라이나 침공에 가담한 자
  - 러시아 또는 벨라루스 정부에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는 러시아 또는 벨라루스에서 조직된 법인 및 법인의 임원, 이사회 구성원

↘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하여 미국 소득세법(IRC) 제901조 제(j)항을 적용하여 러시아 또는 벨라루스에 지급된 소득세에 대한 외국 세액공제를 금지함

- 러시아와 벨라루스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자동으로 subpart F 소득으로 처리하여 21%의 법인세율을 적용함
- 러시아 또는 벨라루스에서 발생한 손실을 글로벌 무형 저과세 소득(GILTI)을 통한 기타 소득과 상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음
- 러시아 및 벨라루스에서 이미 철수하였거나 운영을 빠르게 중단하고 있는 손실에 관해서는 GILTI 손실로 처리하는 것을 허용함

↘ 러시아 또는 벨라루스에 대해 소득세법(IRC) 제901조 제(j)항이 적용되는 경우 러시아 및 벨라루스에 대해 '정상 무역 관계 중지법(HR7108)'이 실행됨

▶ 미국은 러시아 및 벨라루스와 정상적인 무역 관계를 중단하고 대통령이 인권 침해를 근거로 비자를 차단할 수 있음

▶ 대통령이 러시아 또는 벨라루스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인상할 수 있음

▶ 이를 통해 러시아와 벨라루스는 북한, 이란, 시리아, 수단과 같은 외국세액공제 제외 국가 목록에 추가되었음

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5-16_us_4.html, 검색일자: 2022. 5. 24.

바. 2022년 하반기 표준마일리지 요율 인상 발표

[조세동향 22-06호]

↘ 미국 국세청은 2022년 6월 9일, 표준마일리지 요율을 인상한다고 발표함[226]

▶ 최근의 유가 인상을 반영하기 위해 국세청이 표준 마일리지 요율을 조정하였음

- 새로 조정된 요율은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됨
- IRS는 일반적으로 매년 초에 마일리지 요율을 업데이트하므로 이번과 같은 표준마일리지 요율의 중간 인상은 드문 경우임

▶ 연료비는 마일리지 산정에서 중요한 요소이지만 감가상각비, 보험, 기타 고정비용 및 변동비용과 같은 항목을 포함하여 마일리지가 산출됨

↘ 납세자는 표준마일리지 요율을 사용하여 사업 및 기타 특정 목적을 위해 자동차를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의 공제액을 계산할 수 있음

▶ 표준마일리지 요율은 실제 비용을 추적하지 않고 사업 목적으로 자동차 운영에 필요한 손금을 계산하는 데 사용됨

- 납세자는 표준마일리지 요율을 사용하는 대신 차량 사용에 대한 실제 비용을 계산하여 적용할 수 있음

▶ 출장에 대한 표준마일리지 요율은 2022년 상반기 적용되었던 요금보다 4센트 인상된 1마일당 62.5센트[227]임

▶ 의료 또는 이사 비용(현역 군인에게 적용)에 적용될 새로운 요율은 2022년 상반기 적용되었던 요금보다 4센트 인상된 1마일당 22센트[228]임

226) IRS, "IRS increases mileage rate for remainder of 2022," https://www.irs.gov/newsroom/irs-increases-mileage-rate-for-remainder-of-2022, 검색일자: 2022. 6. 20.

227) 2022년 7월 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815원임

228) 2022년 7월 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87원임

2 캐나다

가.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비용에 대한 공제 연장 발표

[조세동향 22-02호]

↘ 캐나다 국세청(CRA)은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 자격을 갖춘 직원이 재택근무로 인한 홈 오피스 비용공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임시고정요율 방식의 연장을 발표함[229)]

▶ 2021년 과세연도에 시행한 임시고정요율 방식의 적용 기준과 자격 사항은 동일하지만 납세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인상하였음

▶ 임시고정요율 방식에 따르면 자격을 갖춘 직원은 코로나19를 이유로 2021년 집에서 일한 경우 매일 2캐나다달러[230)]의 비용공제를 청구할 수 있음

- 공제를 청구할 수 있는 액수는 최대 250일 동안 500캐나다달러[231)]임
- 2020년 과세연도의 경우는 최대 200일 동안 400캐나다달러[232)]였음

↘ 임시고정요율 방식에 따라 공제를 청구하기 위한 자격은 다음과 같음

▶ 해당 연도(2020년, 2021년, 2022년)에 최소 연속 4주 동안 집에서 근무시간의 50% 이상을 근무한 경우

- 휴가·병가·근무하지 않은 주말 및 법정 공휴일은 근무일로 계산하지 않음

▶ 고용주가 재택근무를 요구하였으나 홈 오피스 사용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 전기, 난방, 수도, 가정 인터넷 사용요금, 홈 오피스 임대료에 관하여 청구 가능함

229) 캐나다 정부, "Home office expenses for employees - What you need to know for the 2022 tax-filing season,"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news/newsroom/tax-tips/tax-tips-2022/home-office-expenses-employees-what-you-need-to-know-2022-tax-filing-season.html, 검색일자: 2022. 2. 28.

230) 2022년 2월 2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915원임

231) 2022년 2월 2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7만원임

232) 2022년 2월 2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8만원임

나. 업데이트된 해외금융자산보고 지침으로 회피방지 조치 명확화

[조세동향 22-03호]

캐나다 정부는 2022년 3월 10일, 캐나다-미국 간 세금정보교환협정과 해외계정세금준수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 외국 금융기관 및 납세자에 대한 규정 준수 마감일을 설정하고 업데이트한 지침을 게시하여 회피방지 조치를 명확히 하였음[233]

- 캐나다 국세청은 캐나다-미국 간 세금정보교환협정 및 해외계정세금준수법에 따라 미국 국세청과 자국 거주 상대국 납세자의 금융정보를 교환하게 됨
- 세금정보교환협정 및 해외계정세금준수법의 적용을 위해 캐나다 금융기관은 미국 거주자 및 미국 시민이 보유한 계정에 대한 정보를 캐나다 국세청에 보고해야 함[234]
  - 세금정보교환협정은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에 가입한 국가의 국세청이 상대 체약국 거주자의 금융계좌정보를 매년 교환하는 제도를 말함
  - 해외계정세금준수법은 해외계좌 및 기타 금융자산을 보유한 미국인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한 특정 미국 납세자가 특정 해외금융자산 명세서에 따라 미국 국세청에 보고하는 것을 말함
  - 미국은 2010년 3월 해외계정세금준수법을 제정하여 미국 외 금융기관들이 미국인이 보유한 금융 계정에 관한 정보를 미국 국세청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해당 지침은 캐나다-미국 간 세금정보교환협정 및 해외계정세금준수법과 관련하여 실사 및 보고 의무를 가진 금융기관과 캐나다 국세청 공무원에 적용하기 위한 것임
  - 캐나다에 보고 의무가 있는 금융기관의 종류로는 예탁기관, 보관기관, 투자법인, 지정된 보험회사가 있음

233) Government of Canada, "Guidance on the Canada-U.S. Enhanced Tax Information Exchange Agreement,"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tax/international-non-residents/enhanced-financial-account-information-reporting/reporting-sharing-financial-account-information-united-states/guidance-on-canada-s-enhanced-tax-information-exchange-agreement.html#h_8, 검색일자: 2022. 3. 29.

234) IRS, "Summary of FATCA Reporting for U.S. Taxpayers," https://www.irs.gov/businesses/corporations/summary-of-fatca-reporting-for-us-taxpayers, 검색일자: 2022. 3. 29.

- 이번에 업데이트된 해외금융자산보고 지침을 통해 금융계좌 보고 마감일을 설정하고 보고의 방법 등을 설시함
  - 보고 의무가 있는 캐나다 금융기관은 이번에 업데이트된 해외금융자산보고 지침에 따라 정보 보고서를 2023년 5월 2일 이전까지 캐나다 국세청에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해야 함
    - 정보보고서에는 계정소유자의 이름·거주지·생년월일 등 개인식별정보 및 계좌번호·계좌 잔고 등 계정정보 그리고 계정에 적립된 이자·배당금·지급된 기타 소득의 총액 등 예치금 계정의 정보를 기재해야 함
  - 금융기관에 사망 사실이 통보된 해에 사망한 미국인이 보유한 계좌를 폐쇄계좌로 보고해야 함
  - 신규 추가된 계정과 기존 계정을 단일계정으로 처리해야 함
  - 금융기관이 구두자체인증을 적절하게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서면자체인증을 받아야 함
    - 금융기관 자체인증에는 계정 소유자가 특정 미국인인지 여부에 대해 명확히 표시되어 있어야 하고 자체인증에는 계정 소유자의 서명, 날짜, 이름, 거주지 주소, US TIN, 캐나다 TIN이 표시되어야 함
    - 금융기관 자체인증이 부정확하거나 신뢰할 수 없는 경우 계정 소유자의 지위를 입증하는 유효한 자체인증 또는 원래 자체인증의 유효성을 뒷받침하는 합리적인 문서 중 하나를 첨부해야 함

다. 2022년 예산안 발표

[조세동향 22-04호]

- 캐나다 연방정부는 2022년 4월 8일, 법인세에 관한 연방정부의 예산안을 발표함[235]
  - 2022년도 예산안을 통해 대형 금융기관에 대한 새로운 세금인 Canada Recovery Dividend를 공개함
    - 2021년 과세연도에 1억캐나다달러[236]를 초과하는 은행 및 생명보험사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 15%에서 16.5%로 인상함

235) IBFD, "Canada's Budget 2022 - Business Tax Measures,"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2-04-11_ca_1%23tns_2022-04-11_ca_1, 검색일자: 2022. 5. 3.

236) 2022년 5월 3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9,854억 6천만원임

▶ 탄소 포집, 활용 및 저장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함

- 직접 공기 포집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적격포집장비[237]의 경우 60%
- 다른 적격포집장비의 경우 50%
- 적격 운송, 보관 및 이에 사용되는 장비에 대해 37.5%

▶ 소기업이 통상의 15%보다 6%p 감소된 9%의 법인세율 혜택을 받도록 소상공인 공제(small business deduction)를 제안함

캐나다는 2022년 4월 8일 소득세에 관한 연방정부의 예산안을 발표함[238]

▶ 2022년 예산에서는 연간 기여한도가 8천캐나다달러[239]이고 평생 기여한도가 4만 캐나다달러[240]인 개인의 경우 생애 첫 주택 마련을 위해 FHSA(Tax-Free First Home Savings Account) 계좌 개설을 제안함

- FHSA를 통해 얻은 소득은 비과세임
- 첫 주택 구매를 위해 FHSA에서 인출하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비과세임

▶ 2022년 예산안에서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세액 환급을 2021년 대비 두 배 늘린 1만캐나다달러[241]를 적용함

- 이를 통해 적격 주택 구매자가 최대 1,500캐나다달러[242]의 세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함
- 적격 주택을 취득한 최초 주택 구매자는 2021년 기준 최대 750캐나다달러[243]의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었음

▶ 다세대 주택에 대한 적격 개조에 관한 세금공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함

- 다세대 주택의 적격 개조에 대해 적정 경비의 15%와 5만캐나다달러[244] 중 더 적은 금액을 다세대 주택 개조에 관한 세금공제로 도입하는 것을 제안함

237) 적격포집장비란, 탄소 포집, 활용 및 저장 프로젝트의 일부로 이산화탄소를 포집, 운송, 저장 또는 사용하기 위해 사용되는 장비를 말함

238) IBFD, "Canada's Budget 2022 - Personal Tax Measures,"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2-04-11_ca_2%23tns_2022-04-11_ca_2, 검색일자: 2022. 5. 3.

239) 2022년 5월 3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788만 3,680원임

240) 2022년 5월 3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941만 8,400원임

241) 2022년 5월 3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985만 4,600원임

242) 2022년 5월 3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47만 8,190원임

243) 2022년 5월 3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73만 9,095원임

244) 2022년 5월 3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920만 4천원임

- 적격 개조란, 노인 또는 성인 장애를 가진 사람이 살 수 있는 보조 주거 단위를 만드는 것을 말함

▶ 특정 여행비용 및 이주비용이 발생하는 무역업자를 위해 최대 4천캐나다달러[245]의 노동이동 공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함

▶ 주거용 부동산을 12개월 미만 동안 보유한 후 매각한 사람에 대하여 양도 차익 전부를 사업수익으로 간주하고 과세함

라. 2022년 예산 시행을 위해 필요한 법안 발의

[조세동향 22-05호]

↘ 캐나다 재무장관인 크리스티아 프리랜드(Chrystia Freeland)는 2022년 4월 28일, 캐나다 정부가 발표한 2022년 예산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이 담긴 법안을 발의함[246]

▶ 소매가가 10만캐나다달러[247] 이상인 신형 고급자동차 및 항공기 그리고 25만캐나다달러[248] 이상인 신규 보트 또는 요트의 판매에 대해 사치세를 부과함

- 법안이 제정될 경우 제안된 사치세는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계산됨[249]
  - 가격 임계값을 초과하는 가치의 2%
  - 고급차량, 항공기 또는 선박 가치의 10%

▶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적격한 여행 및 임시 이주비용에 대한 세금 감면을 제공하여 상인을 위한 노동인력이동 공제를 도입함

▶ 새로 건설되거나 실질적으로 개조된 주거용 주택과 관련된 모든 양도 및 판매에 관하여 GST/HST 목적에 따라 과세함

245) 2022년 5월 3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94만 1,840원임

246) IBFD, "US Senate Finance Committee Members Introduce Legislation Disallowing Foreign Tax Credits and Tax Benefits for Companies Operating in Russia,"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5-16_us_4.html, 검색일자: 2022. 5. 31.

247) 2022년 5월 3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9,776만원임

248) 2022년 5월 3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억 4,444만원임

249) IBFD, "Canadian Finance Department Releases Draft Legislative Proposals on Luxury Tax,"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2-03-16_ca_1%23tns_2022-03-16_ca_1, 검색일자: 2022. 5. 31.

- 노인과 장애인이 집을 개조할 수 있도록 주택 접근성 세액공제(Home Accessibility Tax credit) 최대 2만캐나다달러[250]로 정하여 기존보다 두 배로 늘림
- 자금 세탁, 부패 및 탈세를 포함한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연방법인(federally incorporated corporations)이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소유권 등록부를 구축함
- 청정에너지 장비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를 확대함

마. 캐나다 와인에 대한 소비세 면제 폐지

[조세동향 22-06호]

캐나다 국세청은 2022년 5월 17일, 캐나다에서 재배된 농산물로 캐나다에서 생산한 와인에 대한 소비세 면제를 폐지함[251]

- 현재 100% 캐나다 와인에 대해서는 소비세를 면제하고 있음
- 2022년 4월 7일 캐나다 재무장관은 캐나다에서 재배된 농산물로 캐나다에서 생산한 와인에 대한 소비세 면제를 폐지하기 위해 2001 소비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음
  - 캐나다산 와인에 대한 소비세 면제 폐지 조항이 포함된 2001 소비세법 개정안이 2022년 6월 30일부터 발효됨

2022년 6월 30일 이후에 캐나다에서 포장된 100% 캐나다산 와인은 다른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한 소비세가 부과됨

- 와인에 대한 소비세 책임은 와인이 소비세창고에 들어갈 때 와인 면허소지자에서 소비세창고 면허소지자에게로 이전됨
- 와인이 시장으로 유통되기 위해 소비세창고에서 반출될 때 소비세창고 면허소지자가 소비세를 지불해야 함
  - 소비세창고는 장관이 지정한 포도주 면허소지자의 창고를 말함[252]

250) 2022년 5월 3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955만원임

251) CRA, “Repeal of Excise Duty Exemption for 100% Canadian Wine,”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forms-publications/publications/edn75/repeal-excise-duty-exemption-canadian-wine.html, 검색일자: 2022. 6. 22.

252) CRA, “Excise Warehouses,”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forms

▶ 적용 세율은 소비세를 납부할 당시의 유효한 세율이고 와인이 포장되어 소비세창고에 들어갈 때와 소비세창고에서 반출되는 시간 사이에 세율의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조정 세율이 적용됨

▶ 와인에 대한 소비세율은 와인 1리터당 부과되며 알코올 함량에 따라 다름

- 와인에 대한 소비세율은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매년 4월 1일 조정됨
- 2022년 4월 1일 조정된 와인에 대한 소비세율은 1.2% 이하의 순수 에틸알코올을 함유한 와인의 경우 1리터당 0.022캐나다달러[253]임
- 2022년 4월 1일 기준, 1.2% 이상 7% 이하의 순수 에틸알코올을 함유한 와인은 1리터당 0.33캐나다달러[254]임
- 2022년 4월 1일 기준, 순수 에틸알코올을 7% 이상 함유한 와인은 1리터당 0.688캐나다달러[255]임

-publications/publications/edm8-1-1/excise-warehouses.html#_Toc368467224, 검색일자: 2022. 6. 20.

253) 2022년 6월 2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2원임

254) 2022년 6월 2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28원임

255) 2022년 6월 2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84원임

Ⅱ 유럽

1 영국

가. 디지털세 필라2 이행 관련 국내 의견수렴 절차 개시

[조세동향 22-01호]

영국 재무부(HM Treasury)는 2022년 1월 11일, 디지털세 필라2 글로벌 합의안의 영국 내 이행을 위한 의견수렴(consultation) 절차를 개시함[256]

- 금번 의견수렴 요청문서는 필라2 내용을 요약하고 의견을 구하는 형식으로 기술되었으며, 필라2에서 다루지 않았으나 의견을 요청한 주요 내용은 후술함[257]
  - 정책 당위성(policy rationale) 및 설계 특성(design feature)이 아닌, 이행(implementation) 관련 사항이 의견제출 대상임을 명시함
- 영국에 본사를 둔 소규모[258] 그룹에도 필라2의 소득산입규칙(Income Inclusion Rule: IIR)[259]을 적용할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영국 정부는 이와 관련해 아래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밝힘
  - (i) 소규모 그룹이 상당한(substantial) 해외 영업부문을 가질 가능성이 낮음

256) 영국 재무부, "OECD Pillar 2 - Consultation on Implementation," 2022. 1. 11., https://www.gov.uk/government/consultations/oecd-pillar-2-consultation-on-implementation, 검색일자: 2022. 1. 20.

257) OECD가 주도하는 필라2 합의는 글로벌 기준수익(7.5억유로(약 1조원))을 초과하는 다국적 그룹에 최저한 세율(15%)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디지털세 필라2 모델규정 내용은 우리나라 기획재정부 보도참고 자료에서도 확인 가능함(기획재정부, 「디지털세 필라2 모델규정 공개」, 2021. 12. 20.,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87444, 검색일자: 2021. 1. 20.)

258) Sub-€750m groups(글로벌 기준수익 7.5억유로(약 1조원) 미만 그룹)을 의미함

259) 저세율국 소재 국외관계사 지분을 보유한 모회사는 모회사의 거주지국에 지분율만큼의 추가세액(예외 존재)을 부담함(기획재정부, 「디지털세 논의 경과 보고서 공개」, 2020. 10. 13.,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15050, 검색일자: 2021. 1. 20.)

- (ii) 영국에 모기업이 위치함으로써 갖는 매력도(attractiveness)를 감소시킴
- (iii) 소규모 그룹에 상당한 수준의 이행 및 행정비용을 야기할 수 있음

▶ 필라2 적용 그룹을 대상으로 영국 자체적인 내국최저추가세(Domestic Minimum top up Tax: DMT) 도입 시, DMT 적용 대상을 영국에 본사를 둔 그룹으로 한정할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영국 정부는 아래의 이유로 세수보호와 간소화 측면에서 검토할 것임을 언급함

- (i) 세수보호(revenue protection): 외국 관할국에서 영국 소재 회사의 저율과세 과세소득(low-taxed profits)에 추가세액(top-up tax)을 부과하도록 허용하는 것보다는 영국에서 추가세액을 부과하는 것이 필라2 규정(의도)에 부합할 수 있음
- (ii) 간소화(simplification): 영국 사업과 관련하여 다수의 국가에서 비용공제부인규칙(UnderTaxed Payments Rule: UTPR)[260]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업의 이행부담(compliance burden)을 유의미하게(significantly) 감소시킬 수 있음

▶ 영국 세원을 중요한 위험(material risk)에 노출시키지 않으면서도 기존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ase Erosion and Profit Sharing: BEPS) 조치와 관련한 이행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개선안을 요청하였으며, 영국 정부는 아래 세 가지 이유로 필라2의 도입이 BEPS 조치의 필요성을 제거하지 않는다고 설명함

- (i) BEPS 조치들은 특정한 조세전략(specific tax planning) 위험에 대응하도록 고안되었으나, 필라2는 동 위험에 직접 대응하도록 설계되지 않음
- (ii) 영국의 법인세율은 25%까지 인상될 예정이며 글로벌 최저한세율(15%)과 중요한 차이가 있으므로 조세전략에 대한 잠재적인 유인(incentive)과 기회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됨
- (iii) 필라2는 글로벌 기준수익[261]을 초과하는 다국적 그룹에만 적용되므로, 그 이외의 그룹·회사에는 BEPS 조치가 중요한 역할을 지속하게 됨

▶ 의견수렴 마감일은 2022년 4월 4일이며, 필라2는 2022년 국내 입법, 2023년 이행을 목표로 진행 중임

260) 저세율국 소재 구성회사에 비용으로 공제되는 지급금을 지급한 다른 구성회사는 추가세액을 부담함(기획재정부, 「디지털세 논의 경과 보고서 공개」, 2020. 10. 13.,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15050, 검색일자: 2021. 1. 20.)

261) 글로벌 기준수익 7.5억유로(약 1조원)를 의미함

나. 암호자산의 대여·예치 관련 과세지침 공개

[조세동향 22-02호]

영국 국세청(HMRC)은 2022년 2월 2일, 암호자산(cryptoasset)의 대여(lending)·예치(staking)[262]와 관련한 과세지침을 공개함[263], [264]

- 암호자산의 대여·예치가 영업거래(trade)에 해당할 경우, 관련 이익은 소득세(income tax) 과세 대상이 됨[265], [266]
- 암호자산의 대여·예치가 영업거래(trade)에 해당하지 않으나, 보상대가(return)가 수익적(revenue)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소득세(기타소득), 자본적(capital)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자본이득세(capital gain tax) 과세 대상이 되며, 양자를 구분하기 위한 고려요소를 다음과 같이 예시함[267], [268]
  - 수취할 보상이 사전에 합의된 경우, 수익적 성격을 가질 수 있음
  - 보상이 자산처분을 통해 실현될 경우, 자본적 성격을 가질 수 있음
  - 보상이 정기적으로(periodically) 이루어질 경우 수익적 성격, 일시불(one-off payment) 형태로 이루어질 경우 자본적 성격을 가질 수 있음
  - 대여기간이 고정(fixed)인지 여부 및 장기·단기 여부를 고려해야 함[269]
- 암호자산의 대여·예치가 자산의 처분(disposal)으로 간주될 경우, 자본이득세(capital gain tax)의 대상이 됨[270], [271]

---

262) 탈중앙화 금융(decentralised finance) 또는 디파이(Defi)로도 불리기도 함

263) 영국 국세청, "Cryptoassets Manual," 2022. 2. 2.,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cryptoassets-manual/crypto61130, 검색일자: 2022. 2. 23.

264) 동 과세지침은 디파이 분야는 끊임없이 진화하는(constantly evolving) 분야여서 모든 발생 가능 환경(circumstance)과 보상의 성격(nature)을 제시하기란 불가능하며, 대신 처리원칙(guiding principle)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고 기술함

265) 영업거래 해당 여부 판단은 주식 및 기타 금융상품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규정이 적용됨

266) "영국 국세청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디파이 거래를 영업거래로 보지 않는다"는 BDO사의 설명이 있음(BDO, "Article: HMRC issue welcome guidance on De-Fi," 2022. 2. 7., https://www.bdo.co.uk/en-gb/insights/tax/private-client/hmrc-issue-welcome-guidance-on-de-fi, 검색일자: 2022. 2. 24.)

267) 수익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 소득세가, 자본적 성격을 가질 경우 자본이득세가 부과됨

268) 해당 예시는 완전한(exhaustive) 목록이 아니며, 한 가지 요소만으로 결정력이 있는(determinative) 것이 아니라고 언급됨

269) 상세한 판단조건 및 조건별 세무상 취급은 제시되지 않음

다. 2022년 예산안 발표

[조세동향 22-03호]

영국 재무부(HM Treasury)는 2022년 3월 23일, 개인에 대한 최근 25년 내 최대 규모의 감세정책을 포함하는 2022년 예산안(Spring Statement 2022)을 발표함[272]

- 조세 관련 조치에는 주로 개인에 대한 조세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들이 포함되었고, 이 중 소득세 기본세율 인하는 16년 만에 처음임
  - 2024년 4월부터 소득세 기본세율 적용구간에 대한 적용세율을 1%p 인하(20%→19%)하기로 함[273]
  - 2022년 7월부터 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국가보험료(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s) 부과개시 기준소득을 소득세 부과개시 기준소득 수준으로 인상(9,880파운드[274]→1만 2,570파운드[275])하기로 함[276]
  - 2022년 3월 23일부터 12개월간 휘발유·경유에 적용되는 연료세(fuel duty)를 리터당 0.05파운드[277] 인하함[278]
- 투자촉진을 위한 세제 지원책은 올해 추후 발표할 계획임을 예고함

270) 암호자산에 대한 수익적 소유권(beneficial ownership)이 이전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는 암호자산 수령자(recipient)가 수령한 암호자산을 원하는 대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을 때를 말함

271) 보상대가는 양도차익 산정을 위한 처분대가(consideration)에서 제외되어 이중과세(double taxation)를 방지하게 됨

272) 영국 정부, *Spring Statement 2022*, 2022. 3. 23.,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spring-statement-2022-documents, 검색일자: 2022. 3. 29.

273) 2021/22회기 기준, 과세소득(taxable income) 구간별 적용세율은 0%(과세소득 0~1만 2,570파운드), 20%(기본세율, 과세소득 1만 2,571파운드~5만 270파운드), 40%(과세소득 5만 271파운드~15만파운드), 45%(과세소득 15만파운드 초과)임(영국 정부, "Income Tax rates and Personal Allowances," https://www.gov.uk/income-tax-rates, 검색일자: 2022. 3. 29.)

274) 2022년 3월 2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천 600만원임

275) 2022년 3월 2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천만원임

276) 영국 재무부는 보통 근로자(typical employee)가 연간 330파운드(약 53만원)의 절세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함

277) 2022년 3월 2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80원임

278) 해당 유종에 대한 리터당 연료세는 변경 전 0.5795파운드(약 930원), 변경 후 0.5295파운드(약 850원)임(영국 정부, "Fuel Duty rates 2022-23," 2022. 3. 23.,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hanges-to-fuel-duty-rates/fuel-duty-rates-2022-23, 검색일자: 2022. 3. 29.)

라. 에너지 기업에 25% 초과이윤세 부과 발표

[조세동향 22-06호]

- 영국 정부는 2022년 5월 26일, 석유·가스 기업에 대한 세율을 기존 40%에 25%를 추가로 부과하는 초과이윤세(Windfall tax)를 발표함[279]
  - 초과이윤세(Windfall tax)[280]는 정부의 필요성에 따라 일시적으로 추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석유·가스 기업의 영업이익 증가를 기술혁신 등을 통해 거둔 성과가 아니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반사 이익으로 규정하면서 초과이윤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것임
  - 이에, 기존의 최고세율인 40%에 25%의 초과이윤세율을 더해, 에너지기업들은 최고 6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됨
  - 2022년 5월 26일 이후 발생하는 이익에 대하여 부과될 예정임
  - 다만, 에너지기업들의 이익 재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에너지기업의 신규 자본지출에 80%의 세금공제 혜택(new Investment Allowance)을 줄 것이라고 밝힘[281]

- 이에 따라, 영국 정부는 향후 50억파운드[282]의 추가 세수가 걷힐 것으로 예상됨
  - 동 추가 재원은 영국의 전력가격 폭등에 따른 가계의 비용 상승분을 보조하여,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하겠다는 것이 영국 정부의 계획임

- 영국 정부는 추후 석유·가스 가격이 정상 수준으로 회귀하면 단계적으로 초과이윤세 부과를 종료할 것이라고 밝힘

279) IBFD, "UK Chancellor Announces 25% Windfall Tax on Oil and Gas Companies," 2022. 5. 27.,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5-27_uk_2.html, 검색일자: 2022. 6. 14.

280) Windfall tax는 '횡재세'로도 번역됨

281) HM Treasury, "Policy Paper-Energy Profits Levy Factsheet," 2022. 5. 26.,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ost-of-living-support/energy-profits-levy-factsheet-26-may-2022, 검색일자: 2022. 6. 14.

282) 2022년 6월 1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7.8조원임

마. 필라2 이행 연기 발표

[조세동향 22-06호]

- 영국 정부는 2022년 6월 14일, 필라2의 자국 내 이행을 2023년 12월 이후로 연기할 것을 발표함[283]
  - ▶ 이는 기존의 이행 계획이었던 2023년 4월 1일에서 8개월 이상 연기되는 조치임

- 영국 정부는 필라2 이행과 관련하여 지난 2022년 4월 4일까지 국내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 바 있음[284]
  - ▶ 동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50건 이상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 중 대부분은 필라2가 본격적으로 이행되기 전 준비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 특히, 기존의 계획대로 2023년 상반기부터 필라2를 영국 내에서 이행할 경우, 제도가 성공적으로 이행되지 못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국의 기업 환경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이에 따라, 영국 재무부는 필라2 이행에 관한 법률은 2023년 12월 31일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 이후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를 통해 기업들에 충분한 준비시간을 주겠다는 방침임

283) IBFD, "United Kingdom to Delay Pillar Two Implementation," 2022. 6. 15.,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6-15_uk_1.html, 검색일자: 2022. 6. 16.

284) HM Treasury, "Closed consultation - Letter from the Financial Secretary to respondents of the OECD Pillar 2 implementation consultation," 2022. 6. 14., https://www.gov.uk/government/consultations/oecd-pillar-2-consultation-on-implementation/letter-from-the-financial-secretary-to-respondents-of-the-oecd-pillar-2-implementation-consultation, 검색일자: 2022. 6. 16.

2 독일

가. 납세자 지원을 위한 다수의 제안 공개

[조세동향 22-02호]

↘ 독일 재무부는 2022년 2월, 코로나19 대응 납세자 지원을 위한 다수의 제안을 공개함[285]

▶ 다수의 제안 대부분은 기존 지원 방안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독일 재무부는 2022년 1월 31일 공개한 시행령을 통해 이전의 조세 관련 유동성 지원 정책(Tax-related liquidity assistance)[286]을 2022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고, 코로나19 영향으로 미납하여 2022년 3월 31일까지 지연납부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등에 대해 2022년 6월 30일까지 집행과 가산세를 면제함[287]

– 이전 시행령에서 해당 지원안은 2022년 1월 31까지로 연장된 바 있음[288]

285) IBFD, "COVID-19 Pandemic: Germany Approves Draft Bill Providing Further Help for Taxpayers," 2022. 2. 17.,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2-17_de_1.html, 검색일자: 2022. 3. 7.

286) 유동성 지원 정책이란, 코로나19 위기에 기업의 유동성(기업의 자산이나 채권 등을 손실 없이 현금화하는 것)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선납세금 완화(reducing pre-payments) 및 납부기한 연장(deferring tax payments)으로 납세자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말함(IBFD, "COVID-19 pandemic: emergency tax measures,"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1-25_cn_1.html, 검색일자: 2022. 3. 17.)

287) IBFD, "COVID-19 Pandemic: Germany Prolongs Tax-Related Liquidity Assistance Measures," 2022. 2. 2.,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2-02_de_1.html, 검색일자: 2022. 3. 7.; 독일 재무부, "Steuerliche Maßnahmen zur Berücksichtigung der Auswirkungen des Coronavirus (COVID-19/SARS-CoV-2)," 2022. 1. 31.,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Downloads/BMF_Schreiben/Weitere_Steuerthemen/Abgabenordnung/2022-01-31-steuerliche-massnahmen-zur-beruecksichtigung-der-auswirkungen-des-coronavirus.html, 검색일자: 2022. 3. 7.; Bloomberg Tax, "Germany MOF Announces Further Extension of Tax Payment Deadlines Due to Coronavirus," 2022. 2. 3., 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bloombergtaxnews/daily-tax-report/XDRG9TNG000000?bc=W1siU2VhcmNoIFJlc3VsdHMiLCIvcHJvZHVjdC90YXgvc2VhcmNoL3Jlc3VsdHMvZDQ4NGZiMTNhOWQyYTcwYzcyN2JiNGU0ODM5YmIzYmIiXV0-32f5f153492aaabeb02897ad6d7b84825776c832, 검색일자: 2022. 3. 7.

288)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독일-코로나19 지원 세제 연장안 발표," 「주요국의 조세동향 21-12호」, 2022. 1. 14., https://www.kipf.re.kr/viewer/default/doc.html?fn=FILE_000000023447Wn4_0&rs=/viewer/result/kiTrend/202201///, 검색일자: 2022. 3. 7.

▶ 또한 독일 재무부는 2022년 2월 3일, 기존의 지원 방안 연장을 포함한 추가 지원을 위한 시행령을 공개하였으며, 내각은 2022년 2월 16일 이를 승인함[289]

- 병원 등 특정 시설 적격 사용자로부터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특별 용역(special services)에 대한 특별 급여를 최대 3천유로[290]까지 비과세하는 추가 지원을 도입함
- 기존 재택근무(연간 600유로[291] 한도) 공제, 고정자산 가속상각(연간 감가상각률 25%), 신고기한(개인 최대 2개월, 기업 최대 4개월) 연장 등을 2022년까지 연장함
- 2022년부터 기존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면서, 소급공제 가능 결손금 한도를 500만유로[292]에서 1천만유로[293]로 확대함[294]

289) IBFD, "COVID-19 Pandemic: Ministry of Finance Issues Draft Bill Providing Further Help for Taxpayers," 2022. 2. 7.,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2-07_de_1.html, 검색일자: 2022. 3. 7.; 독일 재무부, "Steuerliche Maßnahmen zur Bewältigung der Corona-Pandemie," 2022. 3. 2.,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Standardartikel/Themen/Schlaglichter/Corona/steuerliche-massnahmen-corona.html, 검색일자: 2022. 3. 7.; Bloomberg Tax, "Germany MOF Releases Draft Bill to Announce Further Tax Relief Measures Due to Coronavirus," 2022. 2. 8., 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bloombergtaxnews/daily-tax-report/XK7J8S000000?bc=W1siU2VhcmNoIFJlc3VsdHMiLCIvcHJvZHVjdC90YXgvc2VhcmNoL3Jlc3VsdHMvZDQ4NGZiMTNhOWQyYTcwYzcyN2JiNGU0ODM5YmIzYmIiXV0-32f5f153492aaabeb02897ad6d7b84825776c832, 검색일자: 2022. 3. 7.

290) 2022년 3월 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00만원임

291) 2022년 3월 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80만원임

292) 2022년 3월 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6억 4,150만원임

293) 2022년 3월 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32억 8,300만원임

294) KPMG, "Germany: Tax relief measures in legislative proposals include loss carryback and loss offsetting extensions (COVID-19)," 2022. 2. 25., https://home.kpmg/us/en/home/insights/2022/02/tnf-germany-tax-relief-measures-in-legislative-proposals-include-loss-carryback-and-loss-offsetting-extensions-covid-19.html, 검색일자: 2022. 3. 7.; Bloomberg Tax, "Germany Eyes More Generous Loss Carrybacks as Pandemic Continues," 2022. 2. 4., 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bloombergtaxnews/daily-tax-report/X7RJNKT0000000?bc=W1siU2VhcmNoIFJlc3VsdHMiLCIvcHJvZHVjdC90YXgvc2VhcmNoL3Jlc3VsdHMvZDQ4NGZiMTNhOWQyYTcwYzcyN2JiNGU0ODM5YmIzYmIiXV0-32f5f153492aaabeb02897ad6d7b84825776c832, 검색일자: 2022. 3. 7.

나. 물가 상승에 따른 납세자 지원 혜택안 승인

[조세동향 22-02호]

↘ 독일 내각은 2022년 2월 23일, 물가 및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대한 보완책으로 납세자에 대한 지원이 담긴 혜택안을 승인함[295]

▶ 물가 상승에 따른 조정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표준 및 기본 공제 및 통근 비용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함

- 근로자에 대한 표준 공제 금액을 1천유로[296]에서 1,200유로,[297] 기본 공제 금액을 9,984유로[298]에서 1만 347유로[299]로 상향 조정함
- 통근 비용공제 금액을 회당 0.35유로[300]에서 0.38유로[301]로 상향 조정함
- 물가 상승에 대한 비조세 정책수단으로 최저임금 상향 조치도 포함됨

▶ 신재생에너지부과금을 폐지하여 킬로와트(kWh)당 0.03723유로[302]의 혜택을 부여함

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응하는 세제특례 공개

[조세동향 22-03호]

↘ 2022년 3월 18일 독일 재무부는 기후 보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건물 개보수 세제지원안을 공개함[303], [304]

295) IBFD, "Government Agrees on Relief Package for Taxpayers," 2022. 2. 24.,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2-24_de_2.html, 검색일자: 2022. 3. 10.

296) 2022년 3월 1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35만원임

297) 2022년 3월 1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62만원임

298) 2022년 3월 1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355만원임

299) 2022년 3월 1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404만원임

300) 2022년 3월 1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75원임

301) 2022년 3월 1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15원임

302) 2022년 3월 1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0원임

303) BLOOMBERGTAX, "Germany MOF Announces Tax Incentives for Energy-Efficient Building Renovations," https://news.bloombergtax.com/daily-tax-report-international/germany-mof-announces-tax-incentives-for-energy-efficient-building-renovations, 검색일자: 2022. 4. 4.

304) 독일 재무부, "Kurz erklärt: Steuerliche Förderung energetischer Gebäudesanierungen,"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Standardartikel/Themen/Schlaglichter/

- 세제지원을 통해 건물 소유주가 적시에 건물이나 아파트를 개보수함으로써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고자 함
- 최소 10년 이상된 건물이나 아파트가 대상이 되며, 신청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및 직접 거주자여야 함
- 건물의 단열, 난방, 환기시설 관련된 공사비용이 해당되며, 에너지 관련 건축 감독 및 전문가 비용도 지원 대상에 포함됨
  - 벽, 지붕 또는 천장의 단열
  - 창호 또는 출입문 교체 및 여름철 단열 개선
  - 환기 시스템의 개조 또는 설치
  - 난방 시스템의 교체
  - 2년 이상된 기존 난방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 에너지 운영 및 소비 최적화를 위한 디지털 시스템 설치
- 최대 지원 금액은 주거용 부동산당 4만유로로, 세금에서 3년 동안 투자비용의 20%를 공제받거나 에너지 관련 건축 감독 및 전문가 비용의 경우 일시로 50%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음

↘ 독일 정부는 2022년 3월 22일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대응하고자 에너지 가격 감면 법안을 승인함[305], [306], [307]

- 에너지 공급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납세자들의 어려움을 대응하기 위해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3개월간 에너지세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음
  - 급여 외에 300유로의 과세 대상 소득 지급함

Klimaschutz/2020-02-07-steuerliche-foerderung-energetischer-gebaeudesanierungen.html, 검색일자: 2022. 4. 4.

305) IBFD, "Government Approves Additional Relief Package for Taxpayers,"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3-25_de_1.html, 검색일자: 2022. 4. 5.

306) 독일 재무부, "Ergebnis des Koalitionsausschusses vom 23. Marz 2022,"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Downloads/2022-03-23-massnahmenpaket-bund-hohe-energiekosten.pdf?__blob=publicationFile&v=3, 검색일자 2022. 4. 5.

307) BLOOMBERGTAX, "Germany Slashes Fuel Tax in $16.5 Billion Energy Package (1)," https://news.bloombergtax.com/daily-tax-report/germany-slashes-fuel-tax-in-16-5-billion-energy-package-1, 검색일자: 2022. 3. 31.

- 아동 1인당 아동수당 100유로 추가 지급함
- 사회보장금 100유로 추가 지급함
-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30센트, 경유의 경우 리터당 14센트 감면함

▶ 법안은 향후 국회 양원의 승인을 통해 확정될 예정임

라.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세 방안 공개

[조세동향 22-03호]

↘ 독일 재무부는 2022년 3월 17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공개함[308], [309], [310]

▶ 시행기간은 2022년 2월 24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임

↘ 독일의 국내법인 등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희생자를 위해 신규 특별 계좌에 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체 증빙만으로 기부금 확인서를 대신할 수 있음

▶ 세무당국이 해당 증빙서류를 요청할 경우 제출해야 하며, 신고기한으로부터 1년 후까지 보관하여야 함

↘ 조세특혜기업이 전쟁 희생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부하거나 인적·물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세금특례가 부여됨

▶ 조세특혜기업이 기업의 정관에 자선활동 사업이 언급되어 있지 않더라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희생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모금하는 경우에는 세금특례가 부여됨

▶ 조세특혜기업이 전쟁 희생자를 위해 현금이나 현물을 기부하거나, 직원을 파견 또는 사무실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세금특례가 부여됨

308) BLOOMBERGTAX, "Germany MOF Announces Various Tax Measures Due to War," https://news.bloombergtax.com/daily-tax-report-international/germany-mof-announces-various-tax-measures-due-to-war, 검색일자: 2022. 4. 1.

309) IBFD, "Ministry of Finance Issues Guidance on Tax Measures Supporting Victims of Russian Invasion of Ukraine,"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3-21_de_1.html, 검색일자: 2022. 4. 1.

310) 독일 재무부, "Steuerliche Maßnahmen zur Unterstützung der vom Krieg in der Ukraine Geschädigten,"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Downloads/BMF_Schreiben/Weitere_Steuerthemen/Abgabenordnung/2022-03-17-Stl-Massnahmen-Unterstuetzung-Ukraine-Geschaedigte.pdf?__blob=publicationFile&v=4, 검색일자: 2022. 4. 1.

- 전쟁 난민을 위해 임시 거주 시설을 제공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사업용 자산을 제공하는 경우 세법상 비용으로 공제 가능함

- 전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종업원, 사업 파트너의 종업원을 위해 고용주가 지원한 보수에 대해서는 적절히 문서화된 경우 근로소득세가 면제됨
  - ▶ 감독이사회 임원의 보수가 기부된 경우에는 사업비용으로 50% 공제가 가능함

- 기업이 전쟁 희생자를 위해 인적, 장소, 물질적 자원 또는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이미 부가가치세가 납부된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하도록 함
  - ▶ 조세특혜기업이 전쟁 희생자를 위해 인적, 장소, 물질적 자원 또는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기업 정관에 해당 활동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 전쟁 희생자를 무료로 지원하는 기관에 물질적 자원 또는 인력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면제되며, 이미 납부된 부가가치세는 공제가 가능하도록 함
  - ▶ 전쟁 희생자를 위해 건물을 사용한 경우 기 공제된 부가가치세는 재조정되지 않으며, 호텔 객실 또는 별장용 아파트와 같은 주거공간을 사용한 경우에도 동일한 규칙이 적용됨

- 전쟁 희생자를 위한 공공단체, 공공 교회(public churches) 및 자선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증여세가 면제됨

마. 중국 기업 배당금 원천징수 지침 공개

[조세동향 22-04호]

- 독일 재무부는 2022년 4월 5일, 중국 기업 배당금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지침(No. 2022/0342138)을 발표함[311], [312], [313]

311) IBFD, "Ministry of Finance Issues Guidance on Creditability of Withholding Tax on Dividends Distributed by Chinese Companies,"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4-05_de_1.html,검색일자 2022. 4. 20.

312) BLOOMBERGLAW, "Germany MOF Explains Taxation on Stock Dividends Under DTA With China,"

▶ 중국-독일 자본소득세 협정(China-Germany Income and Capital Tax Agreement (2014))에서는 중국 본토에 거주하는 회사의 배당금 원천징수만을 다루고 있음

▶ 많은 독일 투자자는 중국 증권거래소가 아닌 홍콩 증권거래소를 통해 주식거래를 하며, 독일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중국 기업도 일부 존재함에 따라 상기 회사들의 배당금 원천징수에 대해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중국 기업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세 부담은 보유기간과 중국 주식이 보유·상장된 거래소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중국 증권거래소에 보유·상장된 주식 중 인민폐로 거래되는 주식에 대한 배당금은 주식 보유기간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이 달리 적용되며, 홍콩달러나 미국달러로 거래되는 주식의 배당금에 대해서는 원천징수하지 않음

▶ 중국 증권거래소에서 중국 통화인 인민폐로 거래되는 중국 기업의 주식을 A주라 하며, A주의 배당금 지급 시에는 비거주자(개인)의 보유기간에 따라 원천징수세가 적용됨[314)]

- 보유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20% 적용
- 보유기간이 1개월 ~ 1년인 경우 10% 적용
-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않음

▶ 중국 증권거래소에서 미국달러나 홍콩달러로 거래되는 중국 기업의 주식을 B주라 하며, B주 배당금 지급 시 중국에서 원천징수하지 않음

---

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bloombergtaxnews/daily-tax-report/X2V23PAG000000?bc=W1siU2VhcmNoIFJlc3VsdHMiLCIvcHJvZHVjdC90YXgvc2VhcmNoL3Jlc3VsdHMvNWE1MGJhMmZlMjU4MWFlZjIyZjg3ZTc2M2YyZmIxNGUiXV--ff746bb5e77991909551ae90ffd48f5ec236162b&search32=Ls7uog6ZO3Ek1wpGkS6tqw%3D%3DG_FQZow_biMqmqs5xusVwD5MupwAHXDwCc-pUSx_LIm91rlWXJgEZuw19XD-Ih8rric-WRxfQiZ5oLzFh3N20TrryQNH5CtOlk_J-T2EeYGh3PXQ1-RUpd6fe2JC45GhtLpWoL9ub_3MJsj3i2oVBCR59otV4eUGFpLPXQ31L3v3b7AYiWB-yZG9Rbdof5HfEhuSH8hLqPUdhvqJmUQFtUhxDDjvtcH2EymgjrR6NHDmqIlM03y14Pznn8xtalKe, 검색일자: 2022. 5. 2.

313) 독일재무부, "Kapitalertragsteuer; Anrechnung von Quellensteuer, die auf Ausschüttungen von chinesischen Aktien erhobenwird, auf diedeutsche Kapitalertragsteuer nach § 43a Absatz 3 EStG,"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Downloads/BMF_Schreiben/Steuerarten/Abgeltungsteuer/20220331-anrechnung-von-quellensteuer-die-auf-ausschuettungen-von-chinesischen-aktien-erhoben-wird-auf-die-deutsche-kapitalertragsteuer.pdf?__blob=publicationFile&v=2, 검색일자: 2022. 5. 2.

314) 독일 개인투자자는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시스템(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s system)을 통해서 A주를 취득할 수 있음

- 홍콩 증권거래소에 보유·상장된 중국 주식의 경우, 행정편의상 배당금 지급 시 일괄적으로 10%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됨
  - ▶ 홍콩 증권거래소에 보유 상장된 중국주식은 H주식이라 하며, 독일 개인 투자자는 일반적으로 H주식에 투자함
  - ▶ 중국은 많은 국제주주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부담을 줄이고자, H주식의 경우 배당금 지급 시 일괄적으로 10%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함
    - H주식의 배당금을 비거주 개인에게 지급할 경우 20%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나 중국과 조세조약을 맺은 국가들의 경우 제한세율(10%)이 적용됨에 따라 중국은 행정편의상 일괄적으로 1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

-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권거래소에 보유·상장된 중국 기업의 주식배당금 지급 시 조세조약에 따라 10%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됨

바. 가상화폐 소득세 처리에 대한 지침 발표

[조세동향 22-05호]

- 독일 재무부는 2022년 5월 10일 가상화폐(Virtuellen Währungen) 소득세 처리에 대한 가이드라인(Letter No. 2022/0493899)을 발표함[315], [316]
  - ▶ 독일에서 가상화폐 및 토큰은 자산으로 간주되어 개인소득세 과세 대상임
  - ▶ 가상화폐 관련 수익은 각 상황에 따라 영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으로 과세될 수 있음

- 독일에서는 가상화폐를 1년 이상 보유한 후 처분한 경우와 가상화폐의 총수익이 연간 600유로[317] 미만인 경우 비과세됨

315) 독일 재무부, "Einzelfragen zur ertragsteuerrechtlichen Behandlung von virtuellen Währungen und von sonstigen Token,"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Downloads/BMF_Schreiben/Steuerarten/Einkommensteuer/2022-05-09-einzelfragen-zur-ertragsteuerrechtlichen-behandlung-von-virtuellen-waehrungen-und-von-sonstigen-token.html, 검색일자: 2022. 5. 24.

316) Koinly, *Germany Crypto Tax Guide 2022*, https://koinly.io/guides/crypto-tax-germany/, 검색일자: 2022. 5. 31.

317) 2022년 6월 9일 원화 환산 시 약 80만원임

- ▶ 가상화폐를 기반으로 한 지분증명(proof of stake) 및 대출에도 1년 의무 보유기간이 적용됨
- ▶ 가상화폐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와 연간 가상화폐의 총수익이 600유로를 초과한 경우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을 납부하여야 함
- ▶ 초안에서는 가상화폐의 비과세 의무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라 밝힌 바 있으나, 많은 비판을 우려해 기존 1년의 의무기간을 유지함

↘ 가상화폐를 직원들에게 할인된 가격 또는 무료로 양도하는 경우 해당 가상화폐는 현물 과세혜택으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세가 부과됨

- ▶ 가상화폐 및 토큰은 직원의 스톡옵션 계획에 따라 제공될 경우를 포함하며, 과세시기는 암호화폐 및 토큰이 직원의 전자지갑으로 이전될 때임

↘ 채굴(mining)활동은 상황에 따라 상업적 활동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영업소득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

- ▶ 상업적 활동 여부는 독일 소득세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소득 과세 대상이 됨
  - 블록 생성이 지속 가능하도록 설계됨
  - 장기적으로 이익이 창출될 수 있음
  - 채굴작업의 결과가 채굴자의 사적 자산을 구성하지 않으며, 채굴 대가로 블록 보상과 수수료를 받음

↘ 서로 다른 거래소, 지갑, 또는 계정 간에 가상화폐를 이동하는 것은 과세 대상이 아니며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3 프랑스

가. 신탁 보고 의무 관련 신규 지침 발표

[조세동향 22-04호]

프랑스 국세청은 2022년 3월 30일, '신탁 보고 의무 신규 지침'을 발표하여 프랑스 연계 거점이 있는 수탁자에 대하여 신탁재산 보고 의무를 부과함[318]

- 지침은 프랑스 연계 거점이 있는 수탁자의 신탁재산 보고 의무, 포트폴리오 투자의 보고 의무, 신탁 등록부에 접근 자격이 있는 전문가 목록 등을 제시함
  - 수탁자는 프랑스 연계 거점이 있는 경우에 일반적인 연간 보고 의무가 있고, 설립·청산 등의 사건에 기반한 특별 보고 의무가 있음
  - 프랑스 연계 거점은 수탁자·위탁자·수익자 또는 위탁자로 간주되는 수익자가 프랑스 거주자이거나, 신탁의 자산 또는 권리가 프랑스 내에 소재하거나, 수탁자가 EU 역외에 설립 또는 거주하는 등의 경우에 충족됨
  - 포트폴리오 투자가 신탁 자산으로 포함되면, 사건 기반 특별 보고 의무로서 그 증권의 판매 및 구매는 수탁자에 의하여 보고되어야 함
- 2018년 부동산세 개정 시 수탁자의 신탁재산 보고 의무에 대한 규정이었으나,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침을 발표함
  - 지침은 신탁과 관련하여 프랑스 「조세일반법」 제1649AB조에 따른 신고의무와 적용방법이 규정된 「조세일반법」 부록 2의 제369조, 제369A조 및 제369B조의 규정을 수정함

318) bofip.impots.gouv.fr., "30/03/2022: PAT – DJC – Précisions relatives aux obligations déclaratives à la charge de l'administrateur d'un trust," https://bofip.impots.gouv.fr/bofip/13272-PGP.html/ACTU-2021-00243, 검색일자: 2022. 4. 20.; EY, "French Tax Authority releases new guidelines impacting trust reporting requirements," 2022. 4. 8., https://www.ey.com/en_gl/tax-alerts/french-tax-authority-releases-new-guidelines-impacting-trust-reporting-requirements, 검색일자: 2022. 4. 20.

나. 부가가치세 면제 지침 중 보험 및 관련 용역 부분 개정

[조세동향 22-05호]

↘ 프랑스 국세청은 2022년 4월 27일, 보험 및 관련 용역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지침을 개정하여, 보험 영업의 정의, 보험·재보험 영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 및 보험·재보험 중개인과 관련한 내용을 개정함[319]

▶ 보험 영업의 정의 규정을 수정하고, 보험·재보험 영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제공되는 용역에 따른다고 규정함

- 보험 영업은 보험자가 사전에 지불된 보험료를 조건으로 하여 보험 대상 위험이 현실화되는 경우에 피보험자에게 계약 체결 시 합의된 급부를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본질상 계약관계를 전제로 함
- 또한 위험이 현실화될 때 제공되는 급부는 금전이 아니라 현물급부(예를 들어, 지원 유형)의 형태를 취할 수 있음
- 보험·재보험 영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은 영업을 수행하는 납세자의 특성 또는 법적 지위가 아니라, 제공되는 용역에 따름

▶ 보험·재보험 '중개인(courtier 또는 intermédiaire)'이 수행하는 영업의 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보험·재보험 관련 용역 제공을 폭넓게 정의하며, 백오피스(back-office) 용역은 면제되지 않음

- 부가가치세 면제와 관련하여 보험·재보험 중개인의 형식적 또는 법적 지위가 아니라, 중개인이 수행하는 영업의 내용에 따름
- 보험 영업의 정의와 달리 보험·재보험의 영업과 관련된 용역 제공은 엄격하게 정의하지 않고, 그 범위를 넓게 설정함
- 지원 또는 관리 용역과 관련하여, 보험·재보험 영업과 관련되지 않거나 중개인에 의하여 제공되지 않는 백오피스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됨

319) bpfip.imots.gouv.fr, "27/04/2022: TVA – Exonération des opérations d'assurance et de réassurance et des prestations de services afférentes à ces opérations effectuées par les courtiers et intermédiaires d'assurance," https://bofip.impots.gouv.fr/bofip/13492-PGP.html/ACTU-2022-00026, 검색일자: 2022. 5. 19.; KPMG, "France: Revised guidelines on VAT exemption for insurance and related services," 2022. 5. 5., https://home.kpmg/us/en/home/insights/2022/05/tnf-france-revised-guidelines-vat-exemption-insurance-related-services.html, 검색일자: 2022. 5. 19.

- 지침은 「조세일반법」의 보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을 구체화한 것으로, 관련 판례를 반영하여 지침의 내용을 개정함
  - 「조세일반법」 제261C조 제2항은 보험·재보험·중개인 및 중개인이 수행하는 보험 업무와 관련된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규정하고 있음
  - 지침의 개정은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JEU) 및 프랑스 법원의 판례를 반영한 것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4 이탈리아

가. 2022년 예산법안 발표

[조세동향 22-01호]

- 이탈리아 정부는 2021년 12월 31일, 2022년 예산법안을 관보에 게재함[320]
  - 주요 내용은 개인소득세율 및 근로소득 공제를 개정하고 투자세액 공제를 확대했으며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세와 설탕세의 시행 연기 등이 있음
  - 2022년 예산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21년 12월 30일 법률 제234호로 제정되어 2022년 12월 31일 관보 제310호로 공표됨

- 법인세에 대한 주요 조치는 아래와 같음[321]
  - 특허박스 제도가 개정되어 법인세액 공제에 적용되는 연구개발비 인정 금액이 기존 90%에서 110%로 상향됨
    - 이탈리아 거주기업 또는 이탈리아와 조세협정이 체결되어 정보교환이 가능한 상대국의 기업은 지식재산권(IP)을 만들고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개발 활동을

320) IBFD, "Budget Law for 2022: Italy Enacts Tax Measures To Reduce Tax Burden on Workers and Businesses," 2022. 1. 14.,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1-14_it_1.html, 검색일자: 2022. 1. 20.

321) IBFD, "Budget Law for 2022: Italy Amends Patent Box Regime and Investments Tax Credits," 2022. 1. 14., https://research.ibfd.org/data/tns/docs/html/tns_2022-01-14_it_2.html#tns_2022-01-14_it_2, 검색일자: 2022. 1. 20.

직접 수행하거나 대학, 연구기관 또는 이와 동등한 기관, 특수 관계가 없는 기업에 이전(outsource)하는 때에 개정된 특허박스규정을 선택할 수 있음

- 연구개발비용은 납세자가 사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사용하는 저작권이 있는 소프트웨어, 특허, 디자인 및 모델과 관련된 비용임

▶ 신규 사업 자산구입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범위가 <표 2-Ⅱ-1>과 같이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기타자산으로 구분되어 개정됨

▶ 연구개발활동비, 기술혁신 및 기타 혁신활동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가 <표 2-Ⅱ-2>와 같이 개정됨

▶ 중소기업(SMEs)의 EU 및 EEA 국가 상장에 필요한 자문비용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비용의 최대 50%(연간 20만유로[322])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특정 조건에 따라, 2022년 6월 30일까지(기존 2021년 12월 31일) 이월법인세 손실과 관련된 이월법인세 자산을 세액공제로 전환할 수 있음

〈표 2-II-1〉 2022년 예산법안의 법인세 투자소득 세액공제 구간

(단위: 유로, %)

구분		매수시기	투자금액	세액 공제범위
투자소득	유형자산	2022년 1월 1일~2022년 12월 31일	250만	40%
			250만 초과 1,000만 이하	20%
			1,000만 초과 2,000만 이하	10%
		2022년 1월 1일~2023년 6월 30일	2022년 말까지 매수 확정 및 매수대금의 20% 이상 실제지급 완료	투자금액별 공제율 적용
	무형자산	2023년 1월 1일~2025년 12월 31일	250만	20%
			250만 초과 1,000만 이하	10%
			1,000만 초과 2,000만 이하	5%
		2023년 1월 1일~2026년 6월 30일	2025년 말까지 매수 확정 및 매수대금의 20% 이상 실제지급 완료	투자금액별 공제율 적용
	기타자산	2022년 1월 1일~2022년 12월 31일	실제투자금액	6%
		2022년 1월 1일~2023년 6월 30일	2022년 말까지 매수 확정 및 매수대금의 20% 이상 실제지급 완료	유형자산은 200만유로
				무형자산은 100만유로

자료: IBFD, "Budget Law for 2022: Italy Amends Patent Box Regime and Investments Tax Credits," 2022. 1. 14., https://research.ibfd.org/data/tns/docs/html/tns_2022-01-14_it_2.html#tns_2022-01-14_it_2 검색일자: 2022. 1. 28.

322) 2022년 2월 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억 7,465만원임

〈표 2-Ⅱ-2〉 2022년 예산법안의 연구개발비용 세액공제 구간

(단위: %, 유로)

구분	회계연도	세액공제 범위	최대 세액공제금액
R&D 비용	2022 회계연도	20%	연간 400만
	2023 회계연도~2031 회계연도	10%	연간 500만
기술혁신 및 디자인 활동 비용[1)]	2022 회계연도~2023 회계연도	10%	연간 200만
	2023 회계연도~2024 회계연도	5%	
기술혁신 및 신규표본개발비용[2)]	2022 회계연도	15%	연간 200만
	2023 회계연도	10%	연간 400만
	2024 회계연도~2025 회계연도	5%	연간 400만

주: 1) 디자인 및 미적 발상 활동
2) 특정 사업부문에서 신제품 또는 표본 구현 활동

자료: IBFD, "Budget Law for 2022: Italy Amends Patent Box Regime and Investments Tax Credits," 2022. 1. 14., https://research.ibfd.org/data/tns/docs/html/tns_2022-01-14_it_2.html#tns_2022-01-14_it_2 검색일자: 2022. 1. 28.

↘ 개인소득세에 대한 주요 조치는 아래와 같음[323)]

▶ 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 대한 개인소득 공제금액이 <표 2-Ⅱ-3>, <표 2-Ⅱ-4>와 같이 개정됨

▶ 아래의 적격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기간이 기존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됨

- 부동산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발생한 일정 비용
- 부동산의 보수를 위해 발생한 특정 비용
- 건물 리모델링과 관련된 가구 구매에 발생한 비용으로 회계연도 2022는 1만유로, 회계 연도 2023 및 2024는 5천유로(기존 1,600유로)까지 가능[324)]
- 녹화 프로젝트(greening projects)에 대한 비용

▶ 건물 외벽 리모델링 등 건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발생된 비용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요된 비용의 경우 7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적용 가능한 비용의 범위는 부동산 유형에 따라 3만유로에서 5만유로[325)] 사이임

323) IBFD, "Budget Law for 2022: Italy Amends Individual Income Tax Rates and Earned Income Credits," 2022. 1. 14., https://research.ibfd.org/data/tns/docs/html/tns_2022-01-14_it_3.html#tns_2022-01-14_it_3, 검색일자: 2022. 1. 20.

324) 2022년 2월 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각각 약 1,373만원, 686만원, 219만원임

325) 2022년 2월 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각각 약 4,119만원, 6,866만원임

▶ 농지 소유권과 농업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공제 기간이 2022 회계연도까지 연장됨

〈표 2-II-3〉 2022년 예산법안의 개인소득세 구간(1)

(단위: 유로, %)

구분	기존 과세소득	기존 세율(%)	개정된 과세소득	개정된 세율(%)	근로소득 공제액
근로소득	최대 15,000	23	최대 15,000	23	1,880
	15,000 초과 28,000 이하	27	15,000 초과 28,000 이하	25	1,910+1,170×[(28,000 - 과세소득) / 13,000]
	28,000 초과 55,000 이하	38	28,000 초과 50,000 이하	35	1,910×[(50,000 - 과세소득) / 22,000]
	50,000 초과 75,000 이하	41	50,000 초과	43	-
	75,000 초과	43			

자료: IBFD, "Budget Law for 2022: Italy Amends Individual Income Tax Rates and Earned Income Credits," 2021. 10. 14., https://research.ibfd.org/data/tns/docs/html/tns_2022-01-14_it_3.html#tns_2022-01-14_it_3, 검색일자: 2022. 1. 20.; informazioneFiscale, "IRPEF 2022, aliquote e scaglioni: come fare il calcolo," https://www.informazionefiscale.it/IRPEF-2022-aliquote-scaglioni-calcolo-novita, 검색일자: 2022. 2. 11.

〈표 2-II-4〉 2022년 예산법안의 개인소득세 구간(2)

(단위: 유로)

구분	과세소득	개인소득 공제액
연금소득	최대 8,500	1,955
	8,500 초과 28,000 이하	700+1,255×[(28,000 - 과세소득) / 19,500]
	28,000 초과 50,000 이하	700×[(50,000 - 과세소득) / 22,000]
	50,000 초과	-
사업 및 기타 소득	5,500 이하	1,265
	5,500 초과 28,000	500+765×[(28,000 - 과세소득) / 22,500]
	28,000 초과 50,000 이하	500×[(50,000 - 과세소득) / 22,000]
	50,000 초과	-

자료: IBFD, "Budget Law for 2022: Italy Amends Individual Income Tax Rates and Earned Income Credits," 2021. 10. 14., https://research.ibfd.org/data/tns/docs/html/tns_2022-01-14_it_3.html#tns_2022-01-14_it_3, 검색일자: 2022. 1. 20.

- 간접세에 대한 주요 조치는 아래와 같음[326]
  - 여성위생용품에 대해 10%로 인하된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함
  - 가정과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천연가스 공급에 대해 5%로 인하된 부가가치세율 적용이 연장됨
    - 기존 2021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공급분에 대한 한시적 인하 혜택을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 연장함
  -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세와 설탕세 시행을 연기함
    - 당초 2022년 1월 1일부로 시행 예정이었던 것을 2023년 1월 1일로 연기함
  - 만 35세 이하 개인이 처음 구입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등록세, 주택담보세 및 토지세 적용 면제가 연장됨
    - 기존 2022년 6월 30일까지였던 면제 혜택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됨

나. 코로나19 관련 추가 지원 조치 발표

[조세동향 22-02호]

- 이탈리아 정부는 2022년 1월 27일, 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을 완화하고 코로나19 영향을 받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 긴급 조치인 법령 No. 4/2022를 공표함[327]
  - 법령은 2022년 1월 27일자 관보 제21호에 게재 및 발효됨

- 국가 복구 및 복원계획(Piano Nazionale di Ripresa e Resilienza: PNRR)에 열거된 생태전환 대상에 투자된 비용의 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함
  -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또는 2026년 6월 30일 사이에 시행된 생태전환 투자여야 하며, 그 대상은 다음과 같음

326) IBFD, "Budget Law for 2022: Italy Further Postpones Entry into Effect of Plastic Tax and Sugar Tax," 2022. 1. 14.,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1-14_it_4.html, 검색일자: 2022. 1. 20.

327) IBFD, "COVID-19 Pandemic: Italy Gazettes Further Support Measures," 2022. 2. 7.,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2-07_it_2.html, 검색일자: 2022. 2. 25.

- ① 재생 가능 에너지 사용 확대, ② 수소의 생산, 유통, 연구, 산업 및 교통에서의 사용, ③ 전기 충전소, 자전거 도로, 트램 라인, 무궤도 전차 등 지속가능한 운송수단 인프라 마련, ④ 스마트 그리드 용량, 신뢰성, 안전성 및 유연성 향상, ⑤ 녹색 전환 가치 사슬 관련 산업(배터리 셀 등) 및 연구 리더십 개발, ⑥ 전기 폐기물 및 전자 장비 재활용과 같은 순환 경제를 위한 투자 및 개혁, ⑦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민간주택 개조 등이 생태전환 투자 대상에 포함됨[328]

▶ 2025년 12월 31일까지 매도인의 해당 발주서 수락과 구매가격의 최소 20%에 대한 실제 지불이 이루어진 경우여야 함

▶ 1천만유로[329]에서 5천만유로[330] 사이인 투자에 대해 취득원가의 5%의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됨

↘ 에너지 소비가 많은 기업은 2022년 1분기에 구입하여 실제 소비한 에너지에 대해 소요비용의 20%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관광업 종사 기업은 2019년 동월 대비 50% 이상의 매출 감소를 겪는 경우, 2022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영업활동을 위한 상업용 부동산 임대비용의 60%[331]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2022년 1월까지 납부해야 하는 원천징수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는, 코로나19 대유행 억제를 위해 도입된 제한으로 2022년 1월 31일까지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기업에 대해 일시적으로 납부를 중지함

▶ 일시적으로 납부 중단된 세금은 2022년 9월 16일까지 분할납부 없이 일괄 납부되어야 함

328) Agenzia ICE, "Italian Recovery and Resilience Plan," p. 19, https://www.ice.it/en/sites/default/files/banner_files/italian-recovery-and-resilience-plan.pdf, 검색일자: 2022. 3. 16.

329) 2022년 3월 1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35억 7,830만원임

330) 2022년 3월 1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78억 9,150만원임

331) 단, 복합 서비스 계약 또는 계속적 임대기업의 경우 30%임

다. 코로나19 관련 관광부문 및 선박 서비스 지원 계획 EU 승인

[조세동향 22-05호]

- 2022년 5월 이탈리아는 EU 회원국 지원 규칙에 근거하여 EU 집행위원회로부터 코로나19와 관련한 관광부문 및 선박 서비스 지원 계획을 승인받음[332], [333]
  - EU 집행위원회는 해당 조치가 'EU 기능에 관한 조약(TFEU)' 제107조 제3항(b)과 2020년 3월 19일 채택된 EU 집행위원회의 코로나19 관련 일시적 국가보조체계안에 명시된 조건에 근거하여, 회원국의 심각한 경제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함

- 적격 여행 관련 사업자에 대한 세금공제를 통해 관광부문을 지원함
  - 적격 관광기업의 구조 및 시설, 에너지 효율 개선에 소요된 적격 비용의 50%에 대하여, 최대 10만유로[334]까지 세액을 공제함
  - 적격 여행사 및 관광 사업자의 디지털 개발에 소요된 적격 비용의 50%에 대하여, 최대 2만 5천유로[335]까지 세액공제함

- 연안 무역 및 기타 해양 서비스 분야에서 활용되는 선박을 소유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 조치가 이루어짐
  - 사회보장 및 복지 분담금에 대하여 2020년 8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부과분의 납부를 면제함

- 상기 지원 혜택은 2022년 6월 30일까지, 각 기업 혹은 사업자당 230만유로[336]까지 제공됨

---

332) IBFD, "COVID-19 Pandemic: State Aid - European Commission Approves Italian Scheme to Support Tourism Sector (12 May 2022),"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2-05-12_e2_4, 검색일자: 2022. 5. 23.

333) IBFD, "COVID-19 Pandemic: State Aid-European Commission Approves Italian Scheme to Support Affected Cabotage and Other Maritime Services," 2022. 5. 5.,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2-05-05_e2_4, 검색일자: 2022. 5. 23.

334) 2022년 5월 3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3,321만원임

335) 2022년 5월 3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330만원임

336) 2022년 5월 3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0억 6,424만원임

5 스페인

가. 창업 촉진을 위한 신규 세금 인센티브 법안 승인

[조세동향 22-01호]

- 스페인 정부는 2021년 12월 10일, 창업 촉진을 통한 국제적 인재와 자본 유치를 위해 새로운 세금 인센티브 법안을 승인함[337]
  - 해당 법안은 2021년 12월 27일 제121호/000081로 공표됨

- 창업 촉진 세금 인센티브는 다음의 신규 또는 최근에 설립된 법인에 적용됨[338]
  - 합병 또는 분할의 결과로 나타난 기업이 아닌 경우
  - 스페인에 영구적인 시설을 보유한 경우
  - 직원의 60% 이상이 스페인과 계약된 상태인 경우
  - 국가혁신기업으로 간주된 경우
  - 배당금을 분배하지 않은 경우
  -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일반적으로 설립된 지 5년 이내 법인이나 생명공학, 에너지 및 산업공학 기업은 설립된 지 7년 이내인 경우

- 창업 촉진 인센티브 관련 법인세 혜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339]
  - 과세 가능성이 발생한 첫해와 다음 3년간 법인세율을 25%에서 15%로 인하함

337) IBFD, "Government Amends Bill of Start-up Law to Further Increase Individual Income Tax Incentives," 2022. 1. 10.,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1-10_es_2.html, 검색일자: 2022. 1. 20.

338) IBFD, "Spain Plans To Create New Tax Incentives To Promote Start-Up Companies," 2021. 7. 26., https://research.ibfd.org/data/tns/docs/html/tns_2021-07-26_es_1.html#tns_2021-07-26_es_1, 검색일자: 2022. 1. 20.

339) 상동

▶ 과세 가능성이 발생한 최초 1년 또는 2년간은 법인세 또는 비거주자 소득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음

– 이 경우 세무당국은 6개월 또는 1년간 연체이자나 담보 제공을 면제함

▶ 과세소득이 발생하고 최초 2년간 법인세 또는 비거주자 소득세 분납금의 신고 및 납부의무가 면제됨

↘ 창업 촉진 인센티브 관련 소득세 혜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340]

▶ 스톡옵션의 최소 연간 면제수익을 1,200유로에서 5만유로[341]로 확대하며, 5만유로를 초과하는 비면제금액은 다음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첫 번째 과세기간에 포함함

– 법인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경우

– 주식이 납세자에 의해 이전된 경우

– 상기 두 가지 사안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그로부터 10년 후

▶ 신규 또는 최근에 설립된 기업에 대한 투자의 경우 세액공제금액을 6만유로에서 10만유로[342]로 확대함

– 또한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세액공제를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할 계획이며, 직접 또는 간접 참여의 40%를 초과할 수 없는 출자금은 최소 3년 이상 최대 12년까지 유지해야 함

나. 폐기물 및 오염된 토양에 관한 법안 추가 내용 상원 회부

[조세동향 22-02호]

↘ 스페인 의회는 2022년 1월 13일, 순환경제를 위한 폐기물 및 오염된 토양에 관한 법안과 관련하여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에 대한 신규 세금, 쓰레기 매립 및 폐기물 소각에 대한 신규 세금조치 등의 추가 승인 사항을 상원에 회부함[343]

340) IBFD, "Government Amends Bill of Start-up Law to Further Increase Individual Income Tax Incentives," 2022. 1. 10.,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1-10_es_2.html, 검색일자: 2022. 1. 20.

341) 2022년 2월 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64만원, 6,866만원임

342) 2022년 2월 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각각 약 8,239만원, 1억 3,732만원임

343) IBFD, "Congress Approves Bill on Waste and Contaminated Soils for Circular Economy and Refers It to Senate," 2022. 1. 31.,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

▶ 본 법안은 순환경제원칙을 확립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자원 사용 감축과 폐기물 처리의 우선순위(waste hierarchy)[344] 적용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며, 2008년 11월 19일 제정된 폐기물에 대한 지침(2008/98/EC)과 2019년 6월 5일 제정된 특정 플라스틱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감소에 관한 지침(EU 2019/904)과 동일한 목적을 지님

↘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에 대한 신규 간접세는 플라스틱이 포함된 제품, 해당 제품을 얻기 위해 만들어진 반제품(semi-finished products) 또는 그러한 제품을 밀봉, 상품화 또는 전시하도록 설계된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에 과세됨

▶ 과세 대상은 스페인 내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의 제조, 수입 또는 지역사회 내 취득 등의 경우에 해당함

– 단, 의료제품 등과 같은 특정 제품에는 예외가 적용됨

▶ 부과되는 세율은 재활용되지 않은 플라스틱 1킬로그램당 0.45유로[345]임

▶ 세금 신고 및 납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에 따라 월별 또는 분기별로 이루어져야 함

↘ 매립 및 폐기물 소각 처리에 대한 신규 간접세는 허가된 매립지에서의 쓰레기 처리와 스페인에 위치한 소각 또는 공동 연소시설에서의 강력한 기화 작용에 대해 부과함

▶ 단, 불가항력, 재해 또는 파괴될 자산의 압류와 같은 경우에는 특정 예외가 적용됨

▶ 부과되는 세율은 폐기물 유형에 따라 1미터톤(metric ton)당 5유로[346]에서 40유로[347]임

▶ 스페인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구역 내에서 세금을 인상할 수 있음

/html/tns_2022-01-31_es_1.html, 검색일자: 2022. 2. 25.

344) 폐기물 방지 및 재사용이 가장 선호되는 옵션이며, 퇴비화를 포함하는 재활용과 에너지 회수가 그다음, 매립지를 통한 폐기물 처리는 마지막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EU의 폐기물 방침 중 하나임(European Commission, "Waste prevention and management," https://ec.europa.eu/environment/green-growth/waste-prevention-and-management/index_en.htm, 검색일자: 2022. 3. 16.).

345) 2022년 2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06원임

346) 2022년 2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736원임

347) 2022년 2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만 3,890원임

다. 우크라이나 침공 영향 관련 에너지 조세 조치 정부 승인

[조세동향 22-04호]

- 스페인 정부는 2022년 4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스페인에 미치는 경제적, 사회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에너지 조세와 관련한 긴급 조치를 승인함[348]

- 전기요금의 급격한 상승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한 세금 조치를 추가로 연장함
  - ▶ 전기 에너지 생산에 대한 과세를 중지함
  - ▶ 청구서 발행기간 전월 전력시장의 1일 평균요금이 45유로[349]/MWh 이상인 경우, 전력 사용량이 10kW 미만인 고객과 사회적 취약계층[350]에 10%의 부가가치세 감면세율을 적용함
  - ▶ 전기요금에 부과되던 부가가치세율이 5.11%에서 0.5%로 감면되며, 이때 과세 대상 전기요금이 에너지 과세지침(2003/96)에서 요구하는 최소 요율로 발생하는 금액보다 작은 경우 별도의 요율이 적용됨
    - 업무용 전기는 0.5유로[351]/MWh, 비업무용 전기는 1.0유로[352]/MWh임

- 일부 세금에 대한 환급주기를 단축하고 조세행정 관련 마감일 연장에 대한 법령을 개정함
  - ▶ 상업용 가스에 대한 탄화수소 세금의 환급주기를 분기 단위에서 월 단위로 변경함
  - ▶ 기술적 사고에 기인한 만료 전 조세행정 업무의 마감일 연장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는 공공행정의 일반적인 행정 절차에 관한 법률인 Law 39/2015와 관련하여, 심각한 사이버 공격 시에도 조세행정 마감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함

- 해당 조치는 2022년 3월 31일부터 시행됨

348) IBFD, "Spain-Government Approves Tax Measures to Combat Soaring Prices of Energy,"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2-04-05_es_1, 검색일자: 2022. 4. 25.
349) 2022년 5월 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만 9,900원임
350) 2017년 10월 6일 Royal Decree 897/2017 조항에 근거한 사회적 취약계층임
351) 2022년 5월 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66원임
352) 2022년 5월 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332원임

라. NFT 과세와 관련한 구속력 있는 규칙 발표

[조세동향 22-06호]

- 스페인 국세청은 2022년 3월 10일 구매자에게 기본 디지털 미술품의 사용 권리를 부여하는 NFT 양도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구속력 있는 규칙 binding ruling V0486-22을 발표함[353], [354]
  - NFT의 공급장소가 스페인 영토로 간주되는 경우 NFT의 판매에 대해 예술품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10%의 감면세율이 아닌, 21%의 일반세율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함

- 스페인 국세청은 EU의 Council Implementing Regulation 제7(1)조에 근거하여 NFT 판매를 부가가치세 측면에서 '전자적으로 공급되는 서비스'로 간주함
  - NFT는 일러스트 파일의 물리적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고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구매자에게 개별화된 고유한 디지털 파일에 연결되는 '디지털 정품인증서'임
  - 또한 NFT의 판매는 물리적 상품에 대한 소유권이 아닌 디지털 자산에 대한 사용권을 부여하므로, NFT의 양도를 상품 인도와 같은 재화의 공급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함
  - 이와 함께 NFT는 화폐로 설정되어 있지 않고 대체가 불가능하므로 암호화폐 및 기타 디지털 통화와 유사할 수 있다는 특성 역시 배제함

- 본 규칙에서 NFT 판매에 스페인의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매자의 조건과 위치에 따른 공급장소 규칙도 함께 설명하고 있음
  - NFT가 부가가치세 목적의 기업 또는 개인사업자에게 판매되는 경우 공급장소는 구매자가 사업체를 설립한 곳이 됨

353) IBFD, "Tax Authorities Classify NFT Sales as Electronically Supplied Services for VAT Purposes,"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2-05-31_es_1, 검색일자: 2022. 6. 21.

354) JDSUPRA, "First Spanish ruling on the VAT treatment of the sale of NFTs," 2022. 5. 17., https://www.jdsupra.com/legalnews/first-spanish-ruling-on-the-vat-8369351, 검색일자: 2022. 6. 21.

▶ 구매자가 기업활동을 하지 않는 개인이고, 판매자의 사업체가 스페인에 설립된 경우 공급장소는 일반적으로 구매자의 사업체가 설립되거나 구매자의 영구 주소가 있거나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곳이 됨

- 구매자가 스페인에 거주하는 경우 스페인의 부가가치세가 적용되고, 구매자가 다른 EU 회원국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연도 구매액이 1만유로 이상을 초과하지 않는 한 구매자의 국가 내에서 부가가치세가 적용됨을 의미함
- 또한 구매자가 EU 외 국가에 거주하는 경우, 사용 및 향유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한 스페인의 부가가치세 과세범위에서 제외됨

↘ 그러나 NFT 거래의 익명성으로 인해 구매자의 소재지와 과세 대상 거래가 수행되는 장소를 결정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음

▶ EU 규정 No 282/2011에서 가상거래와 관련하여 구매자가 사용하는 장치의 IP 주소 등 고객의 위치 판정에 대한 지침 및 추정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나, 이러한 지침을 사용하더라도 NFT 판매 시 판매자가 구매자 위치를 결정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음

6 아일랜드

가.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세금 감면 및 보조금 지급 대응조치 발표

[조세동향 22-04호]

↘ 아일랜드 총리실(Department of Taoiseach)은 2022년 4월 13일, 최근 국제 유가 급등으로 인해 휘발유, 가스 등 연료가격이 오르자 세금 감면 등의 추가 대응조치를 발표함[355]

▶ 가스 및 전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3.5%에서 9%로 인하함

355) Tax Notes International, *Ireland to Cut VAT on Gas and Electricity*, Volume 106, 2022, p. 420.

- 동 조치로 4,600만유로[356]의 세수 손실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 가구당 약 50유로[357]의 가스요금과 70유로[358]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함

▶ 또한, 휘발유, 디젤유 및 그린 디젤유에 대한 물품세 인하를 연장함

- 아일랜드 정부는 지난 3월, 휘발유는 리터당 20센트, 디젤유는 리터당 15센트, 그린 디젤유는 리터당 2센트 인하하는 조치를 발표함
- 3월 발표 당시에는 8월까지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금번 연장으로 오는 10월 예산안 발표 전까지 물품세 인하 조치가 연장됨

▶ 한편, 그린 디젤유 물품세에 대해서는 리터당 2.7센트 추가 인하함

▶ 끝으로, 연료수당(fuel allowance)을 수령하는 약 37만가구에는 5월 중 100유로의 연료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

나. 코로나19 영향으로 관광산업에 부가세 감면 연장

[조세동향 22-05호]

아일랜드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는 2022년 5월 10일,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관광 및 환대 산업(tourism and hospitality industry)에 대한 부가세 감면을 연장하는 조치를 발표함[359]

▶ 관광 및 환대 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율 9% 적용은 2022년 9월 1일까지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6개월 추가 연장되어 2023년 2월 28일까지 적용될 예정임[360]

356) 2022년 5월 1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20억 9,034만원임

357) 2022년 5월 1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만 7,489원임

358) 2022년 5월 1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9만 4,485원임

359) Bloomberg Tax, "Ireland MOF Further Extends Reduced VAT Rate for Tourism, Hospitality Industries Due to Coronavirus," 2022. 5. 13., https://news.bloomberglaw.com/daily-tax-report-international/ireland-mof-further-extends-reduced-vat-rate-for-tourism-hospitality-industries-due-to-coronavirus?context=search&index=0, 검색일자: 2022. 5. 17.

360) Ireland Government, "Minister Donohoe announces extension of 9% VAT rate for the tourism and hospitality sectors," https://www.gov.ie/en/press-release/29536-minister-donohoe-announces-extension-of-9-vat-rate-for-the-tourism-and-hospitality-sectors/, 검색일자: 2022. 5. 17.

- 동 연장 조치로 2억 5천만유로의 세수손실이 예상됨

▶ 금번 연장 조치는 기존 조치에서와 동일한 상품 및 용역에 적용되며, 이에 따라 식당 용품(restaurant supplies), 관광숙박시설, 영화관, 박물관, 놀이공원뿐만 아니라 브로셔, 전단지와 같은 특정 인쇄물 산업(certain printed matter) 등에도 적용됨

▶ 금번 연장 조치 종료 이후 추가적인 연장은 계획되어 있지 않으므로, 2023년 3월 1일부터는 기존의 부가가치세율인 13.5%가 적용될 예정임

7 스위스

가. 디지털세 필라2 최저한세 이행 결정

[조세동향 22-01호]

↘ 스위스 연방 의회는 2022년 1월 12일, 헌법을 개정하여 OECD/G20의 필라2 최저한세(15%)를 이행하기로 결정함[361]

▶ 연방 의회는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법적 확실성을 위해서 새로운 헌법적 기반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함

- 2023년 6월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등[362] 시간 제약을 두지 않고 통상적인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며, 한시법을 제정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최저한세가 적용되도록 할 예정임
- 한시법에는 스위스의 주(canton)[363]가 최저한세에 추가하여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임[364]

361) Der Bundesrat, "Implementation of OECD minimum tax rate by constitutional amendment," https://www.admin.ch/gov/en/start/documentation/media-releases/media-releases-federal-council.msg-id-86783.html, 검색일자: 2022. 1. 28.

362) Bloomberg Law, "Switzerland Intends to Implement 15% Minimum Tax as of 2024 (2)," 2022. 1. 14., 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bloombergtaxnews/daily-tax-report/X1QJH2OK000000?bc=W1siU2VhcmNoIFJlc3VsdHMiLCIvcHJvZHVjdC90YXgvc2VhcmNoL3Jlc3VsdHMvYzFiZmUyZGYwYTg0OGMzN2Q5ZDU3NWY2NWUxMjc3ODciXV0-cad7e18886351f8dec1ffbcb2ede8028466ca88a, 검색일자: 2022. 2. 7.

363) 스위스는 26개의 주(canton)로 구성된 연방 국가임

▶ 한편, 재무부 장관은 자국의 경쟁력을 위해 각 주(canton)는 최저한세 도입 후 고소득 개인에 대한 세부담 경감을 고려하는 방안을 제안함[365]

- 스위스는 연방 법인세율 8.5%에 더하여 주별로 법인세율을 정하며, 기업이 부담하는 평균 법인세율은 약 14.9%로,[366] 낮은 법인세율은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는 주된 유인으로 작용하였음
- 재무부 장관은 '지속성 및 기술적 노하우'로 경쟁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하며,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누진세율 완화 등 세제혜택 제공을 제안함

나. 신주 발행에 대한 인지세 폐지 법안 부결

[조세동향 22-02호]

↘ 스위스에서는 2022년 2월 13일, 국민투표를 시행하여 신주 발행에 대한 인지세 폐지 법안이 부결됨[367]

▶ 스위스 연방 의회는 2021년 6월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100만프랑[368]을 초과하는 신주 발행에 대하여 1%의 인지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채택하였음

364) Bloomberg Law, "Switzerland Cabinet Approves Temporary Regulation on Global Minimum Tax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2022. 1. 19., 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bloombergtaxnews/daily-tax-report/XBCP1FGG000000?bc=W1siU2VhcmNoIFJlc3VsdHMiLCIvcHJvZHVjdC90YXgvc2VhcmNoL3Jlc3VsdHMvYzFiZmUyZGYwYTg0OGMzN2Q5ZDU3NWY2NWUxMjc3ODciXV0-cad7e18886351f8dec1ffbcb2ede8028466ca88a, 검색일자: 2022. 2. 7.

365) Bloomberg Law, "Swiss FinMin Floats Idea of Local Tax Cuts for High Earners: NZZ," 2022. 1. 16., 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bloombergtaxnews/daily-tax-report/X8HTLQV0000000?bc=W1siU2VhcmNoIFJlc3VsdHMiLCIvcHJvZHVjdC90YXgvc2VhcmNoL3Jlc3VsdHMvYzFiZmUyZGYwYTg0OGMzN2Q5ZDU3NWY2NWUxMjc3ODciXV0-cad7e18886351f8dec1ffbcb2ede8028466ca88a, 검색일자: 2022. 2. 7.

366) KPMG, "International fight over tax revenue jeopardizes Switzerland's attractiveness as a location," 2021. 4. 22., https://home.kpmg/ch/en/home/media/press-releases/2021/04/international-fight-over-tax-revenue-jeopardizes-switzerlands-attractiveness-as-a-location.html, 검색일자: 2022. 2. 11.

367) IBFD, "Swiss Voters Reject Abolition of Stamp Duty on New Corporate Shares," 2022. 2. 15.,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2-15_ch_1.html, 검색일자: 2022. 3. 10.; Département fédéral des finances, "≪Modification de la loi fédérale sur les droits de timbre≫ (suppression du droit de timbre d'émission)," https://www.efd.admin.ch/efd/fr/home/le-dff/legislation/votations/suppression-droit-timbre-emission.html, 검색일자: 2022. 3. 10.

368) 2022년 3월 10일 기준 원환 환산 시 약 13억 2,367만원임

▶ 2022년 2월 13일 선택적 국민투표(référendum facultatif)[369]에서 폐지 법안이 부결됨[370]

- 투표 참여자의 62.7%가 이 폐지 법안에 반대하였고, 반대 의견은 인지세 폐지 법안이 주로 대기업에 이익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함
- 선택적 국민투표는 의회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 발의에 5만명 이상 국민의 서명을 얻은 경우에 실시함[371]

다. '넷플릭스 법' 국민유권자 투표 통과

[조세동향 22-06호]

스위스 국민 유권자들은 2022년 5월 15일, 넷플릭스·디즈니와 같은 글로벌 TV스트리밍서비스사가 스위스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의 4%를 현지 영화 제작에 투자하도록 하는 넷플릭스법(Lex Netflix)을 승인함[372], [373]

▶ 스위스 국민 투표자의 58.4%가 찬성하여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글로벌 스트리밍서비스사가 스위스 수익의 4% 이상을 현지 영화제작에 투자하지 않을 경우, 4%에 해당하는 금액을 스위스 연방 문화재청에 납부해야 함

▶ 매년 스위스에서 발생하는 총수입의 4%를 투자해야 하며, 4년이 지난 후에도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연방문화재청에 납부해야 함

369) 스위스의 국민투표는 세 가지 종류로, 연방 정부 또는 연방 의회가 특정 사안에 대하여 시행하는 의무적 국민투표(référendum obligatoire),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이 기존 법안에 대하여 회부하는 선택적 국민투표(référendum facultatif), 국민이 헌법개정안을 직접 발의하는 국민발안(initiative populaire fédérale)임

370) Confédération suisse, "Loi fédérale sur les droits de timbre (LT) Chronologie," https://www.bk.admin.ch/ch/f/pore/rf/cr/2021/20212080.html, 검색일자: 2022. 3. 17.

371) ch.ch., "Comment lancer un référendum facultatif au plan national?," https://www.ch.ch/fr/votations-et-elections/referendums/lancement-d-un-referendum-facultatif/ 검색일자: 2022. 3. 17.

372) Hoke, William, "Switzerland's 'Lex Netflix' Tax Law Survives Referendum," *Tax Notes International*, 106(8), 2022. 5. 23., p. 1084.

373) 스위스 연방문화청, "Le peuple dit ≪ oui ≫ à la révision de la loi sur le cinéma(영화법 개정에 국민 '찬성')," https://www.bak.admin.ch/bak/fr/home/creation-culturelle/cinema/referendum-aenderung-filmgesetz.html, 검색일자: 2022. 6. 27.

▶ 모금액은 스위스 영화제작을 위해 사용될 예정임[374]

↘ 또한, 유럽에서 제작된 콘텐츠가 스위스 내 스트리밍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의 30% 이상을 차지해야 함

▶ EU의 2018년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지침(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을 좇아 자국법에 반영함

– 한편, EU 회원국은 의무적으로 2020년 9월까지 동 조항을 자국법에 반영해야 했으며, 스위스는 EU 회원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항을 입법화함

↘ 한편, 유럽 국가들의 '넷플릭스세' 법안 등은 디지털서비스세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디지털 경제의 과세 협정에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375]

▶ OECD/G20 디지털 경제의 과세 협정(Pillar 1)에 참가하는 국가들은 기존 디지털 서비스세 및 이와 유사한 과세는 폐지하기로 약속했으며, 추후에도 도입하지 않기로 약속한 바 있음[376]

▶ 2022년 2월 Tax Notes International에서 국제세금개발센터(ITCD)의 관계자는 덴마크의 넷플릭스세 및 유럽 국가들의 유사한 법안이 필라1 협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음을 언급한 바 있음

– 덴마크 정부는 지난 2월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자의 수익에 5%의 세금(넷플릭스세)을 도입할 것을 발표하였으며, 포르투갈, 폴란드에서도 이와 유사한 법안이 존재함

374) 스위스 제작 영화는 제작진과 출연진의 총 인원 중 최소 50%가 스위스인으로 구성된 영화를 말함

375) Johnston, Stephanie Soong, "EU Streaming Levies Aren't Digital Taxes, Official Says," *Tax Notes International*, 105(8), 2022. 4. 21., p. 926.

376)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 제13차 총회(2021. 10. 8.) 필라 1 최종 합의사항 내용에 따름

8 포르투갈

가.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세에 대한 세부정보 발표

[조세동향 22-01호]

- 포르투갈은 2022년 1월 5일, 음식 포장으로 발생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또는 알루미늄 포장용기와 이들의 복합포장용기에 대해 부과하는 신설 세금인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세에 대한 세부 정보를 발표함[377]
  - 해당 세금은 EU 지침 2019/904에 따라 2017년 12월 11일 법률 제152-D호/2017로 처음 도입되었으며, 2020년 10월 14일 법률 제86호/2020에 의해 일부 수정됨[378], [379]

- 다음 유형의 음식 포장의 경우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세 적용범위에서 제외됨
  - 판매 장소에서 포장하지 않은 포장음식이 담긴 일회용 포장용기
  - 주로 앉아서 식사하지 않는 레스토랑(즉석식품 판매장) 또는 음료판매장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일회용 포장용기
  - 자동판매기를 통해 제공되는 포장음식의 일회용 포장용기

- 다음의 경우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세 적용범위에서 제외됨
  - 과세 대상자가 수출하는 경우
  - 과세 대상자 또는 그를 대신하는 제3자가 다른 EU 회원국으로 발송하거나 운송하는 경우
  - 아조레스(Azores) 및 마데이라(Madeira) 자치구로 발송하거나 운송하는 경우

377) IBFD, "Portugal Publishes Details on New Levy on Single-Use Plastic and Aluminium Packages," 2022. 1. 5.,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1-05_pt_1.html, 검색일자: 2022. 1. 20.

378) 일회용 플라스틱 세금은 일회용 포장용기 소비의 지속적인 감소 촉진과 포장용기 폐기물의 양을 줄이면서 순환 경제로의 전환에 대한 국가 환경 정책 목표를 추구하고, 보다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재사용 시스템을 도입할 목적으로 신설됨

379) CMS, "Plastics and Packaging Laws in Portugal," https://cms.law/en/int/expert-guides/plastics-and-packaging-laws/portugal, 검색일자: 2022. 1. 20.

▶ 사회연대기관에서 식사 기부 또는 음식 분배 등 사회적 또는 인도주의적 맥락에서 사용되는 경우

-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세는 제품가격에 포함되어 최종 소비자가 납부하며, 해당 세금은 청구서에 명시되어야 함

- 일회용 플라스틱 및 플라스틱을 포함하는 복합포장용기의 경우 2022년 7월 1일부터, 일회용 알루미늄 포장용기 및 알루미늄을 포함하는 복합포장용기의 경우 2023년 1월 1일부터 세금이 부과됨

나. 이전가격 및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합의제도 관련 규칙 개정

[조세동향 22-03호]

- 포르투갈 정부는 2022년 3월 2일 이전가격 규칙과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합의제도(Advance Pricing Agreement, 이하 APA)와 관련한 규칙을 개정함[380], [381]

  ▶ 포르투갈의 기존 이전가격 규칙은 제정 후 20여년이 경과하였으며, 현장에서 얻은 경험을 고려하여 국제 수준에서의 발전 동향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정됨

  ▶ APA와 관련한 규칙 역시 10년 만에 개정되는 것으로, 납세자에게 법적 확실성과 보장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새로운 이전가격 규칙은 OECD와 EU의 이전가격 포럼(Joint Transfer Pricing Forum)에서 협의된 내용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작성됨

  ▶ TP 문서는 국제 권고사항에 준하여 납세자의 기록이 마스터 파일과 로컬 파일의 이중구조로 마련되고 유지되어야 함

  ▶ 로컬 파일 작성 의무 면제조건이 되는 상한액이 증가하고 납세자의 연간소득액과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액을 모두 고려함

  – 연소득 1천만유로 미만인 납세자는 로컬 파일을 작성하지 않아도 됨

380) News IBFD, "Portugal-Portugal Enacts New Transfer Pricing Rules," 2022. 3. 2.,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2-03-02_pt_2, 검색일자: 2022. 3. 28.

381) News IBFD, "Portugal – Portugal Enacts New Rules on Advance Pricing Agreements," 2022. 3. 2.,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2-03-02_pt_3, 검색일자: 2022. 3. 28.

- 연소득 1천만유로 이상인 경우에도 각 시장 가치를 감안하여 연소득 금액이 한 건당 10만유로, 총 50만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로컬 파일을 작성하지 않아도 됨
- 포르투갈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납세자가 상기한 로컬 파일 작성 의무에서 면제되지 않는 경우 TP 정책을 설명하는 '간소화 파일'을 준비하고 보관해야 함

▶ 국제적 권고에 따라 비용 분담 협정, 그룹 내 서비스, 무형 자산 거래 및 구조조정 운영에 대한 정상가격원칙(arm's length principle) 적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상호합의절차(Mutual Agreement Procedure: MAP) 개시와 관련한 요건과 규칙을 마련함

▶ 납세자의 가치 사슬 참여에 대한 정보의 공개와 관련하여 국제 권고사항에 근거한 정교한 규칙이 도입됨

- 공개되는 정보에는 각 그룹 구성원이 수행한 활동과 그룹의 가치사슬 내 지위에 대한 증빙이 포함되며, 수행된 핵심 기능이나 위험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간주되는 주요 자산에 대해서도 고려함

▶ 새로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됨

- 단, 로컬 파일 준비와 관련되는 규정은 여기에서 제외됨

↘ 개정된 APA 규칙은 독립성을 보장하는 정상가격원칙에 따라 관련 당사자 간의 거래에서 이전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을 수립하고, 양자 또는 다자간 APA 적용 시 이중과세를 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제안된 APA 기한 전 예비 평가에 대한 서면 요청을 제출하는 3개월 기한이 도입됨

▶ APA 적용 최대 기간이 4개 과세연도로 증가하며, 해당 과세연도에서 확인된 관련 사실과 상황이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납기일로부터 2개 과세연도가 지나지 않은 경우 이전 과세연도도 포함될 수 있음

▶ APA를 통해 이미 세금신고서를 제출한 기존 과세연도에 대해 납세자의 과세 대상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 상대 세무 당국과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해당 조정은 대체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여 이루어져야 함

▶ 소규모 또는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납세자가 APA의 체결, 갱신 또는 검토에 지불하는 수수료는 포르투갈 법률에 따라 25% 할인됨

- 기업규모는 제안된 APA를 적용하기 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 매출액을 반영하며, 해당 항목 부재 시 다음 12개월간의 예상 매출액으로 산출함

▶ '대규모 납세자 단위'의 경우 APA 적용의 후속 조치 및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예비 평가, 제안된 APA의 분석 및 초안 최종 결정의 준비 시 책임자의 역할을 함

- 또한 양자 및 다자간 APA에 위기가 발생할 경우 국제 협력 관련 과세 관청은 '대규모 납세자 단위'와 협업하여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음

▶ 또한 이전가격 규칙과 마찬가지로 각 그룹 구성원이 수행한 활동 등 납세자의 가치 사슬 참여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데 중점을 둠

다. 신규 개인소득세 규정 도입

[조세동향 22-06호]

↘ 포르투갈은 2022년 5월 27일 2022년 국가 예산을 최종 승인함에 따라 새로운 개인소득세 규정이 도입됨[382]

▶ 개인소득세 관련 조치 외에도 법인세와 관련하여 2022년 하반기에 형성된 특정 유형자산, 비소모성 생물학적 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취득에 대한 비용공제를 허용하고, 산업재산권의 일시적 사용 또는 판매로 인한 소득공제율을 인상함[383]

▶ 또한 재산양도세의 과세 대상범위가 확대되고 과세표준이 상향되는 등 과세액 평가 기준에 변화가 있었으며,[384] 부가가치세 면제 및 감면세율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도 이루어짐[385]

↘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소득구간이 7개에서 9개로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존의 구간이 분화되고 세율이 변화한 구간이 발생함

382) IBFD, "Portugal Introduces New Personal Income Tax Rules Following Approval of 2022 State Budget,"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2-06-02_pt_1, 검색일자: 2022. 6. 20.

383) IBFD, "Portugal Introduces New Tax Credit to Support Recovery of Companies, Confirms Patent Box Regime Changes,"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2-06-02_pt_2, 검색일자: 2022. 7. 4.

384) IBFD, "Portuguese Budget Offers Mix of Heavier and Lighter Property Tax Rule Changes,"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2-06-03_pt_2, 검색일자: 2022. 7. 4.

385) IBFD, "Portuguese Budget Eases VAT Rules While Aggravating Other Indirect Taxes,"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2-06-03_pt_1,검색일자: 2022. 7. 4.

▶ 기존 28.5%의 세율이 적용되던 세 번째 구간이 2개로 분화되고 상한액이 2만 322유로[386]에서 1만 9,696유로[387]로 낮아졌으며, 각 구간에 26.5%와 28.5%의 세율이 적용됨

▶ 기존 45%의 세율이 적용되던 여섯 번째 구간도 2개로 분화되고 상한액이 7만 5,009유로[388]로 낮아졌으며, 각 구간에 43.5%와 45%의 세율이 적용됨

– 이에 따라 48%의 세율이 적용되던 과세표준 최대 구간 역시 8만 882유로[389]에서 7만 5,009유로로 낮아짐

〈표 2-II-5〉 2022년 포르투갈 개인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개편 내용

기존[1]				개편[2]			
과세표준		세율 (%)	누진공제액 (유로)	과세표준		세율 (%)	누진공제액 (유로)
1	7,112유로까지	14.5	0	1	7,116유로까지	14.5	0
2	7,112유로 초과 10,723유로까지	23	604.54	2	7,116유로 초과 10,736유로까지	23	604.86
3	10,732유로 초과 20,322유로까지	28.5	1,194.80	3	10,736유로 초과 15,216유로까지	26.5	980.63
				4	15,216유로 초과 19,696유로까지	28.5	1,284.99
4	20,322유로 초과 25,075유로까지	35	2,515.63	5	19,696유로 초과 25,076유로까지	35	2,565.21
5	25,075유로 초과 36,967유로까지	37	3,017.27	6	25,076유로 초과 36,757유로까지	37	3,066.79
6	36,967유로 초과 80,882유로까지	45	5,974.54	7	36,757유로 초과 48,033유로까지	43.5	5,455.84
				8	48,033유로 초과 75,009유로까지	45	6,176.56
7	80,882유로 초과	48	8,401.21	9	75,009유로 초과	48	8,426.51

자료: 1) PwC, Portugal – Individual – "Taxes on personal income," https://taxsummaries.pwc.com/portugal/individual/taxes-on-personal-income, 검색일자: 2022. 6. 20.
2) IBFD, "Portugal Introduces New Personal Income Tax Rules Following Approval of 2022 State Budget,"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2-06-02_pt_1, 검색일자: 2022. 6. 20.

386) 2022년 6월 2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772만원임
387) 2022년 6월 2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687만원임
388) 2022년 6월 2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233만원임
389) 2022년 6월 2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1,034만원임

↘ 부양가족의 범위가 축소되고, 공제한도는 증가함

▶ 가계를 담당하는 납세자 중 어느 한 사람의 보호를 받으며, 연간 수입이 납세자의 최저 월급보다 높지 않은 만 25세 이하인 자에 한해 세액공제 목적의 부양가족으로 인정됨

▶ 두 번째 부양가족부터는 첫 번째 부양가족의 연령에 관계없이 1~3세는 최대 300유로,[390] 4~6세는 최대 150유로[391]로 공제액이 증가함

↘ 주식 등 부동산 외 자산 매각으로 인한 자본이득에 대해 납세자의 잔여소득 합산과 누진세율 인상, 양도차익금액 평가와 관련한 선입선출(FIFO) 규칙을 적용하는 등 동산 매각에 대해 보다 엄격한 규정이 적용됨

▶ 2023년 1월 1일부터 주식 및 기타 동산 매각 시 발생하는 자본이득을 납세자의 잔여소득과 합산하여 계산하며,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납세자에게는 기존의 28%[392]에서 인상된 48%의 누진세가 부과됨

- 자산의 매각 전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며, 해당 자본이득을 포함한 납세자의 총과세소득이 7만 5,009유로[393] 이상인 경우 누진세율이 적용됨

▶ 양도차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둘 이상의 신용기관 또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선입선출(FIFO) 규칙이 적용됨

- 이때 동산 거래에 관여하는 신용기관 및 금융기관은 매각 시 각각의 금액, 취득일, 취득가액 및 매도액 등의 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다음 해 1월 20일까지 납세자에게 전달해야 함
- 취득일 및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매각 전 2년간 확인된 가장 낮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함
- 기부를 통해 인지세가 면제된 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가는 기부 전 최대 2년 이내에 인지세 목적으로 고려되었을 때의 가치에 부합해야 함

↘ 특정 영업으로 인한 자본손실은 향후 5년 이내에 획득하는 자본이득에서 공제할 수 있음

390) 2022년 6월 2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0만 9,260원임
391) 2022년 6월 2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0만 4,630원임
392) 조세피난처에 상장된 경우 35%였음
393) 2022년 6월 2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233만원임

▶ 이때 특정 영업에는 ① 주식 및 기타 동산의 매각, ② 양도인이 원 소유자가 아닌 상업, 산업 또는 과학 분야로부터 획득한 지식재산 또는 경험의 매각, ③ 파생금융상품의 운용, ④ 자율신주인수권(autonomous warrants)의 운용, ⑤ 자금을 수령할 권리를 증빙할 수 있는 특정 기초자산의 운용, ⑥ 과세부담이 큰 신용장의 양도 및 추납 등이 포함됨

↘ 청년근로자 특별세제와 과거 조세 목적 거주자였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세제가 확대됨

▶ 중등교육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을 이수한 후 2022년 이후부터 일을 시작한 18~26세 청년근로자는 근로 및 자영업 소득에 대한 부분 비과세 혜택을 선택할 수 있음

- 본 혜택은 첫 근로 후 5년간 적용되며, 박사과정을 마친 자는 28세까지 선택 기한이 연장됨
- 부분 비과세 혜택은 첫 2년간 받은 소득의 30%와 이후 2년간 받은 소득의 20% 그리고 마지막 1년간 받은 소득의 10%[394]에 적용됨
- 원천징수 세율을 결정할 때에는 비과세 부분을 포함한 소득 전액을 고려하고, 실제 원천징수 시에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 과세함
- 2020~2021년에 이미 다른 혜택이 부여된 납세자의 경우 남은 기간 동안 이 새로운 규정의 적용을 선택할 수 있음

▶ 현재 2019년에서 2020년 사이 포르투갈에 귀국한 일부 과세 목적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근로 및 자영업 소득의 50%에 대한 부분적 비과세 혜택을 2021~2023년 귀국자에게까지 확대함

- 비과세 혜택은 ① 이전 3년간 포르투갈의 과세 목적 거주자로 간주되지 않고, ② 앞서 언급한 3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까지는 포르투갈의 과세 목적 거주자였던, ③ 세무상의 문제가 없는 자에게 5년간 적용됨
- 원천징수세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소득에 부과됨
- 비거주자 과세제도와 중복 혜택이 허용되지 않으며, 2021년 귀국하여 비거주자 과세제도 등록을 요청한 자의 경우 2021년 개인소득세 신고서에 표시하여 본 세제혜택을 적용받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음

↘ 이밖에도 환경 친화적이라고 판단되는 특정 상품 및 서비스의 취득과 관련한 비용으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중 일부에 대해 세액공제를 도입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 부여함

394) 마지막 1년간의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의 경우 상한액이 존재함

9 벨기에

가. 특정 직업군에 대한 소득세·부가가치세 고정세율 폐지

[조세동향 22-01호]

↘ 벨기에 재무부는 2022년 1월 14일, 특정 소규모 개인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적용되던 고정세율 제도를 2028년 1월 1일부터 폐지할 예정이라고 발표함[395]

▶ 기존에 고정세율 제도가 적용되던 납세자는 폐지될 때까지 계속해서 제도를 적용할 수 있으나, 신규 납세자는 해당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음

- 새롭게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된 납세자는 2022년 1월 1일부터 과세관청 및 관련 직업군의 협의를 통한 고정 과세표준 적용 예외의 방식으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정할 수 없음
-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일반 조세제도 또는 소규모 기업 조세제도가 적용되는 납세자는 2022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고정세율 제도를 선택할 수 없음

▶ 해당 소규모 개인 납세자는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소득세는 2022년부터(2021년도 소득), 부가가치세는 2021년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고정 과세표준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 고정세율 제도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개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소규모 개인 사업자별로 고정세율을 적용하고,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고정 과세표준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적용 예외를 허용하는 것을 의미함[396]

▶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소규모 개인 사업자를 유형화하여 고정세율을 적용함

395) Service Public Fédéral FINANCES, "SUPPRESSION DE RÉGLEMENTATIONS FORFAITAIRES TANT EN MATIÈRE DE TVA QUE D'IMPÔTS SUR LES REVENUS," https://finances.belgium.be/fr/Actualites/suppression-reglementations-forfaitaires-tva-isr-2022-01-14, 검색일자: 2022. 1. 24.; IBFD, "Belgium Abolishes Flat-Rate Income and VAT Regimes for Certain Professions," 2022. 1. 20.,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1-20_be_2.html, 검색일자: 2022. 1. 24.

396) Service Public Fédéral FINANCES, "RÉGIME FORFAITAIRE," https://finances.belgium.be/fr/entreprises/tva/assujettissement-tva/regime-forfaitaire#q1, 검색일자: 2022. 2. 11.

- 적용 대상은 연매출이 75만유로[397] 미만이고 송장 발행이 거래액의 최대 25%인 소규모 개인 사업자임
- 해당 소규모 개인 사업자는 정육점, 제과제빵사, 바리스타, 헤어 디자이너, 구두 수선인, 우유 배달원, 식품소매상, 노점 상인, 신문 판매인, 섬유 및 가죽 제품 상인, 제약사 등임
- 부가가치세율은 재화에 따라 21%, 12%, 6%로 규정되어 있는데, 고정세율 제도에 따르면 소규모 개인 사업자별로 21%, 12%, 6% 중 하나의 세율이 적용되었음[398]

▶ 특정 소규모 개인 사업자의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은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 직업군과의 협의를 통하여 고정 과세표준의 예외를 허용하였음

나. 개인 소득세 및 기타 세법 수정안 발표

[조세동향 22-03호]

↘ 벨기에 정부는 2022년 2월 25일, 2022년도 개인 소득세 관련 수정안을 발표하여 개인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하는 등 일부를 조정함[399]

▶ 2022년도 개인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400]을 상향 조정함

▶ 개인 소득세 대상이 되는 납세자의 기본 과세표준 면제금액 또한 9,050유로[401]에서 9,270유로[402]로 인상됨

- 개인 소득세 대상이 되는 모든 납세자는 과세표준 구간 산정 시 소득의 일부가 면제됨[403]

397) 2022년 2월 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0억 2,618만원임

398) my MINFIN, "Table des matières-Règlementation forfaitaire en matière de TVA-2020," https://eservices.minfin.fgov.be/myminfin-web/pages/fisconet/document/68aa4c0e-7eb5-4ebe-a90f-2fb95c1c3135, 검색일자: 2022. 2. 11.

399) IBFD, "Belgium Amends Personal Income Tax Brackets," 2022. 2. 25.,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2-25_be_2.html, 검색일자: 2022. 3. 21.; ejustice, "Service Public Federal Finances," https://www.ejustice.just.fgov.be/cgi/article_body.pl?language=fr&pub_date=2022-02-25&caller=summary&numac=2022040081, 검색일자: 2022. 3. 21.

400) 벨기에 「소득세법」 제130조

401) 2022년 4월 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204만원임

402) 2022년 4월 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233만원임

〈표 2-II-6〉 벨기에 개인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변동

(단위: 유로[1])

세율	과세표준	
	2021년도	2022년도
25%	13,540 미만	13,870 미만
40%	13,540~23,900	13,870~24,480
45%	23,901~41,360	24,481~42,370
50%	41,360 초과	42,370 초과

주: 1) 2022년 4월 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1유로는 약 1,329.748원임
자료: Service Public Fédèral FINANCES, "Taux," https://finances.belgium.be/fr/particuliers/declaration_impot/taux-revenus-imposables/taux#q1, 검색일자: 2022. 4. 5.

↘ 개인사업자 및 기업에 대하여 투자소득 공제액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무기한 이월을 허용하고, 직원 고용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 개인사업자의 배우자 배분 최대 금액 및 기부금 공제금액을 정함

▶ 투자소득 공제 미사용 금액은 무기한 이월 가능하고, R&D 세액공제 선택 기업은 투자소득 공제 대상은 될 수 없으나, 미사용 금액은 무기한 이월 가능함

- 투자소득 공제 미사용 금액은 무기한 이월 가능하며, 최대 이월 금액은 105만 9,270유로[404]임
- 투자 금액의 33.99%의 R&D 세액공제를 선택한 기업은 R&D 활동에 사용된 자산과 관련해서는 투자소득 공제 대상이 되지 않으나, 투자소득 공제 미사용 금액은 최대 52만 9,640유로[405]까지 무기한 이월 가능함

▶ 11인 미만의 직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직원을 추가 고용할 때마다 직원 1인당 소득에서 6,360유로[406]가 공제되며, 관리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1만 7,090유로[407]임

▶ 혼인 또는 법적 동거의 경우 공동으로 개인소득세가 과세되나 과세소득은 배우자별로 산정하고, 과세소득 산정 시[408] 일정한 경우 배우자에게 배분 가능한 최대 금액을 정함[409]

403) 벨기에 「소득세법」 제131조; Service Public Fédèral FINANCES, "Taux," https://finances.belgium.be/fr/particuliers/declaration_impot/taux-revenus-imposables/taux#q1, 검색일자: 2022. 4. 5.
404) 2022년 4월 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4억 940만원임
405) 2022년 4월 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7억 470만원임
406) 2022년 4월 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846만원임
407) 2022년 4월 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273만원임
408) 벨기에 「소득세법」 제126조

- 개인사업자의 경우 그 사업을 돕는 배우자(협력배우자)가 있는 경우 협력배우자에게 사업소득의 30% 한도로 배분 가능하고,[410] 배분받을 수 있는 협력배우자 자신의 소득은 1만 4,860유로[411] 이하이어야 함
- 배우자 일방의 소득이 부부 총 소득의 30% 미만인 경우 그 소득을 일방에게 배분 가능하고 배분받은 후 일방의 소득이 총 소득의 30%를 넘어서는 안 되며,[412] 최대 금액은 1만 1,450유로[413]임

▶ 40유로[414] 이상의 기부금은 소득에서 기부 1회당 최대 39만 2,200유로[415] 공제 가능함

10 룩셈부르크

가. DAC7 관련 법안 의회 제출

[조세동향 22-06호]

룩셈부르크 정부는 2022년 6월 13일, DAC7 관련 법안을 의회에 제출함[416]

▶ DAC7 지침은 EU 내외에 위치한 디지털 플랫폼 운영자에게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정보 수집·확인·보고 의무를 부여하고, EU 회원국에 관련 정보 교환을 강제함[417]

409) IBFD, "Individual Income Tax," https://research.ibfd.org/#/doc?url=/collections/ita/html/ita_be_s_001.html, 검색일자: 2022. 4. 11.

410) 벨기에 「소득세법」 제86조

411) 2022년 4월 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977만원임

412) 벨기에 「소득세법」 제87조 및 제88조

413) 2022년 4월 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523만원임

414) 2022년 4월 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만원임

415) 2022년 4월 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억 2,169만원임

416) Chambre des députés du grand-duché de luxembourg, "N 8029, Session ordinaire 2021-2022," https://www.chd.lu/wps/PA_RoleDesAffaires/FTSByteServingServletImpl?path=0FE98F97FB01089180231E197D501E5F430D0D7CF61A918A3E77D1CF7A12AC666C52070C7AFE6D9831A0CBCFAD4B3113$53A7FCCC07685F57D7BAAFEBE7B39991, 검색일자: 2022. 6. 21.; IBFD, "Government Submits DAC7 Bill for Parliamentary Approval," 2022. 6. 16.,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6-16_lu_1.html, 검색일자: 2022. 6. 21.

417) IBFD, "European Union Introduces New Reporting Obligations for Digital Platforms and

- 적법 절차 원칙에 따른 정보 수집 및 확인 의무
-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플랫폼을 사용하는 판매자들에 대한 정보보고 의무

▶ 법안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협동조사(joint audit) 관련 조항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11 그리스

가. 공동 예금 및 투자 계좌에 대한 상속세 면제 도입

[조세동향 22-04호]

↘ 그리스 정부는 2022년 3월, 국내 또는 국외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동소유 예금 및 투자계좌의 소유자에 대한 상속세 면제 관련 규정을 제정함[418]

▶ 본 규정은 배우자가 공동으로 보유한 뮤추얼 펀드의 은행계좌 및 주식에 대한 상속세 법안 개정을 촉구한 EU 집행위원회 공식 통지와 관련한 조치임

↘ 2022년 3월 28일 이후 납세 의무가 발생한 상속건에 대해, 공동계좌 소유자의 거주지와 관계없이 상속세 면제가 이루어짐

▶ 공동 소유의 예금계좌 또는 투자계좌에 보유된 자금을 공동계좌 소유자 중 한명이 사망한 경우 생존 소유자가 자동으로 수령한다는 조건하에 상속세 면제가 적용됨

▶ 그리스와 조세지원협정이나 다자간 권한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 보유된 현금 예금과 계좌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됨

Other Amendments to the Exchange of Information (DAC7)-Details," 2021. 3. 24.,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1-03-24_e2_1%23tns_2021-03-24_e2_1, 검색일자: 2022. 6. 29.

418) IBFD, "Greece - Greece Introduces Inheritance Tax Exemption for Joint Depositary Bank Accounts and Investment Accounts,"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2-03-30_gr_1, 검색일자: 2022. 4. 25.

나. 사업 개편에 대한 소득세 면제 도입 법안 제안

[조세동향 22-05호]

- 그리스 정부는 2022년 5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자가 사업 개편 후 설립한 신규 회사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30%의 소득세 면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제안함[419]
  - 대상이 되는 기업 및 사업체는 위원회 규정(Commission Regulation) No. 651/2014 부록 I의 제2조에 따라 정의된 영세 및 중소기업임
  - 사업 개편에 참여한 기업 또는 개인사업자들의 최근 3년간 총 평균매출은 최근 3년간 평균매출이 가장 높은 기업 또는 개인사업자의 평균매출의 최소 150% 이상이어야 함
  - 개편 결과로 설립된 신규 회사의 매출은 내부거래를 제외하고 37만 5천유로[420] 이상이어야 함
    - 이때 매출액은 최종 승인 및 발표된 재무제표의 매출 또는 전환된 기업 또는 개인사업자의 최종 소득세 신고서의 매출 합계로 계산함
  - 9명 이상의 상근 직원을 고용해야 하며, 이 밖에도 특정 조건에서 신규 회사의 고정자산을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면제를 규정함

- 해당 면제는 사업 개편이 완료된 날이나 협력이 개시된 날, 또는 개인 사업자가 소유권을 이전한 날의 다음 해로부터 최대 9년간 적용됨[421]
  - 총 세제혜택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50만유로,[422] 협력체의 경우 개인당 12만 5천유로[423]로 제한됨

419) News IBFD, "Greece Proposes 30% Tax Exemption for Certain Business Reorganizations (18 May 2022),"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2-05-18_gr_2, 검색일자: 2022. 5. 20.

420) 2022년 5월 3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억 9,962만원임

421) Orbitax, "Greek Parliament Considering 30% Tax Exemption for SME Reorganizations," 2022. 5. 20., https://www.orbitax.com/news/archive.php/Greek-Parliament-Considering-3-49884, 검색일자: 2022. 5. 30.

422) 2022년 5월 3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억 6,599만원임

423) 2022년 5월 3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6,646만원임

12 네덜란드

가. 원천징수와 관련한 이중과세방지협정 시행규칙 발표

[조세동향 22-01호]

- 네덜란드 정부는 2021년 12월 22일, 이중과세방지협정(Double Tax Agreements: DTAs)에 따른 이자 및 로열티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 면제 등의 조건을 명시한 시행규칙을 발표함[424]
  - ▶ 네덜란드는 2021년부터 저세율국으로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이자 및 로열티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Wet bronbelasting 2021)를 도입한 바 있음[425]
    - 2021 원천징수법안에 따라 적용되는 원천징수 세율은 25%임
  - ▶ 다만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 관련 조항의 시행을 위하여 세부 조건에 관한 시행규칙을 발표함[426]
  - ▶ 시행규칙은 고시된 관보 발행일의 다음 날인 2021년 12월 23일부터 발효됨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세무당국에 원천징수 면제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 원천징수의무자의 법인명, 주소, 설립 장소 및 기업 등록번호(Rechtspersonen en Samenwerkingsverbanden Identificatie Nummer: RSIN)
  - ▶ 소득을 지급받는 비거주법인의 법인명, 주소 및 설립 장소
  - ▶ 해당되는 경우, 비거주법인의 고정사업장에 대한 이자 및 로열티 소득의 귀속에 대한 정보

---

424) News IBFD, "Netherlands Publishes Regulations for Refunds, Exemptions for Interest and Royalty WHT Under DTAs," 2021. 12. 27.,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12-27_nl_7.html, 검색일자: 2022. 1. 21.

425) 네덜란드 상원, "Wet bronbelasting 2021," https://www.eerstekamer.nl/wetsvoorstel/35305_wet_bronbelasting_2021, 검색일자: 2022. 1. 21.

426) 네덜란드 정부, "Wet bronbelasting 2021. Nederlandse uitvoeringsvoorschriften inzake belastingverdragen vastgesteld ten behoeve van het interestartikel en het royaltyartikel," https://zoek.officielebekendmakingen.nl/stcrt-2021-48054.html, 검색일자: 2022. 1. 21.

- 다자간 협정(Multilateral Instrument: MLI) 제10(1)조, (2)조, (3)조 또는 OECD 모델협약 제29(8)조와 유사한 효력을 갖는 조약조항의 적용에 관한 정보
- 비거주자법인이 거주자인 조약 상대국에 지급한 이자 및 로열티 소득에 대한 송금과 관련된 정보 등
- 위에서 언급되진 않았지만 조세조약에서 관련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언급된 기타 세부 정보

↘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된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이 지급된 해의 다음 달 말일까지 비거주법인에 지급한 이자 및 로열티 총액에 대한 개요를 제공해야 함

- 개요에는 해당 법인의 법인명, 주소, 거주 국가 및 지급일자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조세조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 의무자에 의하여 이미 이자 또는 로열티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가 징수된 비거주법인은 네덜란드 세무당국에 원천징수세의 환급을 요청할 수 있음

- 조세조약상 요건을 충족한 원천징수세액의 모든 환급세액은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지급됨

나. 암호화폐 관련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처리 지침 발표

[조세동향 22-02호]

↘ 네덜란드 정부는 2021년 12월 19일, 암호화폐 결제에 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처리 지침을 발표함[427]

- 기업이 지급한 암호화폐 및 기업들이 지급받은 암호화폐에 대한 세무처리를 명확히 하는 다양한 문서를 발표하였음
  - 암호화폐 결제 거래의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 및 면제 대상 해당 여부와 암호화폐 평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발표함

427) News IBFD, "Netherlands Sheds Light on VAT and Income Tax Aspects of Cryptocurrency," 2022. 1. 24.,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1-24_nl_1.html, 검색일자: 2022. 2. 24.

- (부가가치세 관련 지침) 암호화폐 결제와 관련된 거래의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 및 면제 대상 해당 여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발표함
  - 서비스 거래의 대가나 교환 거래에서 교환차익의 대가를 법률상 강제통용력이 부여된 법정 통화로서 비트코인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428]
  - 기업이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의 대가를 비트코인으로 지급받은 것은 부가가치세법상의 거래이지만, 거래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거나 면제될 수 있음
    - 다만, 지불 거래의 맥락상 비트코인의 이전 자체는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 거래가 아님
  - 유로로 디지털 지갑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갑 제공자의 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채굴자 등(miner/delver)의 블록 디코딩[429]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 거래가 아님
    - 다만, 거래 수수료에 대하여 miner/delver가 해당 거래를 검사 및 확인하는 행위는 블록 디코딩과 달리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 거래이지만 부가가치세는 면제됨

- (소득세 관련 지침) 암호화폐 평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발표함
  - 주식 자격을 갖춘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후입선출법 적용이 가능함
  - 대법원이 정한 교환 원칙(ruilarresten)은 거래자가 암호화폐로 벌어들인 수익이나 거래 입찰을 통하여 암호화폐 거래로 벌어들인 수익에는 사용할 수 없음
    - 교환 원칙은 새로 매입한 사업자산이 매각자산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할 경우에 적용되며, 이 경우 신규매입자산의 장부금액은 처분이익만큼 감소함
  - 기업이 암호화폐공개(Initial Coin Offering: ICO)에서 이익을 얻은 경우, 이러한 이익은 세무조사관이 결정하는 범위 내에서 부채항목(passiefpost)으로 기록됨으로써 부분적으로 이연 가능함

428) 네덜란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금융거래 면제 조항

429) 블록 디코딩은 부호화(encoding)된 정보를 부호(code)화되기 전으로 되돌리는 처리방식으로, 암호화와 반대의 의미를 가짐

다. DAC7 법안 의회 제출

[조세동향 22-03호]

- 네덜란드 정부는 2022년 3월 23일, EU의 강제정보보고 행정협력지침 개정안(DAC7)을 국내 법제화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함[430]
  - EU는 2020년 11월 21일 DAC7 합의를 도출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각국의 내국법령으로 제정되어야 할 것을 명시하였으며,[431] 이에 따라 네덜란드 정부는 법제화 후 2023년 1월 1일부터 관련 법안을 시행할 예정임

- 2021년 개정안은(2021/514)(DAC7)은 2011년 행정협력지침(2011/16/EU)에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새로운 보고 의무를 추가한 것으로, 각 회원국은 디지털 플랫폼을 사용하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 확인 및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가짐[432]
  - 보고의무가 있는 플랫폼 운영자는 회원국에 세금 목적상 거주하는 거주자 개인 및 법인, 회원국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자 및 EU에서 특정 활동을 수행하는 비EU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를 포함함
    - 비EU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에도 EU 내 운영을 위해 단일 회원국에 플랫폼을 등록하고, 플랫폼을 통하여 얻은 수입 정보를 세무당국에 보고해야 함[433]
  - 보고 대상 활동은 국경에 관계없이 플랫폼을 통한 부동산 임대, 상품의 판매, 서비스의 제공 및 모든 운송 수단의 임대를 포함하며, 판매자의 불필요한 이행비용을 줄이기 위해 적용면제 기준이 존재함

430) News IBFD, "Government Submits DAC7 Bill for Parliamentary Approval," 2022. 3. 24.,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3-24_nl_1.html, 검색일자: 2022. 3. 28.

43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20-12호」, "EU-DAC7 관련 합의 도출 및 DAC8 작업 착수," 2020.

432) News IBFD, "European Union Introduces New Reporting Obligations for Digital Platforms and Other Amendments to the Exchange of Information (DAC7)-Details," 2021. 3. 24.,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1-03-24_e2_1%23tns_2021-03-24_e2_1, 검색일자: 2022. 3. 28.

43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21-3호」, "EU-EU 행정협력지침 개정안(DAC7) 유럽의회 승인," 2021.

- 호텔 체인 또는 여행사와 같이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하는 판매자는 임대 목록 당 일정한 임대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고의무가 부여되며, 정부기관 및 상장기관에는 해당 면제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 보고 대상 정보는 이용 가능하고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할 수 있는 모든 정보로, 회원국 세무당국에 자동으로 전달해야 해야 함[434]

- 보고 대상 정보는 판매자의 납세자 식별번호(TIN), 주소, 플랫폼 관련 총 수입, 플랫폼에서 원천징수하거나 부과한 모든 수수료 및 세금, 부동산 임대의 경우 보고기간 동안의 부동산 목록 및 임대 일수 등의 정보 등을 포함함[435]
- 특히, 이동성이 높은 기본자산으로서 로열티 등과 같이 지식재산에서 파생된 소득과 관련된 정보 등이 주 보고 대상임

13 스웨덴

가. 소비세법 개정안 발표

[조세동향 22-06호]

스웨덴 정부는 2022년 5월 25일, 주류세 및 담배세를 인상하기로 결정함[436]

▶ 세수입 증대 및 국민보건을 위한 수요를 교정할 목적으로 2단계에 걸쳐 인상안을 시행할 계획이며, 개정안은 2023년 1월 1일 및 2024년 1월 1일에 발효될 예정임

(주류세) 2017년 이후 첫 세금 인상으로, 맥주와 와인에 대한 소비세를 5%p 이상 인상하기로 결정함[437]

434) 상동

435) EUR-Lex, "COUNCIL DIRECTIVE (EU) 2021/514,"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2021L0514, 검색일자: 2022. 4. 8.

436) News IBFD, "Sweden to Increase Excise Duties on Alcohol and Tobacco," 2022. 5. 27.,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5-27_se_1.html, 검색일자: 2022. 6. 20.

437) 스웨덴정부, "Regeringen har beslutat om förslag på höjda skatter på alkohol och tobak,"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2/05/regeringen-har-beslutat-om-forslag-pa-hojda-skatter-pa-alkohol-och-tobak/, 검색일자: 2022. 6. 20.

- 맥주와 와인에 대해서 2023년에 5%p, 2024년에 8%p의 소비세를 인상할 계획임
- 기타 주류에 대해서는 2023년에 1%p, 2024년에 추가 1%p의 소비세를 인상할 계획임

(담배세) 담배세는 소비자물가지수 변화에 따라 매년 재계산되며,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소비자물가지수에 추가 세율을 부과하기로 결정함

- 담배에 대해서 2023년에 3%p, 2024년에 추가 1%p의 소비세를 인상할 계획임
- 전자액체 및 기타 니코틴 함유 제품에 대하여 2024년에 1%p 소비세를 인상할 계획임

14 덴마크

가. 통근비용 소득공제 및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한도 인상

[조세동향 22-05호]

덴마크 세무위원회(Skatterådet)는 2022년 4월 26일, 통근비용 소득공제 및 종업원이 업무수행 목적으로 본인 소유차량을 이용하고 지급받은 보조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인상하기로 결정함[438]

- 휘발유 가격 상승에 따른 지원책으로, 통근비용 소득공제액 상향 조항은 2022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며,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한도 인상 조항은 2022년 5월 1일부터 적용됨

(통근비용) 현행 법에서는 통근거리가 24km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거리에 대해 소득공제를 허용하며, 2022년 1월 1일부터 1km당 소득공제액을 상향 조정함

- 직원의 출퇴근거리가 24km 초과 120km 이하인 경우 1km당 공제액을 기존 1.98덴마크크로네[439]에서 2.16덴마크크로네[440]로 0.18덴마크크로네 인상함

438) News IBFD, "Denmark Increases Tax Deduction for Commuters and Tax-Free Allowance for Driving One's Own Car for Business Reasons," 2022. 4. 28.,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4-28_dk_1.html, 검색일자: 2022. 5. 19.

- 직원의 출퇴근거리가 120km를 초과하는 경우 1km당 공제액을 기존 0.99덴마크크로네[441]에서 1.08덴마크크로네[442]로 0.09덴마크크로네 인상함

↘ (자기차량운전보조금) 현행 법에서는 종업원 소유차량을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경우 1km당 일정 금액의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비과세 조정액을 인상함

- 업무수행에 이용한 거리가 연간 2만km 미만인 경우, 1km당 비과세 적용 금액을 기존 3.51덴마크크로네[443]에서 3.70덴마크크로네[444]로 0.19덴마크크로네 인상함
- 업무수행에 이용한 거리가 연간 2만km를 초과하는 경우, 1km당 비과세 적용금액을 기존 1.98덴마크크로네[445]에서 2.17덴마크크로네[446]로 0.19덴마크크로네 인상함
- 종업원 소유차량이 자전거, 오토바이 또는 전기 스쿠터일 경우의 비과세 한도는 기존 1km당 0.55덴마크크로네[447]에서 0.57덴마크크로네[448]로 0.02덴마크크로네 인상함

439) 2022년 5월 1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55원임
440) 2022년 5월 1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87원임
441) 2022년 5월 1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77원임
442) 2022년 5월 1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93원임
443) 2022년 5월 1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30원임
444) 2022년 5월 1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64원임
445) 2022년 5월 1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55원임
446) 2022년 5월 1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89원임
447) 2022년 5월 1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99원임
448) 2022년 5월 1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02원임

15 핀란드

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원천징수에 대한 추가 지침 발표

[조세동향 22-04호]

- 핀란드 세무당국은 2022년 4월 8일,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배당, 이자 및 로열티 소득의 원천징수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함[449]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현행 과세규정을 요약하는 업데이트된 지침으로, 제한납세 의무자 및 원천징수 절차 등의 내용이 포함됨

- (납세의무자) 비거주자는 조세조약 등에 따라 원천징수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핀란드 국내원천소득인 배당, 이자, 로열티소득에 대하여 제한납세 의무를 가짐[450]
  - 원천징수법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조세절차법(1558/1995, VML)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자는 사전징수 의무를 가짐
  - 완납적 원천징수가 아니므로 기 납부세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할 경우 납세의무자가 원천징수세의 환급을 요청할 수 있음

- (예외사항) 원천징수세 면제 조항은 별도로 열거하고 있으며, 이자소득의 경우 제한적으로 적용됨
  - 수취인이 EEA 가입국 거주자인 경우 및 핀란드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는 원

449) News IBFD, "Tax Administration Issues Guidance on Administrative Obligations Imposed on Payer of Dividends, Interest and Royalties Paid to Non-Residents," 2022. 4. 12.,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4-12_fi_1.html, 검색일자: 2022. 4. 21.

450) 핀란드 세무당국, "Lähdeveron periminen osingosta, korosta ja rojaltista sekä suorituksen maksajan velvoll isuudet," https://www.vero.fi/syventavat-vero-ohjeet/ohje-hakusivu/108027/l%C3%A4hdeveron-periminen-osingosta-korosta-ja-rojaltista-sek%C3%A4-suorituksen-maksajan-velvollisuudet/?utm_source=Nro%2024%20-%20Rajoitetusti%20verovelvolliset%20ja%20l%C3%A4hdeveron%20periminen%20%2F%20Rajoitetusti%20verovelvollisen%20osingot,%20korot%20ja%20rojaltit%20%2F%20Tilap%C3%A4ist%C3%A4%20suojelua%20hakeneella%20oikeus%20heti%20ty%C3%B6ntekoon&utm_medium=email&utm_campaign=#5-verovastuu, 검색일자: 2022. 4. 21.

천징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수취인이 핀란드와 조세조약 체결국인 경우 조세조약이 선 적용됨

- (원천징수 및 신고) 비거주자 개인인 경우 30%, 비거주자 법인인 경우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며, 세금신고서 등에 원천징수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 ▶ 배당금의 경우 OmaVero[451]에 전자제출하거나 세금신고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자 및 로열티 소득의 경우 소득정보시스템에 관한 법률(laki tulotietojärjestelmästä)에 따라, 소득대장(Tulorekisteriin)에 신고하여야 함

16 오스트리아

가.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세제 대응 방안 공개

[조세동향 22-03호]

- 오스트리아 정부는 2022년 3월 21일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납세자의 경제 부담을 완화하고자 약 20억유로 규모의 추가 세제 지원 방안을 공개함[452]
  - ▶ 오스트리아는 천연가스 사용량의 80%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음[453]
  - ▶ 과거 오스트리아 정부는 17억유로 규모의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지원정책을 시행한 바 있으나, 인플레이션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20억유로 규모의 지원안을 추가로 발표하는 것임

451) 핀란드 세무당국의 전자신고 시스템을 의미함

452) IBFD, "Austria Increases Lump-sum Deduction of Commuting Expenses to Tackle Soaring Electricity Prices,"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3-23_at_1.html, 검색일자: 2022. 4. 1.

453) BLOOMBERGTAX, "Austria Increases Energy Subsidies to Offset High Gas Prices," https://news.bloombergtax.com/daily-tax-report/austria-increases-energy-subsidies-to-offset-high-gas-prices, 검색일자: 2022. 4. 4.

- 2023년 6월 30일까지 통근수당 공제한도를 50% 인상하고, 특정 에너지세 90% 감면 및 법인의 일부 세금납부를 연기하는 등의 조치를 포함하고 있음[454]
  - 통근수당(Pendlerpauschale)의 공제한도를 50% 인상하고, 대중교통 요금 인하 및 서비스를 확장하기로 함
  - 천연가스세 및 전기세를 약 90% 감면하기로 함
  - 법인의 선납세금 납부를 연기함으로써 유동성을 지원하고자 함
  - 러시아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자 총 2억 5천만유로 상당의 풍력 및 태양광 프로젝트의 투자 지원책이 포함됨

454) 오스트리아 재무부, "Energiepaket: Bundesregierung entlastet Bevölkerung und Wirtschaft um weitere 2 Milliarden Euro," https://www.bmf.gv.at/presse/pressemeldungen/2022/maerz/energiepaket.html, 검색일자: 2022. 4. 5.

Ⅲ 아시아/오세아니아

1 일본

가. 후쿠시마 지진 피해 주류업자 대상 주류세 환급

[조세동향 22-03호]

일본 국세청은 2022년 3월 16일 발생한 후쿠시마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류업자를 대상으로 피해 주류와 관련한 세액 환급 관련 구제 조치를 발표함[455]

- 해당 구제 조치는 「재해 피해자에 대한 조세의 감면, 징수 유예 등에 관한 법률」에 기초한 조치로서 판매를 위해 소지하고 있던 주류가 지진에 의해 피해(용기의 파손에 의한 주류의 유출 등)를 입은 경우 관련 주류세액을 환급하는 내용임
  - 해당되는 주류의 판매업자는 주류 도매업자 및 주류 소매업자와 요식업자를 포함함
  - 피해를 입은 주류 판매업자는 소재지의 소관 세무서장으로부터 피해 주류에 관한 확인서를 받은 뒤 주류 구입처의 주류 판매업자를 통해 주류 제조자에게 제출하고, 주류 제조자가 확인서에 근거하여 주세 환급 신고를 한 후 세무서로부터 환급받은 주세 상당액을 주류 판매업자를 통해 피해를 입은 주류의 판매업자에게 지급되는 방식임
- 피해 주류 세액이 500엔[456] 미만인 경우 환급을 지급받을 수 없으며, 보험금 등으로 손실이 보전된 경우 보전된 금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환급함
  - 주류업자가 복수의 사업장을 가진 경우 복수의 사업장의 피해 주류에 관련된 세액을 합하여 환급 요건을 판단함

455) 国税庁, 「福島県沖を震源とする地震により被害を受けた酒類業者の皆様へ」,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saigai/r3/0021002-091/index.htm, 검색일자: 2022. 3. 24.

456) 2022년 3월 2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022원임

2 중국

가. 개인 및 외국인 거주자의 소득세 관련 세제혜택 연장 발표

[조세동향 22-01호]

↘ 중국 국세청은 2021년 12월 29일, 개인 거주자의 소득세 관련 세제혜택 연장을 발표함[457]

▶ 연간 일시불 상여금(year-end bonuses) 소득의 분리과세를 2021년 말에서 2023년 말까지 연장함

- 연간 일시불 상여금 소득을 12개월로 나눠 얻은 액수에 월 환산 세율표에 따라 확정한 세율과 누진공제액을 적용하여 단독으로 개인소득세를 계산 및 납부할 수 있음[458]

▶ 개인 거주자 소득세 면제 세제혜택을 2021년 말에서 2023년 말까지 연장함

- 납세자의 연간 종합소득[459]이 12만위안[460]을 초과하지 않고, 세금신고 후 납부할 세액이 400위안[461]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또한, 중국 국세청은 2021년 12월 31일에 외국인 거주자의 소득세 관련 세제혜택 연장도 발표함[462]

457) IBFD, "China Extends Several Individual Income Tax Incentives," 2021. 12. 30.,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12-30_cn_1.html, 검색일자: 2022. 1. 24.

458) 국세청, 『재중 납세자가 알아야 할 한·중 세금상식』, 2020. 5., p. 112.

459) 종합소득이란, 임금·급여(개인이 임직 또는 고용으로 취득한 임금, 급여, 상금, 연말 보너스, 근로배당이익, 보조금, 수당 및 임직, 고용과 관련한 기타 소득), 노무보수(개인이 각종 비고용 노무에 종사하여 취득한 소득을 말하는데, 설계, 장식, 광고, 전시, 중개서비스, 기타 노무 등), 원고료(개인이 작품을 도서, 신문, 정기간행물 형식으로 출판, 발표하여 취득한 소득), 특허권사용료(개인이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비특허기술 및 기타 특허의 사용권을 제공하고 취득한 소득) 등 4개 항목 소득의 합을 말함(국세청, 『재중 납세자가 알아야 할 한·중 세금상식』, 2020. 5., pp. 104~106)

460) 2022년 1월 2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264만원임

461) 2022년 1월 2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7만원임

462) IBFD, "China Continues Tax Treatment of Benefits in Kind for Foreign Individuals," 2022. 1. 4.,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1-04_cn_1.html, 검색일자: 2022. 1. 24.

▶ 적격 외국인 거주자가 중국에서 근무하면서 획득한 각종 수당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2021년 말에서 2023년 말까지 연장함

– 각종 수당에 대한 비과세혜택을 받으려면 관련 유효 증빙문건을 소득세 신고 시 과세관청에 제출해야 함

〈표 2-Ⅲ-1〉 적격 외국인 거주자 비과세혜택 항목

구분	비과세 대상	비고
1	생계 보조	외국국적 직원이 식대, 세탁비용 등 명목으로 수령한 수당
2	거주 보조	외국국적 직원이 주택 등 거주비용, 이사비용 등 명목으로 수령한 수당
3	교육 보조	외국국적 직원 본인의 언어교육비 또는 직계 자녀 교육을 위해 수령한 수당
4	중국 경내 혹은 해외 출장비용	출장 시 교통·숙박 등의 명목으로 수령한 수당
5	고국 방문 비용	외국 국적 직원 본인의 고국 방문 시 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수령한 수당

자료: 국세청, 『재중 납세자가 알아야 할 한·중 세금상식』, 2020. 5., p. 107의 내용을 저자 정리

나. 세제혜택 연장 발표

[조세동향 22-02호]

↘ 중국 국세청은 2022년 1월 29일, 세제혜택 연장 관련 고시[2022] No. 4를 발표함[463]

▶ 환경보호, 기술개발, 코로나19 예방 등과 관련된 세제혜택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됨[464]

▶ 환경보호에 사용되는 기기를 유지 또는 보수하는 사업에 1년 이상 종사한 중국 내 거주기업에 대해 기업소득세율을 25%에서 15%로 10%p 감면함[465]

463) IBFD, "Ministry of Finance and State Taxation Administration Confirm Extension of Various Tax Incentives," 2022. 1. 31.,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1-31_cn_1.html, 검색일자: 2022. 2. 25.

464) IBFD, "China Extends Various Tax Incentives," 2022. 1. 25.,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1-25_cn_1.html, 검색일자: 2022. 2. 25.

▶ 기술개발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기업 및 개인 투자자는 투자액의 최대 7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함

– 소득공제 세제혜택이 적용되는 적격 기업은 직원 수 300명 미만, 투자 당시 자산과 연간매출이 5천만위안[46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467]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용역을 제공하는 의료진, 근로자 등이 받는 추가 수당(extra allowances), 보너스 등을 비과세함

▶ 대학 사이언스 파크(university science park), 혁신 플랫폼(innovation platform) 등의 기관 및 기업에서 제공하는 스타트업 육성(start-up incubators and incubation) 서비스에 증치세를 비과세함

▶ ① 기관 및 기업이 스타트업 육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하는 건물 및 토지, ② 전통시장 및 농산물 도매점이 사용하는 건물 및 토지, ③ 전략물자(strategic commodities) 보관에 종사하는 기업의 건물 및 토지 등에 주택재산세(house property tax)와 성진토지사용세(urban land use tax)[468]를 비과세함

▶ 버스 정류장 등과 같이 공공장소로 사용되는 토지에 성진토지사용세를 비과세함

▶ 대학 기숙사 건물 및 토지에 주택재산세와 임대계약의 인지세를 비과세함

다. 2022년 예산안 발표

[조세동향 22-03호]

중국 재무부와 국세청은 2022년 2월 18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정책이 포함된 예산안을 발표함[469]

465) 중국 국세청, 「财政部 税务总局 国家发展改革委 生态环境部关于从事污染防治的第三方企业所得税政策问题的公告」, http://www.chinatax.gov.cn/chinatax/n810341/n810825/c101434/c25913858/content.html, 검색일자: 2022. 3. 17.

466) 2022년 2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95억 2,150원임

467) IBFD, "China Extends Employee and Assets Condition for Technology Start-Ups Incentives," 2022. 2. 22.,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2-22_cn_1.html, 검색일자: 2022. 2. 25.

468) 성진토지사용세란, 도시의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하여 도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 토지등급 차이로 인한 수입 조절, 토지사용 효율 제고 및 토지관리 강화를 위하여 징수하는 조세를 말함(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21-04호」, "중국 - 국가경제사회발전 5개년(2021~2025년)계획 세부지침 발표," https://www.kipf.re.kr/kor/Trend/InterTrends/kiTrend/Overseas/view.do, 검색일자: 2022. 2. 25.)

▶ 제13차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CPPCC)[470]에서 2021년 3월 4일에 발표한 제14차 국가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471]을 따른 것으로 산업고도화 및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함임

▶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정책 외에도 친환경차량 구매 및 충전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험료의 기업 기여금 단계적 인하, 차량선박세 등 지방세 감면 등의 세제정책도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세부 내용은 추후 발표할 예정임

↘ 영세기업[472]의 세부담 감소를 위해 과세표준의 일정 비율을 비과세하는 세제혜택을 기존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473]

▶ 연간 과세소득이 100만위안[474] 이상 300만위안[475] 미만인 영세기업은 과세표준의 75%를 비과세하여 실효세율은 5%임

- 기존에는 연간 과세소득이 100만위안 이상 300만위안 미만인 영세기업 과세표준의 50%를 비과세하여 실효세율이 10%였으나, 이번 세제혜택에서 과세표준의 비과세 비율을 높임

▶ 연간 과세소득이 100만위안 미만인 영세기업의 실효세율 2.5%는 그대로 유지함

- 이외의 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은 기존 25%임

469) IBFD, "China Announces Fiscal and Non-fiscal Measures to Promote Economic Growth,"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2-25_cn_1.html, 검색일자: 2022. 3. 24.

470) Chinese People's Political Consultative Conference의 줄임말임

471) The State Council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hina's top political advisory body starts annual session," http://english.www.gov.cn/news/topnews/202103/05/content_WS60416b72c6d0719374af9fc0.html, 검색일자: 2022. 3. 24.

472) 연간 과세소득이 300만위안 미만, 종업원 수 300명 미만, 자산 총액 5천만위안 미만을 충족할 경우 영세기업에 해당됨

473) IBFD, "China Further Reduces Tax Burden for Small, Low-Profit Enterprises," 2022. 3. 21.,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3-21_cn_1.html, 검색일자: 2022. 3. 24.

474) 2022년 3월 2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9,107만원임

475) 2022년 3월 2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억 7,300만원임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476]이 2022년에 취득한 기계 및 장치가 500만위안[477]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상각 또는 가속상각(accelerated depreciation)이 가능함[478]
  - ▶ 기준내용연수가 3년인 경우 취득가액을 즉시상각할 수 있음
  - ▶ 기준내용연수가 4년, 5년, 10년인 경우 취득가액의 50%를 첫해에 가속상각하고 나머지 취득가액에 대해서는 내용연수에 따라 정액법, 정률법 등을 적용할 수 있음
  - ▶ 즉시상각 또는 가속상각으로 결손금이 발생할 경우 5년 동안 이월공제할 수 있음

- 제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의 중간예납액 납부유예를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함[479]
  - ▶ 제조업 관련 중소기업이 월별 또는 분기별로 나누어 중간예납하는 것에 상관없이, 2021년 4분기(10~12월)에 납부해야 하는 중간예납액을 기존 3개월에서 최대 9개월까지 납부유예할 수 있음
    - 이는 중국 국세청이 2021년 11월 1일에 발표한 고시 [2021] No.30의 보완책으로 월 또는 분기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중국 국세청에 법인세예납신고표를 제출하고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비세 등의 중간예납 유예를 신청하면 됨[480]
  - ▶ 또한 2022년 1분기와 2분기의 중간예납액도 최대 6개월까지 납부유예가 가능함
  - ▶ 연간 매출액이 2천만위안[481] 미만인 기업은 중간예납액 전액을 납부유예할 수 있으나, 연간 매출액이 2천만위안 이상 4억위안[482] 미만인 기업은 중간예납액의 최대 50%까지만 납부유예할 수 있음

476) 일정 요건은 ① 정보통신업, 건축업, 임대업, 상업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 중 연간 매출액 10억위안 이하이거나, 자산총액 12억위안 이하이거나, 직원 수가 2천명 이하인 경우, ② 부동산 개발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 중 연간 매출액 20억위안 이하이거나, 자산총액 1억위안 이하인 경우, ③ ①과 ②번 업종 외에 종사하는 중소기업 중 연간 매출액 4억위안 이하이거나 직원 수 1천명 이하인 경우 등임(2022년 4월 5일 기준 1위안은 190.65원임)

477) 2022년 3월 2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9억 5,365원임

478) IBFD, "China Publishes Detailed Rules on One-Off Deduction and Accelerated Depreciation of Equipment and Tools by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2022. 3. 7.,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3-07_cn_1.html, 검색일자: 2022. 3. 24.

479) IBFD, "China Extends Period of Deferral of Tax Payments for Small and Medium-Sized Manufacturing Enterprises," 2022. 3. 2.,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3-02_cn_1.html, 검색일자: 2022. 3. 24.

48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21-11호」, "중국-제조업 관련 중소기업 중간예납액 납부유예 발표," 2021. 12. 14., https://www.kipf.re.kr/viewer/default/doc.html?fn=FILE_000000023234Ac1_0&rs=/viewer/result/kiTrend/202112///, 검색일자: 2022. 3. 24.

481) 2022년 3월 2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8억 2,320만원임

482) 2022년 3월 2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764억 6,400만원임

라. 보육비 소득공제 신설

[조세동향 22-04호]

중국 국세청은 2022년 3월 29일, 부가항목 공제에 포함되는 보육비(childcare expenses) 소득공제를 신설함[483]

▶ 개인소득세 납세의무자가 3살 이하 자녀의 보육에 지출한 비용은 매달 1천위안[484] 한도로 소득공제할 수 있음

- 3살 이하 자녀를 보육하는 부모 둘 다 소득이 있을 경우 보육비 소득공제를 균등하게 안분하거나 한 쪽에서 일괄공제도 가능함
- 보육비 소득공제는 고시 [2022] No. 8에서 발표되었으며, 2022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됨

마.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세제혜택 공개

[조세동향 22-05호]

중국 국무원(The Chinese State Council)은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으로 인한 피해를 상쇄하고자 계속적인 세제혜택 등을 공개하고 있음

▶ 중국 국무원은 2022년 4월 27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결정함[485]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움에 처한 적격기업[486]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최대

483) IBFD, "China Introduces Tax Deduction for Childcare," 2022. 3. 29.,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3-29_cn_1.html, 검색일자: 2022. 4. 20.

484) 2022년 5월 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8만 9,610원임

485) Bloomberg Tax, "China Cabinet Announces Relief Measures for SMEs, VAT Exemption for Delivery Services Due to Coronavirus (Corrected)," 2022. 5. 3., https://www.bloombergtax.com/product/tax/bloombergtaxnews/daily-tax-report/X33BU03O000000?bc=W1siU2VhcmNoIFJlc3VsdHMiLCIvcHJvZHVjdC90YXgvc2VhcmNoL3Jlc3VsdHMvMDFlYjQ0MTY2YjExYzFmN2MyYjkzYzE3ZTg4ZTlmOWYiXV0-6403e91230bc539c11f7e70f683b031dd15e7a41, 검색일자: 2022. 6. 1.

486) 적격기업은 ① 농업 및 식품 가공업, ② 섬유 및 의류업, ③ 인쇄 및 기록업, ④ 의약품 제조업, ⑤ 화학 섬유 제조업, ⑥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⑦ 일반 장비 제조업, ⑧ 자동차 제조업, ⑨ 철도·해운·항공 및 기타 운송 장비 제조업, ⑩ 악기 제조업, ⑪ 문화·예술업, ⑫ 관광업, ⑬ 운송업 등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임(IBFD, "More Industry Sectors Eligible for Deferral of Social Security Payments," 2022. 6. 1.,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

1년간 연금부담금 및 고용·산재부담금 납부 유예를 연장할 수 있음[487]

-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직원을 해고하지 않았거나, 전체 직원의 10% 이하의 직원을 해고한 중소기업의 실업보험세액 환급액을 기존 60%에서 최대 90%까지 30%p 증액함(대기업의 경우 기존 30%에서 최대 50%까지 20%p 증액함)[488]
- 기업이 2022년 말까지 신규 채용자(대학교 졸업생 등)를 고용하고 실업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1인당 최대 1,500위안[489]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음[490]

▶ 같은 날 중국 국무원은 국내·외 적격 운송용역(Delivery Services)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를 결정함

- 뒤이어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2022년 4월 29일, 생활필수품에 대한 운송용역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2022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면제하는 지침을 공개함[491]
- 이와 동시에 석탄 관련 제품(coal product) 수입 시 최혜국 대우로 3~6%로 부과되던 관세를 5월 중에 0%로 일시적으로 인하함[492]

---

ns_2022-06-01_cn_2.html, 검색일자: 2022. 6. 9.)

487) IBFD, "More Industry Sectors Eligible for Deferral of Social Security Payments," 2022. 6. 1.,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6-01_cn_2.html, 검색일자: 2022. 6. 9.

488) IBFD, "More Industry Sectors Eligible for Deferral of Social Security Payments," 2022. 6. 1.,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6-01_cn_2.html, 검색일자: 2022. 6. 9.; Bloomberg, "China Offers Incentives to Services Firms to Retain Jobs," 2022. 2. 18.,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2-02-18/china-offers-incentives-to-services-firms-to-retain-jobs, 검색일자: 2022. 6. 9.

489) 2022년 6월 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8만원임

490) IBFD, "More Industry Sectors Eligible for Deferral of Social Security Payments," 2022. 6. 1.,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6-01_cn_2.html, 검색일자: 2022. 6. 9.

491) IBFD, "China Implements VAT Exemption for Delivery Services," 2022. 5. 3.,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5-03_cn_1.html, 검색일자: 2022. 6. 1.; IBFD, "COVID-19 Pandemic: China Temporarily Suspends Coal Import Tariffs, VAT on Express Delivery Services," 2022. 4. 29.,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4-29_cn_1.html, 검색일자: 2022. 6. 1.

492) Bloomberg Tax, "China to Exempt VAT for Courier Services From May 1 to Dec. 31," 2022. 4. 29., 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bloombergtaxnews/daily-tax-report/XAMVQF1S000000?-W1siU2VhcmNoIFJlc3VsdHMiLCIvcHJvZHVjdC90YXgvc2VhcmNoL3Jlc3VsdHMvMDFlYjQ0MTY2YjExYzFmN2MyYjkzYzE3ZTg4ZTlmOWYiXV--6403e91230bc539c11f7e70f683b031dd15e7a41, 검색일자: 2022. 6. 1.

▶ 향후 기업들에 대한 추가적인 조세혜택 및 차량취득세 감면 등 경기부양책을 실시하여 총 1,400억위안[493] 이상의 추가적인 세제혜택을 제공할 예정임[494]

바. 차량구치세 감면 발표

[조세동향 22-06호]

중국 재무부는 2022년 5월 31일, 코로나19로 인한 봉쇄·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침체된 신차구매 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해 차량구치세(车辆购置税)[495] 감면을 발표함[496]

▶ 중국은 2015~2016년 두 차례 차량구치세 감면을 실시했는데, 이때 총 520만대의 신차구매 효과가 나타났음[497]

– 이번 차량구치세 감면으로 250만대 이상의 신차구매 수요를 창출해 2천억위안[498] 이상의 소비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493) 2022년 6월 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6조 372억원임

494) Bloomberg Tax, "China Rolls Out New Stimulus Measures as Covid Pressures Economy," 2022. 5. 24., 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bloombergtaxnews/daily-tax-report/X5GIS7GK000000?bc=W1siU2VhcmNoIFJlc3VsdHMiLCIvcHJvZHVjdC90YXgvc2VhcmNoL3Jlc3VsdHMvMDFlYjQ0MTY2YjExYzFmN2MyYjkzYzE3ZTg4ZTlmOWYiXV0-6403e91230bc539c11f7e70f683b031dd15e7a41, 검색일자: 2022. 6. 1.

495) 차량구치세란, 중국 국내에서 규정된 차량의 구매에 대해서 징수하는 세목으로 행위세에 속하며, 중국 국세청에서 징수 및 관리하고 그 수입은 중앙정부에 귀속되어 교통사업 건설 등에 사용됨(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제도-중국편』, 2009, pp. 278~282)

496) Bloomberg Tax, "China Considers More Electric-Car Tax Exemptions; EV Shares Jump," 2022. 6. 23., 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bloombergtaxnews/daily-tax-report/X72D5VPO000000?bc=W1siU2VhcmNoICYgQnJvd3NlIiwiaHR0cHM6Ly93d3cuYmxvb21iZXJnbGF3LmNvbS9wcm9kdWN0L3RheC9zZWFyY2gvcmVzdWx0cy80MTNiNzlmYWM3MjE3OGQ0MzhhYWY1NDYyZmUxOGI5OCJdXQ-54c2dbb894f1853eb2ec7c300e78133edbf67b64&criteria_id=413b79fac72178d438aaf5462fe18b98&search32=CocN1QmdTuosGjqBvnerLQ%3D%3DHkPNtf0FIgH4lmRGxBJnsBNfZtTZc-AKObrVwoiWbw8GurG_dg29TfBh-z9aDpbETnQGC4Siy4IFKPeyQGMOurS8CVaX99pWLqMMsKXzuuXze4gKmd2CZgTmrx2dcwVdoGy168ojgAuZnY-pKtVFN8XZbZTpDuIrO2JIDZvd_ocqGUpFk5XJi1xlU_49k40w, 검색일자: 2022. 6. 29.

497) Bloomberg Tax, "China Automakers Join Government With Incentives to Boost Sales," 2022. 6. 2., 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document/RCTUO6T1UM0W, 검색일자: 2022. 6. 29.

498) 2022년 6월 2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8조 4,980억원임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차량 구매 시에만 차량구치세를 절반으로 감면함[499]
  - 기존에는 옵션 등을 포함한 최종 구매가액의 10%를 차량구치세로 부과했지만, 이번 발표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차량을 2022년 6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사이에 구매할 경우 5%의 차량구치세가 적용됨
  - 일정 요건은 ①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구매가격이 30만위안[500] 미만, ② 2.0리터 이하의 소형엔진 또는 저공해(low-emission)엔진을 장착, ③ 9인승 이하 등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승용차임

3 인도

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세 등 신고기한 추가 연장

[조세동향 22-01호]

- 인도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소득세 등의 신고와 관련한 어려움을 고려하여 신고기한을 연장함[501]
  - 인도 CBDT(Central Board of Direct Taxes)는 코로나19로 인해 납세자와 이해관계자가 보고하는 어려움을 고려하여 평가연도(AY) 2021/22의 소득세 신고를 포함한 특정 세금신고 및 보고서의 제출 마감일을 연장함
  - 2021/22 회계기간에 대한 소득세 신고서의 경우 2021년 10월 31일 마감 분은 2022년 3월 15일까지 추가 연장(이전에는 2021년 11월 30일로 연장, 이후 2022년 2월 15일로 연장), 2021년 11월 30일 마감 분은 2022년 3월 15일까지 추가 연장(이전에는 2021년 12월 31로 연장, 이후에는 2022년 2월 28일로 연장)

499) IBFD, "China to Halve Purchase Tax on Small-Engine Vehicles," 2022. 6. 1.,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6-01_cn_1.html, 검색일자: 2022. 6. 22.

500) 2022년 6월 2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775만원임

501) IBFD, "COVID-19 Pandemic: India Further Extends Various Compliance Deadlines,"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1-14_in_1.html, 검색일자: 2022. 1. 20.

▶ 전년도 2020/21 회계기간의 감사 보고서의 경우 2021년 9월 30일까지 제출기한인 감사 보고서의 경우 2022년 2월 15일까지 제출기한이 추가 연장되었으며(이전에는 2021년 10월 31일로 연장, 이후 2022년 1월 15일로 연장), 2021년 10월 31일까지 제출기한인 감사 보고서의 경우 2022년 2월 15일까지 제출기한이 연장됨

▶ 2021년 10월 31일에 마감되는 2020/21 회계기간에 대한 국제거래 또는 특정 국내거래를 입력하는 사람에 대한 회계사의 보고서의 경우 2022년 2월 15일까지 추가 연장됨(이전에는 2021년 11월 30일로 연장, 이후 2022년 1월 31일로 연장)

나. 2022년 예산안 발표

[조세동향 22-02호]

↘ 인도 정부는 가상 디지털 관련 세제 및 코로나19 관련 보조금 관련 세제 개정안 등이 포함된 예산안을 발표함[502]

▶ 과세 대상 가산 디지털 자산(VDA)에는 암호화 자산,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 기타 디지털 자산(외환 관리법에 따른 통화 제외) 및 VDA 관련 선물이 포함되며 양도차익은 30%의 세율로 과세되고 취득원가만 공제 가능함

- VDA 양도와 관련된 손실의 상계는 과세소득을 계산할 때 공제로 허용되지 않음

▶ 예산안 내용 중 재무 법안 개정의 내용으로 범죄로 인해 발생한 지출 및 그 범죄를 복합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지출이 총 소득을 계산할 때 공제로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의 섹션 37(1)에 새로운 설명을 삽입함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수령한 보조금은 2020년 4월 이후 소득에서 제외됨

- 자신 또는 가족을 위해 코로나19 치료에 소요된 비용 또는 고용주로부터 받은 모든 금액
- 고용주로부터 피고용인의 사망에 의해 피고용인의 가족이 받는 모든 금액
- 고용관계 외의 타인으로부터 사망자의 가족 구성원이 받는 100만루피[503] 이하의 모든 금액

502) IBFD, "India Presents Union Budget 2022 – Summary,"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2-04_in_1.html, 검색일자: 2022. 2. 28.

503) 2022년 3월 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591만원임

다. 물가 안정을 위한 유류세 등 지원 강화

[조세동향 22-06호]

- 인도 재무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인해 발생한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휘발유 및 경유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인하함[504]
  - 휘발유는 1리터당 8인도루피[505]를, 경유는 1리터당 6인도루피[506]를 인하함
    - 이러한 유류세 인하로 인도정부는 연간 1조인도루피[507]에 달하는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함
  - 인도는 앞선 2021년 11월에 소비 증진과 물가 상승을 완화하기 위해 한 차례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유류세를 인하함
    - 당시에는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는 1리터당 5인도루피,[508] 경유는 1리터당 10인도루피[509]를 인하함

- 또한, 인도 정부는 현지 시장수요에 대한 원자재 비용을 줄이기 위해 무연탄, PCI 석탄 및 코킹 석탄에 대한 수입관세를 폐지함[510]

504) Kiarra M. Strocko, "India Clarifies Income Tax Exemption For Investment Funds," taxnotes international Volume 106, Number 9, p. 1183.

505) 2022년 06월 1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32.32원임

506) 2022년 06월 1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99.24원임

507) 2022년 06월 1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6조 5,404억 8,765만원임

508) 2021년 11월 1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79.3원임

509) 2021년 11월 1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58.6원임

510) Reuters, "Indian government trims tax on fuel, essential commodities to fight inflation," https://www.reuters.com/world/india/indian-government-trims-tax-fuel-fight-inflation-2022-05-21/, 검색일자: 2022. 6. 15.

4 싱가포르

가. 2022년 예산안 발표

[조세동향 22-02호]

○ 싱가포르 재무부는 2022년 2월 18일, 국제조세·개인소득세·부가가치세·재산세·탄소세·기타조세 등의 내용이 포함된 2022년 예산안을 발표함[511]

▶ 싱가포르에서 활동하는 연결 매출액 7억 5천만유로[512] 이상의 다국적 기업그룹을 대상으로 OECD BEPS 2.0 프로젝트 필라2 최저한세(15%) 도입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며, 세부적인 실행지침은 추후 발표할 계획임

▶ 2023년부터 적용될 개인소득세(Individual Income Tax) 과세표준 최고구간을 신설하고, 최고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을 인상함

– 비거주자의 경우 기존과 같이 과세표준에 15%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방법과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법 중 더 높은 세액이 산출되는 방법으로 계산하여 신고해야 함

511) IBFD, “Singapore Raises Top Marginal Individual Income Tax Rate and Mulls Minimum Effective Tax Rate in Budget 2022,” 2022. 2. 18.,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2-18_sg_1.html, 검색일자: 2022. 2. 25.; Bloomberg Tax, “Singapore MOF Presents 2022 Budget Speech,” 2022. 2. 24., https://www.bloombergtax.com/product/tax/bloombergtaxnews/daily-tax-report/XCJKHLQK000000?bc=W1siU2VhcmNoIFJlc3VsdHMiLCIvcHJvZHVjdC90YXgvc2VhcmNoL3Jlc3VsdHMvYzhmYzFlYmY4ZjBkY2QzOTUyNDk3OTBkZjY4NTgzMTMiXV0-544ecc95816d16373a84fe0d3af4c7d701a5ec18&search32=6LoKxYIHQceImPjCoBy7Vg%3D%3DvY5tpC9A2sG8jtrsEAlqV0n9PREq1FyYS1pczyKqIToA9kJmcKOCrBsh6ZE0USL4D8ksOANlNt_oJDQnLanFB1TH5yJEUk3JSB4ghHU5aYD9Ikci9EfLEhjn_T_53D9Yhwwkvj8gvck0K1XNiKn1FFQMS_B4wIIidzKlq_OW40zXRFXHL6Q8h8zQI0w1AEpbNTp7sf3obrKGLRYpSCAk_rgqkSAOas1YHuaEStVzwWsGtz-1Cj75HLfmS1CUTyAQUH_CB0SMtnAVSftK6wWPMA%3D%3D, 검색일자: 2022. 3. 7.; 싱가포르 국세청, “ANNEX C-2: TAX CHANGES,” https://www.mof.gov.sg/docs/librariesprovider3/budget2022/download/pdf/annexc2.pdf, 검색일자: 2022. 3. 7.

512) 2022년 2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조 91억원임

〈표 2-Ⅲ-2〉 싱가포르 개인소득세 과세표준 최고구간 신설 및 세율 인상

(단위: 싱가포르달러,[1] %)

구분	과세표준	최소세액	초과액에 대한 세율
기존	~2만 이하	0	0
	2만 초과~3만 이하	0	2
	3만 초과~4만 이하	200	3.5
	4만 초과~8만 이하	550	7
	8만 초과~12만 이하	3,350	11.5
	12만 초과~16만 이하	7,950	15
	16만 초과~20만 이하	13,950	18
	20만 초과~24만 이하	21,150	19
	24만 초과~28만 이하	28,750	19.5
	28만 초과~32만 이하	36,550	20
신설	32만 초과~50만 이하	44,550	22
	50만 초과~100만 이하	84,150	23
	100만 초과~	199,150	24

주: 1) 2022년 2월 25일 기준 1싱가포르달러는 888.8원임
자료: IRAS, "Individual Income Tax rates," https://www.iras.gov.sg/taxes/individual-income-tax/basics-of-individual-income-tax/tax-residency-and-tax-rates/individual-income-tax-rates, 검색일자: 2022. 2. 25.

▶ 싱가포르 내에서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모든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에 과세되는 부가가치세(Goods and Services Tax: GST) 세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함

- 기존 세율인 7%에서 2023년에는 8%로 1%p 인상하고, 2024년에는 9%로 기존 세율 대비 2%p 인상함

▶ 싱가포르 내 모든 주택(houses), 건물(bulidings), 토지(lands), 공동주택(tenants)에 부과되는 재산세(Property Tax) 과세표준[513] 구간을 조정하고 세율을 인상함

- 싱가포르 재산세는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Owner-occupier)와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Non-owner-occupier)에 과세표준과 세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며, 이번 예산안에서는 두 경우 모두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고 세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함

513) 싱가포르 재산세 과세표준은 재산의 연간가치(Annual Value)임

〈표 2-Ⅲ-3〉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및 세율 인상

(단위: 싱가포르달러[1])

구분	기존 과세표준	기존 세율	2023년 이후 과세표준	2023년	2024년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	~8천 이하	0	~8천 이하	0	0
	8천 초과~ 4만 7천 이하	4	8천 초과~ 2만 2천 이하	4	4
	4만 7천 초과~ 7만 이하	6	2만 2천 초과~ 4만 이하	5	6
	7만 초과~ 8만 5천 이하	8	4만 초과~ 5만 5천 이하	7	10
	8만 5천 초과~ 10만 이하	10	5만 5천 초과~ 7만 이하	10	14
	10만 초과~ 11만 5천 이하	12	7만 초과~ 8만 5천 이하	14	20
	11만 5천 초과~ 13만 이하	14	8만 5천 초과~ 10만 이하	18	26
	13만 초과~	16	10만 초과~	23	32

주: 1) 2022년 2월 25일 기준 1싱가포르달러는 888.8원임
자료: IRAS, "Property Tax Rates," https://www.iras.gov.sg/taxes/property-tax/property-owners/property-tax-rates, 검색일자: 2022. 2. 25.

〈표 2-Ⅲ-4〉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및 세율 인상

(단위: 싱가포르달러[1])

구분	기존 과세표준	기존 세율	2023년 이후 과세표준	2023년	2024년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	~3만 이하	10	~3만 이하	11	12
	3만 초과~ 4만 5천 이하	12	3만 초과~ 4만 5천 이하	16	20
	4만 5천 초과~ 6만 이하	14	4만 5천 초과~ 6만 이하	21	28
	6만 초과~ 7만 5천 이하	16	6만 초과~	27	36
	7만 5천 초과~ 9만 이하	18	삭제	삭제	삭제
	9만 초과~	20	삭제	삭제	삭제

주: 1) 2022년 2월 25일 기준 1싱가포르달러는 888.8원임
자료: IRAS, "Property Tax Rates," https://www.iras.gov.sg/taxes/property-tax/property-owners/property-tax-rates, 검색일자: 2022. 2. 25.

▶ 환경과 관련해서는 탄소세율의 점진적 인상 계획을 밝힘

– 기존 온실가스 배출량 1톤당 5싱가포르달러[514]에서 2024년까지 25싱가포르달러,[515] 2026년까지 45싱가포르달러,[516] 2030년까지 최대 80싱가포르달러[517]로 인상할 예정임

▶ 싱가포르 세법상 거주자 임차인이 비거주자 임대인과 체결한 배 또는 컨테이너 등의 리스계약에서 리스료 지급 시 원천징수세(withholding tax)를 면제함

– 운용리스(operating lease)는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금융리스(finance lease)는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한함

– 세법상 비거주자가 싱가포르에 설립한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을 통해 체결한 리스계약에는 원천징수세를 부과함

▶ 항공기 임대(8%) 및 투자 관리(10%) 등을 영위하는 기업에 기존 법인세(17%)보다 감면된 세율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함

나. GST법 개정안에 대한 공개 협의 개시

[조세동향 22-06호]

■ 싱가포르 국세청은 2022년 6월 13일, 2022년 예산안 및 정기검토 등에서 건의된 GST법 개정안에 대해 공개 협의를 개시함[518]

▶ 예산안에 포함된 GST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음[519]

– 기존 세율 7%에서 2023년에는 8%로 1%p 인상하고, 2024년에는 9%로 기존 세율 대비 2%p 인상함

514) 2022년 3월 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433원임

515) 2022년 3월 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만 2,168원임

516) 2022년 3월 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만 9,903원임

517) 2022년 3월 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7만 939원임

518) MOF, “Public Consultation on Draft Goods and Services Tax (GST) (Amendment) Bill 2022,” 2022. 6. 13., https://www.mof.gov.sg/news-publications/public-consultations/public-consultation-on-draft-goods-and-services-tax-(gst)-(amendment)-bill-2022, 검색일자: 2022. 6. 22.

519) IBFD, “Singapore Announces Details of GST Hike and Raises Property, Vehicle and Carbon Taxes in Budget 2022,” 2022. 2. 25.,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2-02-25_sg_4%23tns_2022-02-25_sg_4, 검색일자: 2022. 6. 29.

- 여객의 국제적 운송 및 관련 보험, 숙박 등의 제공 또는 예약 등 여행 관련 서비스(travel arranging services)가 계약(contractually)에 의하여 싱가포르 GST법에 등록된 개인 또는 싱가포르 국외에 소속된 개인에게 직접 혜택(directly benefit)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zero-rating)을 적용함

▶ 정기검토 등에서 건의된 비예산안에 포함된 GST법 개정안은 MTF(Missing Trader Fraud)에 대응하기 위한 제재내용 외에는 GST법을 명확화(clarity)하기 위한 내용임[520]

- MTF는 신디케이트[521]가 사용하는 사기수법으로, 판매자가 싱가포르 국세청에 GST를 지급하지 않고 환급을 요구하는 것을 말함
- 싱가포르 국세청은 MTF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형사처벌 규정을 도입할 예정임
- 새로운 형사처벌은 2단계로 구분되는데, 1단계는 세수손실(loss of public revenue)을 초래하거나 야기하는 주모자(masterminds), 공모자(conspirators) 등을 처벌하는 규정이고, 2단계는 이러한 사기수법을 실시한 사업체와 특수관계자를 처벌하는 규정임[522]

▶ 공개 협의는 2022년 6월 13일부터 7월 4일까지 실시됨

520) IBFD, "Singapore Launches Public Consultation on Proposed Amendments to Goods and Services Tax Act," 2022. 6. 16.,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6-16_sg_1.html, 검색일자: 2022. 6. 22.

521) 신디케이트(syndicate)란, 기업 독점 형태의 하나로 몇 개의 기업이 하나의 공동 판매소를 두고 가맹기업의 제품을 공동 판매 또는 공동 구입을 하는 조직을 말함

522) 1단계에서 유죄 성립 시 최고 50만싱가포르달러(2022년 6월 2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억 6,768만원임)의 벌금형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되고, 2단계에서 유죄 성립 시 최고 5만 싱가포르달러(2022년 6월 2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676만원임)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됨

5 인도네시아

가. 담배 소비세 인상

[조세동향 22-01호]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1년 12월 13일 담배제품 소비세율을 인상하는 정책을 발표함[523]

- 재무부는 담배제품 소비세율에 대해 평균 12%p, 수제 담배 소비세율의 경우 4.5%p 인상하는 정책을 발표함
  - 이러한 담배 소비세 인상은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담배가 가져오는 경제에 장기적인 손실을 예방하기 위함임[524]
  -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은 현재 담배가 쌀 소비에 이어 도시와 농촌 지역 빈곤층의 두 번째로 많은 지출이라고 밝혔고, 전체 지출에서 담배 소비는 도시가 11.9%, 농촌이 11.24%에 달하여 이 수치는 쌀 소비량보다 낮고 육류, 계란, 템페, 생선과 같은 단백질 소비량보다 훨씬 높다고 밝힘
  - 이러한 담배 소비세 인상 정책은 지역사회,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의 담배 소비 수준을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2020~2024년 국가 중기 개발 계획문서에 따르면 정부는 2024년까지 10~18세 인도네시아 어린이의 흡연율을 최소 8.7%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해당 정책은 2022년 1월 1일부터 발효됨

523) Bloomberg Tax, "Indonesia MOF Announces Excise Tax Rate Increases for Tobacco Products," 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bloombergtaxnews/daily-tax-report/BNA%200000017dbe14d91ba77fff763c080003?bna_news_filter=daily-tax-report&bc=W1siU2VhcmNoIFJlc3VsdHMiLCIvcHJvZHVjdC90YXgvc2VhcmNoL3Jlc3VsdHMvMGUwNTFlNGRiMGI3YTFiNTZhZWU0MTZhNGM0ZGEyMGIiXV0-04682fd6a500bb4f7f20f2df56a55b0041d21c2d, 검색일자: 2022. 1. 20.

524) 인도네시아 재무부, "Menkeu: Kenaikan Cukai Hasil Tembakau untuk Tingkatkan Kualitas SDM," https://www.kemenkeu.go.id/publikasi/berita/menkeu-kenaikan-cukai-hasil-tembakau-untuk-tingkatkan-kualitas-sdm/, 검색일자: 2022. 1. 20.

나. 의료부문 세금 인센티브 확대

[조세동향 22-02호]

■ 인도네시아 정부는 코로나19 전염병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의료 관련 세금 인센티브의 적용을 연장함[525]

▶ 재무부는 기존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었던 의료 관련 세금 인센티브에 대한 적용기한을 2022년 6월 30일로 연장함

- 해당 인센티브에 의해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백신 및 의약품을 생산하기 위해 제약 산업 관련자가 취득하는 백신 원료 및 의약품의 획득,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한 백신 및 약물을 구입하는 납세자, 정부 기관, 병원 및 기타 승인된 당사자가 수입 또는 취득하는 과세 대상 물품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정부가 부담함
- 소득세와 관련하여 의료용품 구매를 위한 정부 기관, 병원 및 기타 승인된 당사자, 사업활동을 위한 상품 및(또는) 자재 구매와 관련된 특정 사업체, 해당 국가의 유통업체에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제약산업의 사업체와 관련된 원천징수를 면제함
- 의료 종사자가 받는 추가 소득에 대한 최종 원천징수를 면제함

다.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조세동향 22-04호]

■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2022년 5월 1일부터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를 시행함[526]

▶ 해당 조치로 인해 암호화폐 실물거래자 및 암호화폐 전자지갑서비스 제공자를 포함하여 암호화폐 거래를 촉진하는 전자상거래 제공자(전자상거래사업자)는 암호화폐 과세 대상 자산의 판매자로부터 VAT를 징수하는 징수자로 지정됨

525) IBFD, "COVID-19 Pandemic: Indonesia Extends Tax Incentives for Healthcare Sector,"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1-24_id_1.html, 검색일자: 2022. 2. 28.

526) IBFD, "Indonesia To Impose Income Tax and VAT on Cryptoassets,"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4-11_id_1.html, 검색일자: 2022. 4. 20.

- 해당 과세 시행으로 소득세법상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과세 대상, 세율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
  - 암호화폐 실물거래자[527]인 전자상거래관리자에 의해 제공된 전자설비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암호화폐 판매자에게 거래 가치에 0.1%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로서 최종 과세되며, 전자상거래관리자가 암호화폐 실물거래자가 아닌 경우 거래 가치의 0.2%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로 최종 과세됨
  - BAPPEBTI(인도네시아 상품 선물거래 규제 기관)의 승인을 받은 전자상거래관리자로부터 제공받은 전자설비를 통해 암호화폐를 받거나 얻은 경우 거래 가치에 0.1%를, BAPPEBTI의 승인을 받지 않은 거래관리자를 통한 경우 거래 가치에 0.2%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로 최종 과세함
  - 블록 보상 및 거래 검증 서비스에 대한 보상의 형태로 암호화폐 시스템에서 얻는 이익과 같은 암호화폐 채굴자의 소득에는 거래 가치에 0.1%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가 최종 부과됨
  - 전자상거래사업자의 암호화폐 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설비 제공에 대한 소득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현행 세율이 적용됨

- 또한 해당 과세 시행으로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또한 과세 대상, 과세행위, 세율 등이 규정됨
  - 암호화폐 자산 판매자에 의한 암호자산, 전자상거래 거래사업자에 의해 암호자산 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설비 제공 용역, 암호화폐 채굴자에 의한 암호화폐 거래 확인 서비스 및 암호화폐 채굴자 그룹 관리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이러한 과세 대상에 대해 과세되는 거래행위에는 법정화폐로 암호화폐를 사고파는 것, 하나의 암호자산을 다른 암호자산으로 교환(스왑)하는 것, 암호자산을 상품(암호자산 제외) 및 서비스와 교환하는 것을 포함함
    - 암호자산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전자상거래 거래운영자가 암호화폐 실물거래자인 경우 암호자산의 거래 가치에 1%의 세율을, 전자상거래 거래운영자가 암호화폐 실물거래자가 아닌 경우 암호자산의 거래 가치에 2%의 세율을, 암호화폐 자산 채굴 서비스에 의해 암호화폐 자산 채굴자가 받은 암호화폐 자산 가치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함

527) 인도네시아 상품 선물거래 규제 기관에서 정의하는 개념으로서, 암호화 자산을 거래하는 플랫폼을 뜻함

라. 부가가치세 인상 및 신고와 관련한 절차에 대한 규정 개정

[조세동향 22-05호]

-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2022년 4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11%로 인상함
  - 인도네시아의 기존 부가가치세 세율은 10%였으며, 인도네시아의 재무장관은 인상한 부가가치세율이 여전히 OECD 평균(15%)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함[528]
  -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2025년에는 부가가치세율을 12%까지 인상할 것임을 밝힘

- 국내 소비자가 전자시스템을 통해 해외의 무형 과세 대상 상품 및 과세 서비스를 사용할 때의 부가가치세 관련 징수인 지정 및 징수 후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한 절차에 대한 규정을 개정함[529]
  - 외국 판매자 또는 외국 서비스 제공자가 해외 전자상거래 시장 또는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을 통해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국내의 구매자가 수취하는 거래를 수행하는 경우 해외 거래자, 해외 서비스 제공자, 해외 전자상거래 시장 또는 국내 전자 상거래 시장은 부가가치세 징수자로 지정됨
    - 부가가치세 징수자로 지정된 자는 디지털 상품과 관련된 거래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신고 및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게 되며 그러한 징수의 증빙으로 상업 송장, 청구서, 주문 영수증 또는 유사한 문서를 발행할 것임

- 해당 개정은 부가가치세의 세율과 신고에 관한 조항의 법적 확실성, 공정성 및 공평성의 확대를 목적으로 하며, 2022년 4월 1일부터 발효됨

528) Cabinet Secretaria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Gov’t to Raise VAT Rate to 11 Percent on April 1, 2022,” https://setkab.go.id/en/govt-to-raise-vat-rate-to-11-percent-on-april-1-2022/#:~:text=In%20accordance%20with%20the%20Law,the%20world%2Daverage%20VAT%20rate., 검색일자: 2022. 5. 26.

529) IBFD, “Indonesia Updates Guidelines for VAT on Import of Digital Goods and Services,”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5-10_id_1.html, 검색일자: 2022. 5. 17.

6 홍콩

가. 2022년 예산안 발표

[조세동향 22-02호]

홍콩 재무부는 2022년 2월 23일, 소득세 감면, 사업등록세 면제, 임대료 세액공제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된 2022년 예산안을 발표함[530]

- 2021/22 평가연도에 이윤세, 급여소득세,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최대 1만홍콩달러[531] 한도로 세금감면을 실시함[532]
  - 납세의무자는 기존방식대로 신고 및 납부를 실시해야 하며, 이 후 홍콩 국세청이 감면한도를 적용한 최종납부세액을 확정하여 고지하고 초과 납부한 세액이 있을 경우 환급함
  - 이윤세는 사업별로, 급여소득세는 개인별로, 부부합산과세는 부부별로 감면한도가 적용됨
  -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세금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며, 종합소득에 임대소득이 포함되는 경우 임대소득을 제외한 세액에 세금감면이 적용됨
-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사업등록소(Business Registration Office)에 1년 또는 3년 기한 사업등록[533]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천홍콩달러[534]의 사업자등록세를 면제함[535]

530) IBFD, "Hong Kong Proposes One-off Tax Reduction and Rental Expense Deduction in Budget 2022/23," 2022. 2. 24.,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2-24_hk_1.html, 검색일자: 2022. 3. 2.

531) 2022년 3월 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54만원임

532) IRD, "2022-23 Budget - Tax Measures - Reducing profits tax, salaries tax and tax under personal assessment for the year of assessment 2021/22," https://www.ird.gov.hk/eng/tax/budget.htm#a01, 검색일자: 2022. 3. 2.

533) 홍콩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등록소에 1년 기한 또는 3년 기한 사업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자등록세를 납부해야 하며, 기한이 끝나는 경우 갱신을 해야 함

534) 2022년 3월 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0만원임

535) IRD, "Waiver of Business Registration Fees for One Year," https://www.ird.gov.hk/eng/tax/budget2022_br.htm, 검색일자: 2022. 3. 2.

- 2022년 4월 1일 이전에 3년 기한 사업등록을 완료해서 면제기간 동안 갱신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세 면제금액만큼 환불이 가능함

▶ 2022~2023 평가연도부터 임대인에게 납부한 임대료에 대한 세액공제가 10만홍콩달러[536] 한도로 가능함[537]

- 납세의무가 있는 거주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세금신고 시 임대료 세액공제 신청을 해야 함

7 호주

가. 2022~2023년 예산안 발표

[조세동향 22-04호]

↘ 호주 연방정부(Treasury)는 연방총선을 앞둔 2022년 3월 29일, 민생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 포함된 2022~2023년 연방 예산안을 발표함[538]

▶ 우선, 소득세 측면에서 기존의 중저소득층 세액공제(low and middle income tax offset)인 1,080호주달러[539]에 더하여, 1천만명 이상의 중저소득층에 생활비를 공제해주는 혜택(420호주달러[540])이 새롭게 포함됨[541]

- 이를 통해 연소득 12만 6천호주달러[542] 이하의 소득자들은 최대 1,500호주달러[543]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536) 2022년 3월 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542만원임

537) IRD, "2022-23 Budget - Tax Measures - Introducing a tax deduction for domestic rental expenses," https://www.ird.gov.hk/eng/tax/budget.htm#a01, 검색일자: 2022. 3. 2.

538) 호주 재무부, "Portfolio Budget Statements 2022-23," https://treasury.gov.au/publication/portfolio-budget-statements- 2022-23, 검색일자: 2022. 4. 25.

539) 2022년 4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97만원임

540) 2022년 4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8만원임

541) Tax Notes International, *Australian Budget Envisages Lower Fuel And Personal Income Taxes,* Volume 106, 2022, pp. 108~109.

542) 2022년 4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1,326만원임

543) 2022년 4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35만원임

- 맞벌이 부부라면 최대 3천호주달러[544]까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 해당 혜택은 2021~2022년 세금신고를 하게 되는 2022년 7월 1일부터 이용 가능함

▶ 유가 급등으로 시민부담이 가중되자, 휘발유·경유에 대한 소비세(1리터당 0.44호주달러[545])를 향후 6개월간 절반(0.22호주달러[546])으로 감면하기로 함

- 이를 통해 1리터당 0.22호주달러를 절약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차량 두 대를 보유한 가정은 연평균 약 700호주달러[547]의 혜택이 주어질 것이라고 밝힘

↘ 한편 법인세 측면에서는 특허박스 제도의 확장 적용,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책 등이 마련될 예정임[548]

▶ 먼저 농업 및 저탄소 기술 분야(agriculture and low-emissoins technology sectors)로 특허박스 제도를 확장 적용할 예정임

- 2022년 3월 29일 이후 승인되거나 발행된 특허에 대해 17%의 세율[549]이 적용될 예정이며, 이는 2023년 7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연도부터 적용될 것임

▶ 또한 호주 의학 및 바이오기술 혁신 분야에도 특허박스 제도가 확장 적용될 것이라고 밝힘

- 이에 따라 2021년 5월 11일 이후 승인되거나 발행된 특허에 대해서도 17%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임

▶ 5천만호주달러 이하의 연매출을 기록한 중소기업(Small Businesses)에 대해 기술투자 비용 공제(Technology investment boost) 및 종업원 훈련비용 공제(Skills and training boost)를 제공할 예정임

- 디지털 전환 등에 사용한 비용(사이버 보안시스템, e-인보이스 도입,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구독 등) 및 관련 자산 구입비용에 대해 20%의 추가 비용 공제가 가능할 예정
- 중소기업이 제공한 종업원 훈련비용에 대해 20%의 추가 비용 공제가 가능할 예정

544) 2022년 4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80만원임
545) 2022년 4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96원임
546) 2022년 4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98원임
547) 2022년 4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3만원임
548) IBFD, "Australia Announces Tax Breaks and Expansion of Patent Box Regime in Federal Budget for 2022~2023," 2022. 3. 30.,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3-30_au_1.html, 검색일자: 2022. 4. 25.
549) 매출 5천만호주달러 이상인 기업의 법인세율은 30%임

8 뉴질랜드

가. 조세시스템의 디지털화 관련 의견수렴 절차 진행

[조세동향 22-02호]

뉴질랜드 국세청(Inland Revenue)은 2022년 2월 11일, '디지털 세상에서의 조세행정(Tax administration in a digital world)'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하며 조세시스템의 디지털화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개시함[550]

- 디지털 조세시스템 개발을 위한 기초 플랫폼이 곧 완성 예정임을 알리면서, 일반 시스템(natural system)에 조세행정 절차가 내장되는(embedded) 형태를 디지털 시스템의 특징으로 예시함
- 뉴질랜드 국세청은 아래의 주제들을 포함하는 사항들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고자 함
  - 저소득층 및 고령층 등의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접근방법
  - 외부 당사자[551]와 국세청 간 상호의존성(co-dependence)이 증가함에 따라 외부 당사자의 운영을 국세청 운영모델의 통합확장(integral extension)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할 경우, 외부 당사자의 효과적 참여를 위해 필요한 개선사항
  - 납세 데이터를 금융기관 등에 공유할 때, 통계정보 제공동의 여부, 정보공유 실익, 준수사항
  - 외부당사자의 시스템에서 산출세액 계산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 부족 금액(shortfall)에 대해 납세자와 외부 당사자가 각각 부담해야 할 책임사항(consequences)
- 의견제출 마감일은 2022년 3월 31일임

550) 뉴질랜드 국세청, "Public views sought on digitising the tax system," 2022. 2. 11., https://taxpolicy.ird.govt.nz/news/2022/2022-02-11-digitising-tax-system-consultation, 검색일자: 2022. 2. 23.

551) 외부 당사자는 세무대리인, 비(非)세무대리인 및 세무고문(국세청과는 관계가 없고 납세자와의 관계만 존재함)을 포함하는 개념임

나. 긱(gig)·공유경제 조세제도 정비 관련 의견수렴

[조세동향 22-03호]

뉴질랜드 국세청(Inland Revenue)은 2022년 3월 10일, '긱·공유경제(gig and sharing economy) 과세에서 디지털 플랫폼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관련 조세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개시함[552]

- 긱(gig)·공유경제는 숙박공유·승차공유·배달 등 플랫폼을 통해 무형의 가치를 전달하는 경제활동을 말하며,[553] 오프라인 판매와 비교 시 부가가치세법상 경쟁 왜곡(competitive distortion) 및 납세의무 이행과 관련한 불편함이 존재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GST)를 오프라인 판매자는 부과하지만 플랫폼 판매자는 부과하지 않음에 따른 경쟁 왜곡이 존재함
  - 디지털 플랫폼이 긱(gig)·공유경제와 관련하여 판매자의 납세의무 이행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판매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불편함
- 뉴질랜드 국세청은 긱(gig)·공유경제와 관련한 판매자의 활동·소득 정보를 플랫폼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OECD 확장모델규정[554] 도입을 검토 중임
  - OECD 모델보고규정은 디지털 플랫폼이 세무당국과 판매자에게 플랫폼을 통해 얻은 판매자 소득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며, 다른 관할국과 정보교환은 다자간 소득정보 자동교환협정에 따라 이루어짐[555]
  - EU DAC7 행정협력지침이 시행될 경우,[556] 이에 영향을 받는 뉴질랜드의 디지털

552) 뉴질랜드 국세청, "The role of digital platforms in the taxation of the gig and sharing economy," 2022. 3. 10., https://www.taxpolicy.ird.govt.nz/publications/2022/2022-dd-digital-platforms-gig-sharing-economy, 검색일자: 2022. 3. 29.

553) 브런치, 「긱 이코노미(Gig Economy)란 무엇일까?」, 2020. 2. 22., https://brunch.co.kr/@mj859833/28, 검색일자: 2022. 3. 29.

554) OECD 디지털 플랫폼을 위한 모델보고규정(Model Reporting Rules for Digital Platforms). 규정 초안은 2020년 7월 발표되었으나, 2021년 6월 상품판매 및 차량렌탈 선택 모듈을 추가하여 '확장(extended) 모델규정'으로 불림

555) OECD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소득 정보 자동교환 다자간 협정(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on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on Income Derived through Digital Platforms: DPI MCAA)

556) EU DAC(Directive on Administrative Cooperation)7은 디지털 플랫폼의 수익 보고의무와 세무당국 간 소득정보 자동교환을 골자로 하며 2023년 1월 1일 시행 예정임(EY, "EU adopts tax transparency rules for digital platforms (DAC7)," 2021. 3. 24., https://taxnews.ey.com/news/2021-0614-eu-adopts-tax-transparency-rules-for-digital-platforms-dac7, 검색일자: 2022. 3. 29.)

플랫폼 기업은 소득정보를 다수의 EU 회원국 세무당국에 제공하는 것보다 뉴질랜드 국세청에만 제공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이점이 있음

▶ OECD 확장모델규정 도입과 더불어 확장시장규정(extended marketplace rules) 개념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확장시장규정은 디지털 플랫폼에서 판매자가 서비스를 수행하더라도 마치 플랫폼이 직접 공급하는 것처럼 플랫폼이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할 책임을 부담하는 개념으로 접근함
- 확장시장규정에서는 판매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지만, 별도의 부가가치세 등록자(registered person)인 판매자의 플랫폼상 판매와 관련하여서는 신고의무 부담주체에 대한 대안들을 검토 중임[557]
- 플랫폼이 판매자에게 부과하는 중개수수료(facilitation fee)에 대한 부가가치세율과 관련하여 일반세율과 영세율 중 선택이 필요함
- 판매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방법은 (i) 실제 매입세액 청구·공제, (ii) 고정요율(flat rate) 일괄 적용, (iii) 소득세 신고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안을 검토 중임

▶ 관련 의견제출 마감일은 2022년 4월 21일임

다. 디지털세 필라2 도입 관련 국내 의견수렴 절차 개시

[조세동향 22-05호]

↘ 뉴질랜드 국세청(Inland Revenue Department)은 2022년 5월 5일, 디지털세 필라2 글로벌 합의안의 뉴질랜드 내 도입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개시함[558]

▶ 뉴질랜드 국세청은 5월 5일, 디지털세 필라2 관련 GloBE 규칙의 뉴질랜드 내 도입과 관련한 자문보고서(consultation paper)를 발간함[559]

557) 플랫폼상 공급에 대해 판매자가 신고하는 안과 플랫폼이 신고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플랫폼이 부가가치세 징수에 관여할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기준(시기 및 요율)을 명확히 하는 규칙이 필요함이 언급됨

558) Tax Notes International, *New Zealand Officials Undecided On Pillar 2 and DST,* Volume 106, 2022, p. 808.

559) 뉴질랜드 국세청, "OECD Pillar Two: GloBE rules for New Zealand - an officials' issues paper (May 2022)," https://taxpolicy.ird.govt.nz/publications/2022/2022-ip-oecd-pillar-

- 필라2는 적용 대상 다국적 기업에 대하여 소득산입규칙 및 비용공제부인규칙의 적용과 함께 15%의 최저한세율 도입을 계획하고 있음

▶ 보고서에 따르면, 뉴질랜드는 2021년 10월 필라2에 합의한(endorsed) 130여개 국가 중 하나이나, 아직 뉴질랜드 내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님

- 뉴질랜드는 필라1, 필라2, 디지털세 도입을 아직 확정 짓지 않았음

▶ 금번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상당수의(critical mass) 다른 국가들 또한 GloBE 규칙을 도입한다는 전제하에 뉴질랜드가 GloBE 규칙을 도입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 추가로, 뉴질랜드의 GloBE 규칙 도입 시 입법 방안, 가장 효과적인 도입시기, 발생 가능한 문제점 및 그 해결 방안, 신고서 제출 및 납부 기한을 포함한 행정 절차 등에 대한 의견 또한 수렴할 예정임

▶ 관련 의견제출 마감은 2022년 7월 1일임

라. 2022-23 예산안 발표

[조세동향 22-06호]

↘ 뉴질랜드 정부는 2022년 5월 19일, 2022~2023 회계연도 예산안(Wellbeing Budget 2022 - A Secure Future) 및 경제·재정 전망 보고서를 발표함[560]

▶ 2022/23 예산안은 생활물가 안정화, 보건시스템 개편, 기후위기 대응, 기업성장 지원, 마오리·퍼시픽계 지원 등 5대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함

↘ 다만, 금번 예산안에는 조세 관련 정책은 거의 포함되지 않았으며, 주로 재정 관련 정책이 다수 포함되었음[561]

▶ 대표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 및 공급망 차질 등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으로 생활

two, 검색일자: 2022. 5. 17.

560) New Zealand Government, "Wellbeing Budget 2022 - A Secure Future," https://budget.govt.nz/budget/2022/wellbeing/index.htm, 검색일자: 2022. 6. 15.

561) IBFD, "New Zealand 2022/23 Budget Adjusts for Cost-of-Living Amid Inflation, Continues R&D Tax Funding," 2022. 5. 19.,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5-19_nz_1.html, 검색일자: 2022. 6. 16.

고를 겪고 있는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간 연장하는 등 총 10억뉴질랜드달러[562]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함

- 뉴질랜드 정부는 지난 3월 14일, 유류세를 3개월간 1리터당 25센트 인하하는 조치를 발표한 바 있음[563]
- 이외에도, 연소득이 7만뉴질랜드달러[564] 미만인 성인을 대상으로 1인당 350뉴질랜드달러[565]의 한시적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재정 관련 정책이 포함됨

562) 2022년 6월 1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8,100억원임

563) Bloomberg Tax, "New Zealand Cuts Fuel Tax to Temper Surging Gasoline Prices," 2022. 3. 14., 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bloombergtaxnews/daily-tax-report/XE1O9GFC000000?bc=W1siU2VhcmNoICYgQnJvd3NlIiwiaHR0cHM6Ly93d3cuYmxvb21iZXJnbGF3LmNvbS9wcm9kdWN0L3RheC9zZWFyY2gvcmVzdWx0cy85NTM0OWFkY2MzMDg3ZjM5NjMxZmYyYjhkOTIwOGQ4ZCJdXQ-77f8b8ea9740c1e198c99eced1f363805b07a534&criteria_id=95349adcc3087f39631ff2b8d9208d8d&search32=JTJe31W6xjx4aQDcxO6dMw%3D%3DOsC6QoeRFZ_hC7wx_RcUHeUA7pxd1QhECNP_2zvZd96dEAnmpLCBYtWc3lmgDnO-90OEfTYawebAQSrmUspapHDvSGo-CMxVyydJhkQl0132DFhSDeIq1YuuGeVnRetHeakRIb0r70mdE2PlrX0khc9iHzw83TBhu3EqojoQPb9xPnri4h3Xbmv9W-rC7zHu3GGg5eVA6d95h7Gk9cxVzRIsKMbY0KzcI9KsMAFmIsdaCUTVXeveYEBAfujhp0L7oCBa_DHtR1IJliLgRPmQPepBPXOWU1FEMrBKL9QSGRpcr8WpW3SPcKyRYGvQX5B_xFsbEX9qkX3-QY9cfDxZ6Tepe5slBK2p2FHxw9UescVHg7_98LdD6cCgp1O_hxPEH0QUHRIvmko1z2LeQiQukt2ax2RW1wSMD1pv0jir3VvEm6h89amQy5KuV-zvgVkivn-Ze9WU5HuD67OYsRwxVlOGgrzBO31sDb3-0Vs9eHc%3D, 검색일자: 2022. 7. 4.

564) 2022년 6월 1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700만원임

565) 2022년 6월 1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8만 3,490원임

Ⅳ 국제기구

1 OECD

가. 주택 유효조세 측정 보고서 발행

[조세동향 22-01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2년 1월 12일, (국별) 주택 유효조세 측정 보고서(Measuring Effective Taxation of Housing)를 발행함[566]

- 주택투자에 대한 한계유효세율(marginal effective tax rates[567])을 자가(owner occupied) 여부와 차입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비교함[568]
  - 조사 대상국[569] 평균은 [A[570] ≪ B[571] < C[572] ≪ D[573]]의 패턴을 보였으며, 이는 (크기 순으로 볼 때) 임대소득세, 차입이자비용공제(mortgage relief), 보유세, 거래세, 양도세, 부유세(wealth tax)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
  - 우리나라는 [A ≪ B < C ≒ D]의 패턴을 보였으며, A 그룹의 한계유효세율이 낮은 이유는 자가거주의 차입이자비용 공제의 영향이 크기 때문임

566) OECD, "Measuring effective taxation of housing," 2022. 1. 12., https://www.oecd.org/tax/measuring-effective-taxation-of-housing-0a7e36f2-en.htm, 검색일자: 2022. 1. 20.

567) 세후(post-tax) 수익률과 세전(pre-tax) 수익률의 차이로 측정되며, 투자의 추가 단위에 대한 한계(marginal) 수익률이 취득·보유·처분 과정에서 과세되는 정도를 의미함

568) ≪: 큰 차이가 남, <: 소폭 차이가 남, ≒: 유사함

569) 총 40개국이며, 37개 OECD 회원국과 아르헨티나, 불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의미함

570) A 그룹: 자가(owner occupied) + 차입(debt-financed)

571) B 그룹: 자가(owner occupied) + 비차입(equity-financed)

572) C 그룹: 임대(rented) + 차입(debt-financed)

573) D 그룹: 임대(rented) + 비차입(equity-financed)

▶ 조세의 형평성(equity) 검토를 위해 저소득(P),[574] 평균소득(Q),[575] 고소득(R)[576] 납세자의 한계유효세율을 비교함

- 조사 대상국 평균은 [P ≒ Q < R]의 패턴을 보였고, 우리나라는 [P ≒ Q ≪ R]의 패턴을 보였음
- 고소득자는 보유주택이 많으므로, 주택에 대한 우호적 조세제도(favourable taxation)의 혜택(benefit)을 고소득자가 더 많이 보게 됨을 언급함

▶ 동 보고서의 분석에 사용된 주요 가정은 아래와 같음

- 아이가 없는 독신(single) 개인(individual)이 20년간 거주하는 것으로 가정함
- 2016년 법정(statutory) 세율을 일괄 적용하였고, 납세자별 개별적 상황(specific circumstance)은 고려하지 않았음
- 일반적으로 납세자의 소득(income)과 부(wealth) 사이에 연관관계가 있다고 가정하였으나, 국별 상황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조정하였음

▶ 동 보고서는 국별 정책설계 과정에서 검토가 필요한 납세자 세그먼트(segment) 및 중심변수(driver) 식별에 의의가 있음

- 분석 결과와 관련한 정책 시사점(policy implication)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research)가 필요하다고 언급함

나. 가상자산 보고 프레임워크 및 CRS 수정안 관련 의견수렴

[조세동향 22-04호]

OECD는 2022년 3월 22일, 가상자산 보고 프레임워크(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 CARF) 및 공통보고기준(Common Reporting Standard: CRS)에 대한 의견 수렴안을 발표함[577]

574) 저소득(P): 평균 임금(wage)의 67%로 가정함

575) 평균소득(Q): 평균 임금(wage)의 100%로 가정함

576) 고소득(R): 평균 임금(wage)의 500%로 가정함

577) OECD, "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 and Amendments to the Common Reporting Standard," https://www.oecd.org/tax/exchange-of-tax-information/public-consultation-document-crypto-asset-reporting-framework-and-amendments-to-the-common-reporting-standard.pdf, 검색일자: 2022. 4. 20.; EY, "OECD releases Consultation document: 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 and Amendments to the Common Reporting Standard," 2022. 4. 12., https://www.ey.com/en_gl/tax-alerts/oecd-releases-consultation-document

▶ 의견수렴안은 금융시장에서의 새로운 기술 발전으로 인한 투자 및 지불방식 변동에 대응하여, 가상자산 보고 프레임워크 및 CRS 수정사항과 관련된 부분으로 구성됨

- 가상자산은 기존의 전통적인 은행계좌에 보관된 화폐와 유사한 기능을 하지만 CRS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아 이를 수정하는 내용을 담음

▶ 관련 의견제출 마감일은 2022년 4월 29일이며, OECD는 2022년 10월 새로운 규칙에 대한 제안을 발표할 예정임

↘ 가상자산 보고 프레임워크는 가상자산 교환의 관련 거래 보고의무, 절차 규정 및 여타 기술적인 제안사항을 담고 있음

▶ 가상자산 보고 프레임워크는 가상자산을 교환하는 중개인에 대하여 네 가지의 관련 거래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이러한 정보의 자동교환을 제안함

- 가상자산과 법정 화폐 사이의 교환
- 가상자산의 1개 이상 형식 사이의 교환
- 보고 가능한 소매 지불 거래
- 가상자산 이전

▶ 가상자산 보고 프레임워크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가 가상자산 사용자를 식별하고, 보고 목적을 위한 관련 조세 관할국을 결정하는 등 절차 규정을 제공함

▶ 이외에도 가상자산 보고 서비스 제공자와 관련한 기술적인 제안을 담고 있으며, 기업이 가상자산 사용자인 경우의 절차 규정 및 실질적인 이행 요건 등이 이에 포함됨

↘ 가상자산 보고 프레임워크와의 상호작용을 위하여 CRS[578]의 범위에 새로운 디지털 금융 상품이 포함될 수 있도록 수정사항을 제안함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는 예금계좌에 해당하여 중앙은행이 아니라 고객의 은행이 보고하여야 함

▶ 가상자산 또한 금융자산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

-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 및 기존 금융기관에 대하여 연말에 고객이 보유하는 가상

-crypto-asset-reporting-framework-and-amendments-to-the-common-reporting-standard, 검색일자: 2022. 4. 20.

578) OECD는 미국 FACT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제도를 기반으로 하여 2014년 CRS를 처음 도입하였고, 은행 및 여타 금융기관이 역외 거주 고객을 위하여 보유하는 자산을 과세관청에 보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과세관청은 해당 정보를 다른 관할국과 교환함

자산의 가치 및 가상자산 보고 프레임워크하에서의 거래를 보고하도록 요구함

- 다만 가상화폐를 보유한 디지털 지갑이 기존 금융계좌와 동등하다고 규정하지는 않고 있음

▶ 가상자산의 정의에 금융자산의 정의 변경 및 투자기업의 정의를 추가함

다. 디지털 플랫폼 보고 의무를 위한 표준 IT 형식 발표

[조세동향 22-04호]

OECD는 2022년 3월 29일, '디지털 플랫폼 정보(Digital Platform Information: DPI) XML 스키마 및 사용자 지침'을 발표함[579]

▶ 'DPI XML 스키마 및 사용자 지침'은 플랫폼 운영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모델 규정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전자 보고 및 교환을 허용하는 표준화된 IT 형식을 제공함

- 공유 및 긱(gig) 경제의 판매자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거래를 파악하기 어렵거나, 납세자가 자진신고하지 않는 경우를 위하여 디지털 플랫폼 운영자에게 정보 보고 의무를 부과한 것임
- OECD는 2020년 7월 3일, '공유 및 긱 경제의 판매자와 관련한 플랫폼 운영자의 보고 모델 규정'을 발표하여, 디지털 플랫폼에 이를 통하여 제공하는 숙박·이동·개인서비스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였음

▶ DPI XML 스키마는 모델 규정의 확장된 범위를 반영하며 OECD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모델 보고 규정과 EU 행정협력지침(DAC 7)에 따라 IT에 기반한 교환을 기술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것임

- OECD는 2021년 6월 22일, 관할국이 위 모델 규정의 확장된 범위를 이행할 수 있도록 선택적인 모듈을 제공하였고, 정보교환은 다자간 권한 있는 당국 간 협정(MCAA)의 형식으로 국제적인 법적 프레임워크를 통하여 운영됨

579) OECD, "Model Rules for Reporting by Platform Operators with respect to Sellers in the Sharing and Gig Economy," https://www.oecd.org/ctp/exchange-of-tax-information/model-rules-for-reporting-by-platform-operators-with-respect-to-sellers-in-the-sharing-and-gig-economy.htm, 검색일자: 2022. 4. 22.; Bloomberg Law, "OECD Creates IT Format for Online Platforms to Share Tax Data," 2022. 3. 29., 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bloombergtaxnews/daily-tax-report/XED4USR4000000?bc=W1siU2VhcmNoIFJlc3VsdHMiLCIvcHJvZHVjdC90YXgvc2VhcmNoL3Jlc3VsdHMvOTgzZjI3MWFjMzRlZjk1ZDRiZGE2YmEyMTcyODgyNDgiXV0-2fef9e57d7d7e85edba6c14cb82bde35b3f8604b, 검색일자: 2022. 4. 20.

2 EU

가. 조세 목적상 페이퍼컴퍼니 오남용 방지 지침 제안

[조세동향 22-01호]

- EU 집행위원회는 2021년 12월 22일, 페이퍼컴퍼니(shell entities) 및 기구(arrangement)를 조세 목적으로 오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지침을 제안함[580]
  - ▶ 세 가지 식별 기준(gateway)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페이퍼컴퍼니로 간주함
    - 기업이 보유하는 특정 자산의 장부 가치의 60% 이상이 회원국 밖에 위치하고, '관련 수익(이자수익과 기타 가상자산, 사용료, 배당소득 등의 금융소득, 리스, 보험, 부동산 소득 모두 포함)'의 60% 이상이 해외에서 발생한 경우
    - 최근 2년간 기업 수익의 75% 이상이 '관련 수익'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경영 및 관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아웃소싱한 경우
  - ▶ 기업이 두 가지 사항을 입증하면 페이퍼컴퍼니에서 제외되고, 페이퍼컴퍼니로 간주되는 기업은 일정한 불이익이 있음
    - 식별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 첫째, 진정한 경제활동을 수행하였고 둘째, 조세 이익을 누리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면 페이퍼컴퍼니로 간주되지 않음
    - 기업이 페이퍼컴퍼니로 간주되면 조약 또는 다른 EU 지침상 조세 이익을 누리지 못하거나 EU 회원국 내 거주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음

- 식별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적용 제외(carve-out)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고위험 기업군은 세금 신고 시 기업의 실재와 관련된 정보를 보고할 의무가 있음
  - ▶ 적용 제외는 적용 제외 기업 목록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하게 규율되는 금융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등이 있음

580) European Commission, "Fair Taxation: Commission proposes to end the misuse of shell entities for tax purposes within the EU,"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1_7027, 검색일자: 2022. 1. 17.; EY, "European Commission publishes draft Directive for preventing the misuse of shell entities (UNSHELL)," https://www.ey.com/en_gl/tax-alerts/european-commission-publishes-draft-directive-for-preventing-the, 검색일자: 2022. 1. 17.

▶ 고위험 기업군은 첫째, 기업이 독점적으로 사용 가능한 장소를 보유하고, 둘째, EU 내에 적어도 하나의 은행계좌가 있으며, 셋째, 적어도 1명의 관리자 또는 관련 종업원의 다수가 기업 근교에 거주하는지 여부를 보고해야 함

나. 부가가치세 감면세율 적용범위 조정

[조세동향 22-04호]

유럽 이사회는 2022년 4월 5일 의료시스템, 탈탄소화 정책 및 디지털 경제 전환 약속 등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상품 및 서비스에 부가가치세 감면세율을 적용하는 지침(Council Directive 2022/542)을 발표하였음[581], [582], [583]

▶ EU 회원국은 최소 15% 부가세를 적용해야 하지만, EU VAT 지침(2006/112/EC) 부록 Ⅲ에 나열된 항목에 대해서는 5% 이상의 감면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기본생필품에 대해서는 0% 또는 0%와 5% 사이의 감면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584]

▶ 회원국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법안을 채택하고 공표해야 하며, 2025년 1월 1일부터는 관련 정책이 시행되어야 함

581) IBFD, "EU Council Adopts Major Overhaul of VAT Reduced Rates,"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4-06_e2_2.html, 검색일자: 2022. 4. 20.

582) Baker McKenzie, "European Union: EU Council approves fundamental overhaul of VAT rates," https://insightplus.bakermckenzie.com/bm/tax/europe-eu-council-approves-fundamental-overhaul-of-vat-rates, 검색일자: 2022. 5. 3.

583) European Union, "Council Directive (EU) 2022/542 of 5 April 2022 amending Directives 2006/112/EC and (EU) 2020/285 as regards rates of value added tax,"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uriserv%3AOJ.L_.2022.107.01.0001.01.ENG&toc=OJ%3AL%3A2022%3A107%3ATOC, 검색일자: 2022. 5. 3.

584) BLOOMBERGLAW, "EU Ministers Finalize Reduced VAT Update, Calais Tax-Free Zone," 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bloombergtaxnews/daily-tax-report/X64RN8NO000000?bc=W1siU2VhcmNoIFJlc3VsdHMiLCIvcHJvZHVjdC90YXgvc2VhcmNoL3Jlc3VsdHMvMTk0YjlhYjAxZGE4YTEwOWU1NzFiN2MzMGZkOGVhZWYiXV0-55574f0e6b540ee8c6ced296d30279c97e17652b&search32=qJ78l3xpdlvS4tz09mO4_A%3D%3D4HAJj5vAxuKKrlXZffr2kw-BEyQ7pOep0e208rsu3FvqlW6AOYuk41a-TMWEIHTCvfHQf20FFwNJ2PhWpJU8QZ0DscDfXDZiO_y8OIlwI9Z7YSDzAgfamWXy1kT7BGTk-EZGR3CpW9xy3sgebCNxggV3vH57q2vvwC0xETxPalrFjS67yFthap471hzJpEkUPKc-es9ipEaqZIaYGR1eNOdKbB1carwS2zk_ao4Tr3U1aCX7TJPPXWCXHZ-hUABMahVWQvMnVU0zEaC6Fc4TN5g51Usb1ZJ2jYei9URW7Mm1aE7ARs720QZyIZc7ZnFi-e2cpCuK-Ph7sI3_ZxF9u2Nz6YF6wHtdcgvYXLADh68%3D, 검색일자: 2022. 5. 3.

- 화석연료 및 화학비료와 같은 환경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각각 2030년 및 2032년부터 감면세율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함

- 의료시스템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부가세 감면세율 적용 대상 의약품과 의료장비의 범위를 확대함
  - 피임 및 여성 위생 보호에 사용되는 제품을 포함하여 의료 및 수의학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이 추가됨
  - 의료장비, 가전제품, 장비, 품목 및 보조 기구와 같이 일반적으로 의료에 사용되는 품목 등이 추가되었으며, 이 범주에 대해서는 감면세율도 적용 가능하도록 함

- 탈탄소화 정책 지원을 위해 태양광 패널, 전기 자전거,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서비스와 같은 환경 친화적인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감면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태양광 패널의 경우 0% 초감면세율 적용이 가능함

- 디지털 경제 전환 지원을 위해 인터넷 접근 서비스에 대해 감면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2025년까지 문화 및 스포츠 이벤트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해 감면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다. 코로나19 관련 경제 지원조치 단계적 폐지 발표

[조세동향 22-05호]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2년 5월 12일 EU 회원국의 코로나19 관련 경제지원 조치인 일시적 국가보조체계안(State aid COVID Temporary Framework)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발표하였음[585]
  - 2020년 3월 17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EU 회원국의 경제지원을 위한 일시적 국가보조체계안을 발표한 바 있음[586]

585) IBFD, "COVID-19 Pandemic: European Commission to Phase Out State Aid COVID Temporary Framework,"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5-12_e2_2.html, 검색일자: 2022. 5. 24.

58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20-03호」, "EU-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 조세 조치 논의," 2020, https://www.kipf.re.kr/viewer/default/doc.html?fn=FILE_000000018618Qj

- 경제 상황이 개선되고 있음에 따라 일시적 코로나19 국가보조체계안의 조치들은 2022년 6월 30일 만료되며, 이후 추가 연장되지 않음
  - 일부 회원국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특정 투자 및 상환 연장 조치를 추가로 실시할 수는 있으나, 기존에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일시적 국가보조체계안의 조치는 계획대로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함

라. 글로벌 최저한세 최종합의 실패

[조세동향 22-06호]

- 유럽연합 경제금융이사회(ECOFIN)는 2022년 6월 17일, 헝가리의 반대로 글로벌 최저한세 지침에 대한 최종 합의가 무산됨[587)]
  - EU 내 글로벌 최저한세 지침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이사회에서 회원국의 만장일치가 필요함

- 헝가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최저한세를 시행하기 우려스럽다는 입장과 함께, EU 글로벌 최저한세 지침상 문구(text)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거부 사유를 밝힘

- ECOFIN 현재 의장은 EU 내 글로벌 최저한세 지침에 대한 헝가리의 거부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차기 의장 역시 합의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밝힘

7_0&rs=/viewer/result/kiTrend/202004///, 검색일자: 2022. 5. 24.

587) IBFD, "Hungary Opposes Minimum Taxation Directive during ECOFIN but French Presidency Is Still Determined to Reach an Agreement,"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6-17_e2_4.html, 검색일자: 2022. 6. 21.

주요국의 조세동향 2022년 제1호

2022년 7월 26일 인쇄
2022년 7월 29일 발행

발행인 김 재 진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시 시청대로 336
TEL : (044)414-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014-24호

조판및 인쇄 (주)범신사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반곡동)
TEL : 044-414-2114(代), www.kipf.re.kr